

알기쉬운 중국의 비자 및 출입국법령



알기쉬운 중국의 비자 및 출입국법령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22.1

『알기쉬운 중국의 비자 및 출입국법령』 을 발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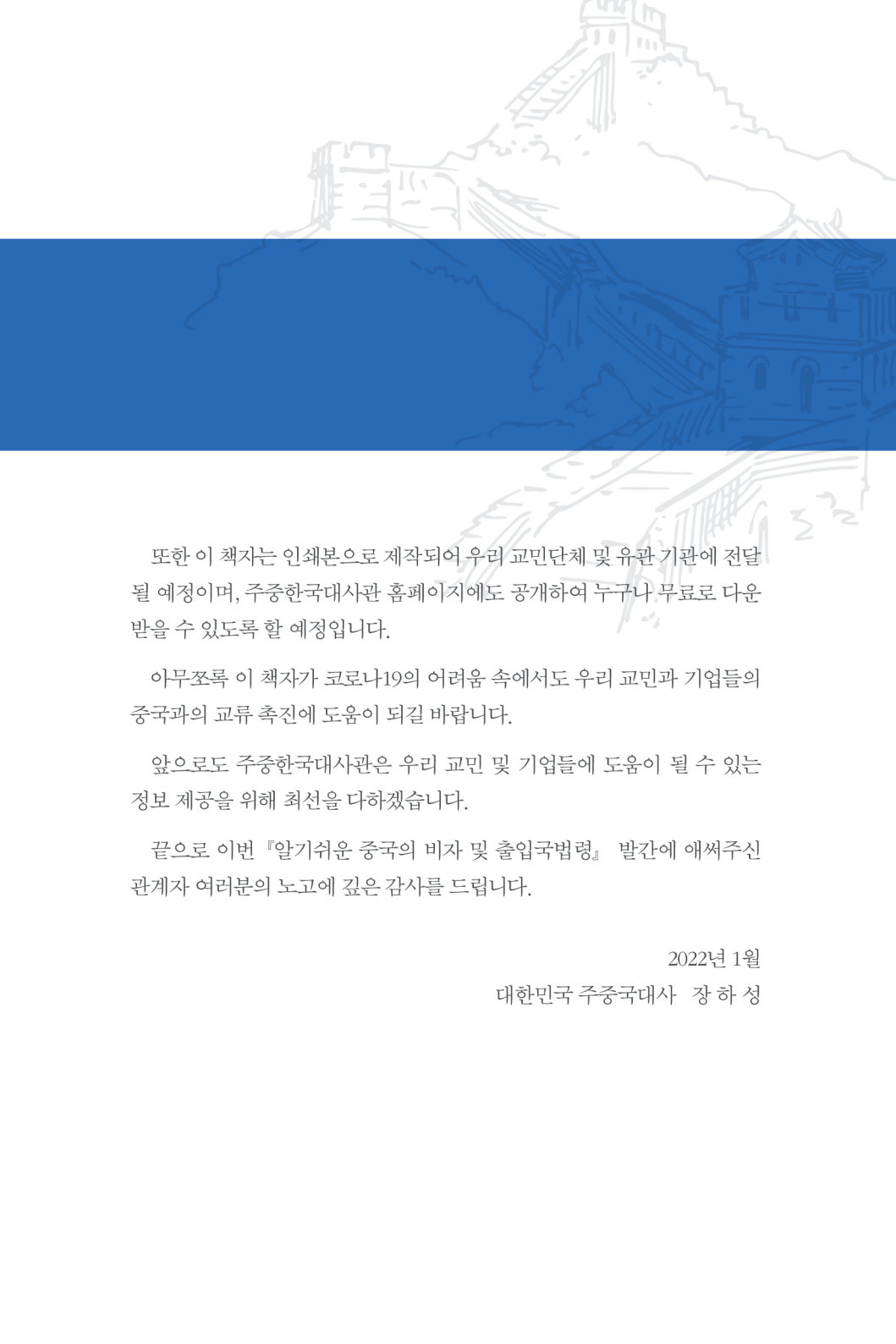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양국은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1992년 수교 이후 30년 동안 인적 교류는 1992년 13만 명에서 2019년 1,037만 명으로 80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류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코로나19가 극복되면 양국간의 인적 교류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의 출입국, 비자 및 체류 등 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책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규정이 새로이 발표됨으로써, 중국과 왕래하는 우리 교민 및 기업들에게 불편함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민 및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하여 『알기쉬운 중국의 비자 및 출입국법령』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중국 비자 및 체류 등 제도 주요 내용 설명, 교민들이 대사관에 자주 상담하는 사례 및 그 답변, 〈중국 출입경관리법〉 및 〈중국 외국인출입경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안내자료 등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자는 인쇄본으로 제작되어 우리 교민단체 및 유관 기관에 전달 될 예정이며,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누구나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민과 기업들의 중국과의 교류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중한국대사관은 우리 교민 및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알기쉬운 중국의 비자 및 출입국법령』 발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대한민국 주중국대사 장 하 성

Contents

Part I. 중국의 비자 · 체류 제도 이해

1. 비자제도 이해	3
2. 비자발급 권한과 출입국 업무 담당 기관	5
3. 비자 종류	7
4. 비자종류별 구비서류	11
5. 일반 상황에서 비자신청 기준	15
6.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자신청 기준	16
7. 체류(停留 · 居留) 관리	18

Part II. 중국내 여권 · 비자 · 체류 관련 Q&A

➤ 한국 여권 관련

1. 차세대 전자여권 소개	24
2. 중국내 한국 여권 및 비자 재발급 절차	25

➤ 중국 법률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및 구제

3. <출입경관리법>에서 규정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및 구제	26
4.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및 강제 송환	27

➤ 중국 비자 및 체류 관련

5. 중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28
6. 거류허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29
7. 이직 시 비자 및 외국인 취업허가증 변경	30
8. 외국인 비자 및 근무처 불일치 등 불법고용 시 처벌	31
9. 취업비자 기간연장 시 주의사항	33
10. 유학생의 법인 설립에 따른 Z비자 취득 방법	34

Part III. 출입국 관련 법령 (번역문 / 원문)

➤ 출입경 관련 법령

1. 중국 출입경관리법.....	38 / 165
2. 중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조례.....	60 / 185
3. 중국 출입경 변방검사 조례.....	71 / 195
4. 외국인 강제 출경 집행 방법에 관한 규정.....	79 / 202
5. 외국인과 중국 공민의 출경제한 문제에 관한 규정.....	84 / 206

➤ 비자 및 체류 관련 법령

6. 외국 인재 비자제도 실시방법.....	86 / 208
7. 중국내 외국인 취업관리 규정.....	89 / 210
8. 외국인의 재중국 영구거류 관련 대우에 관한 방법.....	96 / 216
9. 외국인 중국 영구거류 심사비준 관리 방법.....	99 / 219

➤ 중국 형법(출입국 관련 조항) 및 반테러법

10. 중국 형법(출입국 관련 조항).....	105 / 224
11. 중국 반테러(反恐怖主义)법.....	109 / 228

➤ 중국 국민, 귀국동포, 기타 관련 법령

12. 중국 국민 출국여행 관리방법.....	131 / 246
13. 중국 귀국동포·동포가족 권익 보호법.....	138 / 252
14. 중국 여권법.....	142 / 256
15. 중국 국적법.....	147 / 261

➤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안내자료

16. 중국 비자 개요.....	149 / 263
17. 외국인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 신청 안내.....	152 / 266
18. 외국인 도착비자 신청 유의사항.....	162 / 275

- 아래 안내자료는 중국의 출입국법령 및 유관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내용 등을 정리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중국 당국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은 아래 안내자료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art I

중국의 비자 · 체류 제도 이해

1. 비자제도 이해
2. 비자발급 권한과 출입국 업무 담당 기관
3. 비자 종류
4. 비자종류별 구비서류
5. 일반 상황에서 비자신청 기준
6.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자신청 기준
7. 체류(停留 · 居留) 관리

비자제도 이해

(1) 개념

비자(Visa)는 중국 출입경관리법상으로는 ‘치엔징(签证, QiānZhèng)’, 한국 출입국 관리법상으로는 ‘사증(査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¹.

중국은 비자를 “어떤 한 국가 정부의 수권기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그 국가의 출입경 또는 환승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허가 증명서”라고 설명 (중국비자개요, 2019. 11. 20일자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게재 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비자 소지자를 비자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입국시켜도 문제 없다는 의미로 영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행하는 배서 또는 확인”이라고 설명 (한국 사증발급편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사증발급인정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국내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 대상자(주로 유학·취업 등 장기비자 대상)에 대하여 진행하는 사전심사 절차입니다.

심사가 통과되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이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¹ 비자는 중국에서는 치엔징(签证), 한국에서는 사증(査證)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자로 통일하여, 설명 및 법령 번역에 사용하기로 함

(2) 효력

비자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실무상 ①영사의 입국 허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 ②영사의 입국 추천에 불과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은 입국 후 비자 유형과 다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 불허가 가능하도록 규정(중국 출입경관리법 제25조)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유효한 비자 소지자라도 입국 목적이 비자에 기재된 체류자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불허가 가능하도록 규정(출입국관리법 제12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모두 비자를 입국허가 확인의 효력보다는 입국 추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체류자격과 비교

비자는 인적사항과 그 종류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고, 반면에 체류자격은 체류기간 동안 활동 가능한 범위(일정 활동을 하며 체류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상의 자격)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사증발급편람에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자격이 필요하다”고 규정(출입국관리법 제10조)하고 있습니다.



비자발급 권한과 출입국 업무 담당 기관

(1) 비자발급 권한

중국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위탁 재외기관(출입경관리법 제4조)에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출입국관리법 제8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출입경관리법 제1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 및 공무 사유로 입경하는 외국인에게는 외교 비자 또는 공무 비자를 발급한다. 특수한 신분으로 예우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예우 비자를 발급한다. 외교 비자, 예우 비자, 공무 비자의 발급 범위와 방법은 외교부가 규정한다.”

“취업, 학습, 친지 방문, 여행, 비즈니스, 인재유치 등 비외교, 비공무 사유로 입경하는 외국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일반 비자를 발급한다, 일반 비자의 유형과 발급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2) 출입국 업무 담당 기관

중국은 2018년 4월公安부의 출입경관리국과 변방관리국을 통합한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출입국·이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관리, 정책 업무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省), 시(市), 현(县) 등 지방의 출입경변방검사기관 및 현급 이상公安출입경 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구역의 출입경 심사 및 외국인 체류관리, 불법체류

자 단속 등 실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2007년 5월 출입국관리국에서 승격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입국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 보호소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자 종류

(1) 중국의 비자 종류

중국은 외교, 예우(특수 신분), 공무, 일반 비자로 구분(출입경관리법 제16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체류자격으로 비자 종류를 구분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의 '한국의 체류자격 종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비자 종류

가장 많이 발급되는 일반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乘务, Chéngwù, 승무원) • D (定居, Dìngjū, 영구거류) • F (访问, Fǎngwèn, 방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 (过境, Guòjìng, 경유) • J1/J2 (记者, Jìzhě, 기자) • L (旅游, Lǚyóu, 관광)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 (商业贸易, shāngyè Mǎoyì, 상용) • Q1/Q2 (探亲, tànQīn, 중국 국민 · 영구거류자 가족 및 친척 방문) • S1/S2 (私人事务, Sīrénshìwù, 직장 · 학업 등 목적 중국 체류자의 가족 방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 (人才, Réncái, 우수인재) • X1/X2 (学习, Xuéxí, 유학) • Z (工作, gōngzuò, 취업)

(3) 도착비자 제도

중국은 이외에도 특별하게 긴급 인도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도착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출입경관리법 제20조).

또한, 초청을 받아 긴급 상용 업무, 기타 긴급 사유로 주관부서의 도착비자 발급 동의서를 소지하고 입경하는 외국인인 국무원이 비준을 한 공항만(口岸)²에서 공안부 위탁 도착비자기관에 도착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는 일회성으로, 체류 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이 공항만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명서, 도착비자 신청서, 사진 및 주관부서 또는 초청기관(개인)의 긴급 입국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기관 또는 개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명서 사본과 긴급 입국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착비자 종류별 제출해야 하는 긴급 입국 증명 서류〉

비자 종류	제출 서류
C (승무원)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관부서 또는 민항, 철도, 고속도로, 항구 등 운수회사의 긴급 입경 사유 소명서
F (방문)	○ 주관부서의 도착비자 신청 동의 증명서
단체L (단체관광)	○ 자격요건을 갖춘 여행사의 초청장, 인원 명단 및 관광일정
M (상업무역)	○ 수탁기관 또는 초청기관(도착비자 기관에 기 등록된 초청기관)의 긴급 입경 사유 소명서 ○ 기타 초청기관의 경우에는 입경 후 중사 예정 활동에 관한 일정계획서, 긴급 입경 사유 소명서 및 주책등기증명
Q2 (중국가족 방문)	○ 중국 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가족관계 및 긴급 입경 사유 소명서와 신분증명
S2 (가족동반)	○ 친족방문자 : 재중 거류 외국인의 가족관계 및 긴급 입경 사유 소명서 및 초청인의 여권과 거류증 ○ 기타 개인사무 종사자 : 긴급 사무 또는 인도주의 사유 관련 증명서류

2 본서에서 공항만은 공항, 항만, 육로에 개설된 출입경 통로를 의미함

☞ (참고) 한국의 체류자격 종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A계열(A-1~A-3), B계열(B-1~B-2), C계열(C-1~C-4, *C-2 삭제), D계열(D-1~D-10), E계열(E-1~E-10), F계열(F-1~F-6), G계열(G-1), H계열(H-1~H-2) 등 총 37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취업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가능 자격 (17 종, 법 18 조, 영 23 조)

〈C계열 일부〉	단기취업(C-4)
〈E 계열〉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F 계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H 계열〉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② 비취업 자격 (17 종)

〈A 계열〉	외교(A-1), 공무(A-2), 협정(A-3)
〈B 계열〉	비자면제(B-1), 무비자입국(B-2)
〈C 계열〉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D 계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③ 기타 체류자격 (3 종)

〈F계열 일부〉	방문동거(F-1), 동반(F-3)
〈G계열〉	기타(G-1) :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치료중인 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위챗(wechat)을 활용한 지역별 공안 출입경관리기관 검색 방법

① 위챗 검색창에서 ‘国家移民管理局’을 검색하여 공식계정을 팔로우 합니다.



② ‘政务服务’ 메뉴에서 ‘官方政务服务平台’ 선택, 메인 메뉴에서 ‘办事机构’를 선택합니다.



③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종류별 구비서류

- 아래 안내자료는 2022.1월까지 주한중국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r.china-embassy.org/kor/)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중국의 비자종류별 구비서류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2019.6.21.자 게시)〉

비자 종류	신청 목적	구비 서류
공통		1.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비자 신청서 및 사진(6개월 이내) ※ 신청인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또는 기존 중국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안내자료 참고
L (관광)	관광	1. 왕복 항공편 예약확인서 및 호텔 예약확인서 등 관광 일정 관련 서류 2. 중국 국내기관 또는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개인이 작성한 경우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초청장 필수 포함 사항> → 피초청인 개인 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초청인 스케줄 정보 :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등 → 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 : 초청기관 명칭 또는 초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날인, 법정대표 또는 초청인 서명 등 ※ 과거 2년간 2회 이상의 중국 출입기록 제출시 복수비자 가능

비자 종류	신청 목적	구비 서류
단체 L (단체관광)	단체관광 (최소 5인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한을 부여받은 초청여행사(inbound) 발급 단체비자용 "관광초청장" 2. 중국 국내 초청여행사(inbound) 발급 초청장 및 한국 초청여행사(outbound) 발급 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내 초청여행사(inbound) 초청장 : 초청여행사 명칭, 연락처, 주소, 기관 날인, 법정대표 또는 수권인 서명, 단체관광자 명단 및 구체적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여권번호 등 정보 포함 → 한국 초청여행사(outbound) 서한 : 단체여행사 명칭, 연락처, 주소, 기관 날인, 법정대표 서명 또는 날인, 단체관광 스케줄 등 포함
X1 (장기유학)	[180일 이상] 장기유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2.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1 또는 JW202) 원본 및 사본
X2 (단기유학)	[180일 이내] 단기유학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JW202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Z (취업)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취업허가통지" 출력본 또는 사본 ["외국인취업허가증", "외국전문가중국취업허가증"은 원본제출 가능] → 중국 공상행정관리부문 발급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사본 → 문화 주관부문 발급 상업성 문화예술공연허가서 원본 및 사본 [90일 이내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 "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 추가 제출] →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 발급 "외국문화센터직원고용확인서" 원본 및 사본 → 중국해양석유총공사 발급 "중국 내의 해상석유작업을 위한 외국인 초청장" 출력본 또는 사본
Q1 (장기 가족방문)	[180일 이상] 중국 국민(또는 중국 영구거류 자격 보유 외국인의 가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 작성한 초청장 또는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초청장 필수 포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초청인 개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초청인 방문정보 : 방문 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 예정지역 및 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공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 중국 신분증명(외국인 :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p>* 신청인 범위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p> <p>※ 위탁양육 등의 경우에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p>

비자 종류	신청 목적	구비 서류
Q2 (단기 가족방문)	[단기방문] 중국 국민(또는 중국 영구거류 자격 보유 외국 인)의 가족	1.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 자격 보유 외국인 작성 초청장 (초청장 필수 포함 사항) →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 중국 신분증명(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사본 제출시 3년 복수비자 가능
S1 (장기 개인사무)	[180일 이상]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 인의 가족 등	1. 중국 국내 거류 외국인 작성 초청장 (초청장 필수 포함 사항) →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 예정지역 및 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 신청인 범위: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 거류가 필요한 자
S2 (단기 개인사무)	[단기방문]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 인의 가족 등	1. 초청인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2.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초청장 필수 포함 사항) →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사본. * 신청인 범위: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방문의 경우는 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 라 관련 증명 서류 제출
F (방문)	교류, 방문, 답 사	중국 국내 관련기관 작성 초청장 (초청장 필수 포함 사항) → 피초청인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초청인 방문정보: 방문 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또는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 정보: 초청기관 명칭 또는 초청인 성명, 주소, 연락 처, 기관 날인, 법정대표 또는 기관 초청인 서명 등.

비자 종류	신청 목적	구비 서류
J1 (장기취재)	중국 상주 외국 언론기관 특파원	중국 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 발급 비자통지서 및 소속 언론사 발급 공문 * 비자 신청에 앞서 주한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 우선 처리 필수
J2 (단기취재)	취재·보도 목 적 단기 입국 외국 기자	중국 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발급 비자통지서 및 소속 언론사 발급 공문 * 비자 신청에 앞서 주한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 우선 처리 필수
C (승무원)	국제운송 종사자 (열차·항공기 승무원, 선원 및 동반 가족, 운전 기사)	외국 운송회사 발급 담보서 또는 중국내 관련 기관 발급 초청장
G (경유)	중국 경유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 (비행기, 차량, 선박)의 탑승권
R (인재)	외국 고급 인재 및 전문가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출력본
D (영구거류)	중국 영구거류	중국公安部 발급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일반 상황에서 비자신청 기준

■ 아래 자료는 2022.1월까지 확인한 것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하므로 유의하기 바람

(1) 주한중국공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비자: 외교, 공무, 긴급한 상황 등 경우

- * 예약없이 온라인 비자신청서만 작성, 출력, 서명 후 직접 주한중국공관에 신청서류 제출
- ① 한국 외교, 관용 여권 소지자, 한국 외교부에서 발급한 비자노트를 소지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주한 외국공관, 한국 주재 국제기구 대표처 직원과 가족, 한국 국회의원
- ② 가족 사망이나 중환자 방문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자(관련 증명서류와 신청하는 비자 종류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2) 중국 비자신청서서비스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비자: 일반 비자(외교 등은 제외)

- * 온라인 신청 후, 예약된 시간에 비자센터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
- ① 한국에 체류중인 모든 중국 비자 신청인(홍콩, 마카오 비자 제외)은 중국 비자신청서서비스센터의 웹사이트(<https://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 ② 확인페이지와 신청서 출력 후 관련 항목에 모두 서명
- ③ 비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
- ④ 비자예약 확인서 출력
- ⑤ 예약 시간에 상기 서류와 기타 서류를 비자센터에 제출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자신청 기준

- 아래 자료는 2022.1월까지 확인한 것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하므로 유의하기 바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유의사항〉(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2021. 8. 31일자 게재)

1. 2020년 9월 23일 중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공고 사항

→ 2020년 9월 28일부터 유효한 중국 취업류(Z), 개인사무류(S)와 가족동거류(Q)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2. 그 외 경우에는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자 신청 가능

(1) R(인재), S2(개인사무) 비자

→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출력본 소지 외국인은 R비자 신청 가능하며,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계증명서 (결혼증명, 출생증명 등) 제출하여 S2비자 신청 가능

(2) M(상업무역), F(방문), 개인사무(S1, S2) 비자

→ 상업무역, 과학교류 등 목적 방문 외국인 및 취업비자 소지자의 동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상업(M), 방문(F) 또는 개인사무(S1, S2) 비자 신청 가능

* 중국 국가기관, 중앙기업, 각 성 외사관공실 혹은 상무청 등의 기관 발급 초청장 제출

(3) Z(취업) 비자

→ 한중 양국 입국절차 간소화에 따라, 유효한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 또는 〈외국인취업허가증〉 등 제출하여 취업비자(Z) 신청 가능

(4) 유학(X1, X2) 비자

- 한중양국 입국절차간소화에 따라, 유효한 유학 거류허가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국 교육부 발급 <외국 인유학생 중국비자신청서>(JW201 또는 JW202) 원본과 학교 발급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하여 유학비자(X1, X2) 신청 가능
- 이미 재학중인 유학생은 기존 유학 거류증과 학교 발급 재학증명서 원본 제출

(5)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인도적 비자 신청 가능 (예: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 문상이나 위독한 환자 간병 목적으로 방문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 ② 중국 국적인 부모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국적 미성년 자녀
- ③ 질병 등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중국 국민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국적 배우자

(2), (3), (4), (5)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완료 및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비자 신청 가능

3. 신청 절차

→ 중국비자신청 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날짜 예약 후 신청

→ 비자별 필수 구비서류 이외에도 최근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입국 확인서(ENTRY CONFIRMATION)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중국비자신청 서비스센터에 문의 요망

※ 남산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번지 남산스퀘어 3층 (구: 극동빌딩)

- 전화: 02-750-9600 팩스: 02-750-9696

-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 외교, 공무 비자 신청은 직접 주한중국공관으로 연락

체류 (停留 · 居留) 관리

■ 아래 자료는 2022.1월까지 확인한 것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 가능하므로 유의하기 바람

중국은 법령에서 ‘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停留(단기체류)’³ 와 ‘居留(거류)’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단기체류 · 거류(停留居留)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외국인의 체류 구분

① 단기체류 (停留)

단기체류는 여행(L), 상업무역(M), 단기유학(X2), 단기친지방문(Q2), 단기개인사무(S2) 등 단기방문 목적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기방문 목적 비자 소지자의 중국내 체류 가능 기한은 비자에 기재된 기한에 따르며, 비자에 기재되는 체류기한은 최장 180일(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입니다.

※ 비자 또는 거류증 기간 만료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중국내 단기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증명하여 임시로 단기체류증(停留证件)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停留는 비자기간 180일 이내 (단 , 취업 관련 비자는 예외 있음) 의 단기체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자식 발음인 정류라는 용어 대신에 '단기체류'로 통일하여, 설명 및 번역에 사용하기로 함

4 居留는 일부 취업비자를 제외하고는 180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의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거류'로 통일하여, 설명 및 번역에 사용하기로 함

②거류 (居留)

거류는 취업(Z), 장기유학(X1), 장기친지방문(Q1), 개인사무(S1, 통상 동반 비자) 등 거류 목적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비자 외에 거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체류(停留)와 구별됩니다. 거류증의 유효 기간은 최단 180일(취업관련 거류증은 최단 90일)이며, 최장 5년입니다.

(2)주숙등기

-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인 <중국 출입경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공안 파출소에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
-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 체크인 시 여권과 유효한 비자를 제시하면 호텔에서 대리 주숙등기를 하게 되므로 별도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친척 집 등 일반 거주지에 머무는 경우, 직접 거주지 관할 공안 파출소에 방문하여 주숙등기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파출소마다 주숙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주숙등기를 마치면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는 비자에 기재된 단기체류 기한 내에서, 거류비자 소지자는 거류증 유효기간 내에서 합법적으로 단기체류·거류 할 수 있습니다.

住宿登记表 Accommodation Registration Form			表(三)
No.			
英文姓 Surname	英文名 First Name	性 别 Sex	北京时请持此文回派出所 
中文姓名 Name in Chinese	国 籍 Nationality	出生日期 Date of Birth	
证件类型 Type of Certificate	证件号码 Certificate No.	签证类别 Type of Visa	
签证有效期 Valid Visa	抵达时间 Date of Arrival	离京时间 Date of Departure	
住房种类 Housing Status	住 址 Address	社区民警	
派出所联系电话:			

<주숙등기증 예시>

(3) 거류증 (居留证件) 신청

· 거류 목적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안 출입경관리기구에 거류증(居留证件)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 위생검역기관 또는 현(县)급 이상 위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비자 종류별 제출해야 하는 거류증 신청 증명 서류〉

비자 종류	제출 서류
Z (취업)	○ 취업허가증(인력자원사회보장국 등 발급), 재직회사 초청장 - 재직회사 신용에 따라 거류기간 2년 또는 1년 미만의 거류증 발급
X1 (유학)	○ 재학증명서(학교 발급), 입학증명서 - 재학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거류증 발급
J1 (취재)	○ 기자증, 성(省)급 외사부처 초청장 - 거류기간 1년 미만의 거류증 발급
Q1 (중국가족방문)	○ 초청인(중국 국적)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서류 - 통상 거류기간 2년 미만의 거류증 발급
S1 (가족동반)	○ 초청인(기타 국적) 거류증, 가족관계증명 서류 - 통상 초청인의 중국 거류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거류증 발급

(4) 기간 연장

① 비자 연장 (단기방문 목적 비자 소지자)

- ◆ (신청기한) 비자에 기재된 단기체류기간 만료일 7일 전
- ◆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공안 출입경관리기관
- ◆ (필요서류) 유효한 여권, 규격에 맞는 사진, 외국인비자신청서, 기타 신청 사유 증명 서류(아래 표 참조)
- ◆ (처리절차)
 - ①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하여 접수증을 발급하며,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내에 연장 허가 여부 결정
 - ② 신청자는 연장허가 전까지는 발급 받은 접수증을 근거로 중국내 합법 체류 가능

〈주요 비자 종류별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 증명 서류〉

비자 종류	제출 서류	최대 연장가능 기한
공 통	○ 여권, 규격에 맞는 사진, 외국인비자신청서	
F (방문)	○ 중국내 초청 회사(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180일 이내
L (관광)	○ 여행계획서(단체여행일 경우 여행사 증명 서류)	30일 이내
M (상업무역)	○ 중국내 초청 회사(또는 개인)가 발급한 초청장	80일 이내
Q2 (중국가족방문)	○ 중국가족이 발급한 초청장, 초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80일 이내
S2 (가족동반)	○ 가족이 발급한 초청장, 외국인 거류증, 가족관계증명서	180일 이내
	○ 기타 인도적 사유의 개인사정의 경우 관련 사정 증명서류	180일 이내
X2 (유학)	○ 중국내 교육·훈련 기관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180일 이내

② 거류증 연장

- ◆ (신청기한)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
- ◆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공안 출입경관리기관
- ◆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와 동일(③ 거류증(居留证件) 신청'내용 참조)
- ◆ (처리절차)
 - ④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하여 접수증을 발급하며,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연장 허가 여부 결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급행발급 신청 가능)
 - ⑤ 신청자는 연장허가 전까지는 발급 받은 접수증을 근거로 중국내 합법 체류 가능

〈한중 · 외국인등록 제도 비교〉

구분		중국	한국
관련 법령		출입경관리법 외국인출입경 관리조례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비자의 일반적인 체류기간 상한		180일(취업사증 90일)	체류자격에 따라 다양하게 부여
체류 외국인의 의무	단기	24시간 내 주숙등기	일정조건 ⁵ 해당시 여권정보 제공
	장기	24시간 내 주숙등기 30일 이내 거류신청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영구	영구거류 신청	영주자격 신청

5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 발령시 숙박업소에 머무는 단기체류 외국인인 여권정보를 제공해야 함 .

Part II

중국내 여권 · 비자 · 체류 관련 Q&A

▶ 한국 여권 관련

- [1] 차세대 전자여권 소개
- [2] 중국내 한국 여권 및 비자 재발급 절차

▶ 중국 법률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및 구제

- [3] <출입경관리법>에서 규정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및 구제
- [4]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및 강제 송환

▶ 중국 비자 및 체류 관련

- [5] 중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 [6] 거류허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 [7] 이직 시 비자 및 외국인 취업허가증 변경
- [8] 외국인 비자 및 근무처 불일치 등 불법고용 시 처벌
- [9] 취업비자 기간연장 시 주의사항
- [10] 유학생의 법인 설립에 따른 Z비자 취득 방법

차세대 전자여권 소개

☞ 2021. 12.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이 개시된 차세대 전자여권은 아래와 같이 달라져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폴리카보네이트**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이 보다 향상되었습니다.

* 기존 여권번호 중 숫자 하나가 알파벳으로 변경 ('알파벳 1개+숫자 8자리' → '알파벳 1개 +숫자 3자리+알파벳 1개+숫자 4자리' (첫 알파벳은 여권 유형을 의미, 예: 복수(Multiple) 여권인 경우 'M' 으로 시작))

**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 내구성, 내충격성,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일반여권 표지>	<개인정보면>	<앞표지이면>	<사증면>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내 한국 여권 및 비자 재발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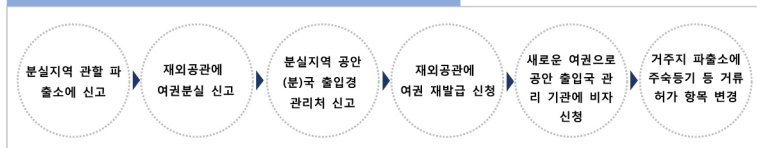
☞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해외 체류중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권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1) 분실 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신고증명서” 발급
- (2) 영사관에 방문하여 “여권말소증명(护照注销证明)” 발급 (파출소 "분실 신고증명서", 여권용 사진 1매 지참)
- (3) 분실 지역 관할 공안(분)국에 방문하여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 발급 (영사관 “여권말소증명(护照注销证明)”, 파출소 "분실신고증명서", 거주지 관할 파출소·호텔 등에서 발급 받은 "임시주숙등기표", 사진 2장 지참)
- (4) 영사관 방문, 여권 재발급 신청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 여권사진 2매 지참)
- (5) 재발급 여권으로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비자 신청

※ 일부 지역의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여권분실증명” 교부 시 비자 재발급 신청 기한을 지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

- (6) 거주지 파출소에 주숙등기 등 거류허가항목 변경

중국에서 여권분실 시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



※ 중국내 지역별 해당 관할기관마다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 파출소 및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관련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경관리법〉에서 규정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및 구제

☞ 중국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규정 및 구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입경관리법 주요 내용 및 처벌

현재 시행 중인 〈중국 출입경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은 특히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상 중국 공안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을 적발하면 유치장에 구류한 채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끝나면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추방을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 본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최고로 2만 위안 이하, 구류기간 15일 이하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한 본인뿐만 아니라 숨겨주는 등 도움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최고로 2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취업의 경우에는 고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최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과 15일 이하의 구류처분 및 이로 인해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장 등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출입경관리법〉은 출입국 시 지문을 채취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진과 지문을 대조하여 쉽게 불법입국자를 적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구제 절차

외국인이 불법체류 관련 처벌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상급 정부기관 또는 동급 인민정부에 이의(复议)을 신청하거나 직접 6개월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입경관리법 제64조).

또한 이의(复议)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15일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행정소송법 제45조, 제46조〉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및 강제 송환

☞ <출입경관리법>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및 강제 송환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중국 경내(境內)의 외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 경외(境外)로 출국이 금지됩니다(출입경관리법 제28조).

- ① 형사처벌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형사 사건의 피고인, 범죄 용의자인 경우, 단 중국과 다른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송환되는 수형자는 예외
- ② 미 종결된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을 금지한 경우
- ③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국무원 관련 부서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국을 금지한 경우
- ④ 법률, 행정 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된 경우

2. 외국인에 대한 강제송환

중국 경내(境內)의 외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 경외(境外)로 강제 송환될 수 있습니다(출입경관리법 제62조).

- ① 기한 내 출국해야 함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불법 거류, 불법 취업한 경우
 - ④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송환이 필요한 기타 경우
- 위와 같이 송환된 자는 송환일로부터 5년 내에 중국 입경이 금지됩니다.

중국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 중국의 비자는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그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의 유효기간이 1년이고 복수 입국이 가능할지라도 체류기간이 30일 이라면 체류기간 내에 서만 체류할 수 있으며, 더 체류하고자 할 때는 기간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비자의 경우는 별도로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학, 취업, 결혼과 같이 장기간 거류가 가능한 장기비자의 경우, 입국 후 30일 내에 거류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지 않으면 불법체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대학교는 방학기간 대부분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거류증 발급시 요구되는 학교 명의 확인서를 3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 일단 귀국하여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 중국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사례 예시)

A는 유효기간이 1년인 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했으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나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B는 결혼을 하여 장기비자를 받았으나 역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실수를 했으며,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는 비자의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한 실수를 한 경우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B는 장기비자를 받은 경우로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류허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 <중국 출입경관리법>은 ‘외국인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성명, 국적, 직업 또는 신분, 직장, 주소, 여권번호, 동반자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지자는 10일 이내에 거주지 공안국에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3조)

또한, 외국인 거류증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소지자가 규정대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와 동시에 2,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6조 제1항)

아울러 동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변경등록 사항을 제때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법 제62조)

(사례 예시)

2021년 3월, 한국인 C는 IT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직 후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하였지만, C는 여권에 스티커로 부착된 “중국 외국인 거류허가”상의 기간 만료 일자가 2021년 10월 23일 까지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0월에 변경할 생각으로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 거류허가를 적시에 변경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C는 이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공안국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안당국에 적발되었을 경우, 경고 또는 2,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 시 비자 및 외국인 취업허가증 변경

☞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에 비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처 변경 시 취업허가증을 변경하고 비자도 새로운 근무처 명의로 변경신청을 하여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무 중 타기업으로 이직하려면 <중국 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37조 규정에 따라 30일 전에 고용기업에 통지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 해지 후 원 근무처로부터 회사도장을 날인한 근무경력증명서, 이직증명서(퇴직한 사유 및 시간 등을 설명하여야 함), 근로허가증 원본을 받은 후, 원 근무처에서 외국전문가국에 취업허가증 말소 신청을 하여 원 취업허가증을 말소하고 말소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말소증명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새로운 근무처에 취직 후 새로운 근무처에서 외국전문가국에 근무처 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취업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근무직위가 변경될 경우에는 취업허가증 변경이 불가능하고 새롭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출입경관리기관에 비자변경 신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근무처에서 전문교육비용을 제공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노동계약 중 의무 근무기간을 약정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중국 노동계약법> 제 22조에 따라 약정 내용에 의거하여 마땅히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한편 취업비자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출입국 관리 규정의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비자 및 근무처 불일치 등 불법고용 시 처벌

☞ 중국의 외국인 고용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자(签证, Visa)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내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Z비자(취업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중국내 외국인 취업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8조]

만약 외국인이 F비자임에도 불법취업한 경우, 근로자는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불법고용한 외국인 한 사람당 1만 위안, 총액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및 위법소득을 몰수 당할 수 있습니다. (출입경관리법 제80조)

즉 회사 내 한국직원이 F, X, L 등의 비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Z비자 및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실제 근무처와 취업허가증에 기재된 근무처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A 회사의 소속으로 된 Z비자 및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B회사에 근무할 경우, 노동행정부문에서 취업허가증을 몰수하고 공안국에서 거주자격을 취소한 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중국내 외국인 취업관리규정 제28조)

또한 외국인은 취업허가증에 기재된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아래 상황에 따라 취업허가증을 변경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내 외국인 취업관리규정 제23조)

- ① 외국인은 원 비준구역 내에서(예: 베이징) 원 근무처를 사직하고, 새로운 근무처에 취직하여 계속 원래 업무(原职务)에 종사할 경우, 원 발행

기관 (취업허가증 발행기관)의 기준을 거쳐 취업허가증 변경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취업허가증 변경수속은 취업허가증에 기재된 근무처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 ② 외국인은 원 비준구역(예: 베이징)을 벗어나 다른 구역(예: 톈진)에 위치한 근무처로 새로 취직하거나, 원 비준구역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원래 업무(原职务)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다시 취업허가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때는 취업허가증을 처음부터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단순한 근무처 명칭 변경보다는 그 절차가 비교적 번거롭습니다.

취업비자 기간연장 시 주의사항

☞ 취업비자 기간연장 신청은 비자 만기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취업비자 기간을 연장하려면 우선 취업허가증의 허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 연장기간은 법적으로 기간 만기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취업허가증의 허가기간 연장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2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내 외국인 취업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18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고용주가 노동행정부처에 고용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취업허가증 연장수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실무적 절차도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생의 법인 설립에 따른 Z 비자 취득 방법

☞ 유학생이 중국에서 창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거류허가 취득 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Z 비자의 일반적 취득 요건

일반적으로 Z비자는 2년 이상 근무 경력 및 학사 이상 졸업증이 필요합니다.

2. 유학생의 경우

다만, 중국에서 학교를 막 졸업하였거나 근무경력이 없다고 해서 Z비자의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기구를 통하여 중국에 법인체를 설립하면 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거류 정책(国务院关于强化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进一步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深入发展的意见, 国发[2017]37号)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유학생이 제출한 '대학졸업증'과 '창업계획서'를 근거로 개인 사무(私人事务) 거류 사유를 인정하며, 유학생이 창업 후 기업등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허가와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안부는 자유무역시험구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던 창업비자 관련 정책을 2017년 8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국의 중점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가 졸업 후 중국에서 혁신창업 활동을 할 경우 2~5년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일부 지방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창업자 대상 개인사무 거류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중관촌의 경우, 유학생 졸업자가 개인사무(私人事务) 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기관 입주, 법인설립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Z비자 취득 사례)

베이징대 경영학과 외국인 졸업생 D는 베이징시 하이테크 창업원 입주(3년 계약, 임대료 무료) 및 법인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중관촌 관리위원회로부터 창업계획서를 승인 받았고, 이후 베이징시 공안국에서 유효기간 3년의 개인사무 거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Part III

출입국 관련 법령 (번역문)

1. 법령 번역문

➤ 출입경 관련 법령

- [1] 중국 출입경관리법 / [2] 중국 외국인출입경 관리조례
- [3] 중국 출입경 변방감사 조례 / [4] 외국인 강제출경 집행 방법에 관한 규정
- [5] 외국인과 중국 공민의 출경 제한 문제에 관한 규정

➤ 비자 및 체류 관련 법령

- [6] 외국 인재 비자제도 실시방법 / [7] 중국내 외국인 취업관리 규정
- [8] 외국인의 재중국 영구거류 관련 대우에 관한 방안
- [9] 외국인 중국 영구거류 심사비준 관리방법

➤ 중국 형법(출입국 관련 조항) 및 반테러법

- [10] 중국 형법(출입국 관련 조항) / [11] 중국 반테러(反恐怖主义)법

➤ 중국 국민, 귀국동포, 기타 관련 법령

- [12] 중국 국민 출국여행 관리방법 / [13] 중국 귀국동포, 동포가족 권익 보호법
- [14] 중국 여권법 / [15] 중국 국적법

➤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안내자료

- [16] 중국 비자 개요 / [17] 외국인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 신청 안내
- [18] 외국인 도착비자 신청 유의사항

Part III

출입국 관련 법령 (원문)

2. 법령 원문

▶ 출입경 관련 법령

- [1]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 [2]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 [3]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 [4] 关于强制外国人出境的执行办法的规定
- [5] 关于依法限制外国人和中国公民出境问题的若干规定

▶ 비자 및 체류 관련 법령

- [6] 外国人才签证制度实施办法 / [7]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 [8]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享有相关待遇的办法
- [9]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

▶ 중국 형법(출입국 관련 조항) 및 반테러법

- [10] 中华人民共和国刑法[有关出入境条款] / [11]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 중국 국민, 귀국동포, 기타 관련 법령

- [12]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 [13]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 [14] 中华人民共和国护照法 / [15]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안내자료

- [16] 来华签证简介 / [17] 外国人申请签证证件须知 / [18] 外国人申请口岸签证须知

1. 법령 번역문

▶ 출입경 관련 법령

[1] 중국 출입경관리법 (2013. 7. 1. 개정시행, 주석령)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중국 공민 출입경

제3장 외국인 출입경

제1절 비자

제2절 출입경

제4장 외국인 단기체류 및 거류

제1절 단기체류 및 거류

제2절 영구거류

제5장 교통운수수단 출입경심사

제6장 심사 및 송환

제7장 법적책임

제8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1조 출입경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사회질서를 수호하며 대외교류와 대외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국 국민의 출입경, 외국인의 출입경, 외국인의 중국 경내 단 기체류 및 거류 관리, 교통운수수단의 출입경심사에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중국 국민의 출입경에 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 경내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중국 경내 외국인은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회 공공 이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

제4조 공안부, 외교부는 각자 직책에 따라 출입경 관련 업무 관리를 책임진다.

재외 중국 대사관, 영사관 혹은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이하 '재외 비자기관'이라 한다)은 국외에서 외국인의 입경 비자 발급을 책임진다. 출입경 변방검사기관(出入境边防检查机关)은 출입경 심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그 출입경관리기구(出入境管理机构)는 외국인의 단 기체류 및 거류를 책임진다.

공안부, 외교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의사 담당기관에 외국인 입경, 단 기체류 및 거류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경 업무 관리 관련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무원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며, 각자의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법에 의거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국가는 통일된 출입경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대외 개방된 공항만에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을 설립한다.

중국 국민, 외국인 및 교통운수수단은 대외 개방된 공항만을 통해 출입경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국무원 혹은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비준한 장소에서 출입경 해야 한다. 출입경 하고자 하는 자나 교통운수수단은 출입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공항만 제한 지역의 관리를 책임진다. 국가 안보와 출입경 관리 질서 수호를 위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 하고자 하는 자가 휴대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필요시 출입경 교통 운수수단에 적재된 화물을 검사할 수 있으나 세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公安부와 외교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출입경 관리의 필요에 따라 출입경 하고자 하는 자의 지문 등 생체 식별 정보를 수집·보관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외국 정부가 중국 국민 대상 비자 발급, 출입경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중국 정부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출입경 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부처와 기관은 서비스 및 관리 수준 제고, 공정한 법 집행, 국민의 편의, 안전과 신속한 출입경 절차 수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장 중국 공민 출입경

제9조중국 공민은 출입경 시 법에 의거해 여권 혹은 기타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공민이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비자 또는 입경 허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해당 국가 정부가 상호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혹은公安부, 외교부가 별도 규정한 곳을 방문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중국 공민이 선원 신분으로 출입경하거나 외국 선박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법에 의거해 선원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중국 공민이 내륙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왕래하거나 혹은 중국 대륙에서 대만 지역을 왕래하고자 할 경우 법에 의거해 통행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1조중국 공민이 출입경하고자 할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여행 증명서 등 출입경 증명서를 제출해 심사 받아야 하며, 규

정에 따라 수속 및 심사 후 허가를 받아야 출입경 할 수 있다.

관련 조건을 구비한 공항만,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중국 국민의 출입경을 위한 전용 통로를 설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국 국민은 출경을 금지한다.

- (1) 유효한 출입경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출입경심사를 거절 혹은 회피하는 경우
- (2) 형사처벌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혹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 범죄 용의자인 경우
- (3) 미 종결된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경을 금지한 경우
- (4) 국경(변경)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았거나 혹은 불법 출경, 불법 거류, 불법 취업으로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송환된 후 출경 금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5) 국가 안보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국무원 관련 기관이 출경을 금지한 경우
-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출경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 귀국해 정착하고자 할 경우 입경 전 중국 재외 대사관, 영사관 혹은 재외비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본인 또는 국내 친척의 거주 예정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무(侨务) 담당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제14조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 중국 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전신, 사회보험, 재산 등록 등 업무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본인 여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 출입경

제 1 절 비자

제15조 외국인이 입경하고자 할 경우 재외비자기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나,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비자는 외교 비자, 예우(禮遇) 비자, 공무 비자, 일반 비자로 구분한다.

외교 및 공무적인 사유로 입경하는 외국인에게는 외교 비자 또는 공무 비자를 발급한다. 특수한 신분으로 예우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예우 비자를 발급한다. 외교 비자, 예우 비자, 공무 비자의 발급 범위와 방법은 외교부에서 규정한다.

취업, 학습, 친지 방문, 여행, 비즈니스, 인재 유치 등 비외교, 비공무 사유로 입경하는 외국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일반 비자를 발급한다. 일반비자의 유형과 발급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7조 비자 기재 항목은 비자 유형, 소지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경 횟수, 입경 유효기간, 단기체류 기간, 발급일, 발급 장소, 여권 혹은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번호 등이다.

제18조 외국인이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비자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및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외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 및 면담을 해야 한다.

제19조 외국인이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중국 국내 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외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초청장을 작성한 기관 혹은 개인은 초청장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히 입경하는 외국인, 초청에 응하여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 혹은 기타 긴급한 사유로 주관 기관의 도착 비자 신청 동의 증명자료를 소지하고 입경하는 외국인은 국무원이 도착 비자 업무 비준을 한 공항만에서 공안부 위탁 도착비자기관(이하 '도착비자기관'이라 한다)에 도착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여행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경 관광객을 모집한 경우 도착비자기관에 단체 여행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도착비자기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및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도착 비자 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하며 비자 발급을 신청한 국경을 통해 입경해야 한다.

도착비자기관이 발급한 비자는 일회성으로 체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 (1) 추방 혹은 송환 당해 출경한 뒤 입경 금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2) 심한 정신 장애, 전염성 폐결핵 혹은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우
- (3)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 공공질서 파괴 혹은 기타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비자 신청 과정 중 허위 조작을 하거나 중국 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를 보증할 수 없는 경우
- (5) 비자 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6) 비자 기관이 비자 발급이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 기관은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제2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이 면제된다.

- (1) 중국정부와 기타 국가 정부가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면제 대상에 속하는 경우
- (2)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이 있는 경우
- (3) 국제노선의 항공기, 선박, 열차의 경유 표가 있어 해당 수단으로 중국을 통해 제3국 혹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중국 내 단기체류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공항만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국무원이 비준한 특정 구역 내에서 규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 (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비자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임시 입경하고자 할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임시 입경 수속 신청을 해야 한다.

- (1) 외국 선원 및 그 동반 가족이 항구 소재 도시에 도착한 경우
- (2) 이 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공항만을 떠나고자 할 경우
- (3) 불가항력적 혹은 기타 긴급한 사유로 임시 입경이 필요한 경우 임시 입경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 입경 수속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외국인 본

인, 입경에 이용한 교통수단의 책임자 혹은 교통수단의 출입경 업무 대리 기관에 필요한 보증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출입경

제24조 외국인이 입경하고자 할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비자 혹은 기타 입경 허가 증명서를 제출해 심사 받고 규정에 따라 수속을 한 뒤 허가를 받아야 입경할 수 있다.

제25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경을 불허한다.

- (1) 유효한 출입경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출입경심사를 거절 혹은 회피하는 경우
- (2) 이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속하는 경우
- (3) 입경 후 비자 유형과 다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입경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입경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제26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입경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에게 출경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강제로 출경시켜야 한다. 해당 외국인은 출경할 때까지 제한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제27조 외국인이 출경하고자 할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등 출입경 증명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수속을 한 뒤 허가를 받아야 출경할 수 있다.

제28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출경을 금지한다.

- (1) 형사처벌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혹은 형사사건의 피고인, 범죄 용의자인 경우, 단 중국과 다른 국가가 체결한 관련 협정에 따라 송환되는 수형자는 예외
- (2) 미 종결된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경을 금지한 경우
- (3)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해 국무원 관련 기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경을 금지한 경우
- (4)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출경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4 장 외국인 단기체류 및 거류

제 1 절 단기체류 및 거류

제29조 외국인이 소지하는 비자에 기재되는 단기체류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자 소지자는 비자에 기재된 단기체류 기간 내에만 중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비자의 단기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체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하고,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장 사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할 경우에 단기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연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기체류 기간 내에 출경해야 한다.

연장된비자의누적 연장 기간은 기존 비자에 기재된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비자를 통해 입경한 외국인이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입경 일로부터 3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외국인 거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거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및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문 등 생체 식별 정보를 남겨야 한다.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 및 결정을 완료해야 하며 거류 사유에 근거해 상응하는 유형과 기간의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 취업 관련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최단 90일, 최장 5년이며, 비취업 유형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최단 180일, 최장 5년이다.

제31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발급을 불허한다.

- (1) 소지한 비자가 외국인 거류증 발급이 불가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
- (2) 신청 과정 중 허위 조작을 한 경우
- (3)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4)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해 중국 내 거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 (5) 발급 기관이 외국인 거류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 투자자 혹은 인도주의의 등 사유로 단기체류를 거류로 바꿀 필요가 있는 외국인은 설구시(设区市)⁶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32조 중국 내 거류 중인 외국인이 거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하며, 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장 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할 경우에 거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며,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류 기간 내에 출경해야 한다.

제33조 외국인 거류증 기재 항목은 소지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거류 사유, 거류 기간, 발급일, 발급 장소, 여권 혹은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번호 등이다.

외국인 거류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소지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변경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34조 비자 면제로 입경한 외국인이 비자면제기간 초과 후에도 중국 내에 단기체류 하고자 할 경우, 외국 선원 및 그 동반 가족이 중국 내에서 단기체류하다 항구 소재 도시를 떠날 경우, 혹은 외국인 단기체류증(停留证件)⁷을 발급받아야 하는 기타 사유에 속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외국인 단기체류증을 발급한다.

외국인 단기체류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제35조 입경한 외국인이 소지한 일반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을 훼손, 분실, 도난하거나 혹은 국가가 규정한 교환,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단기체류지, 거류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한다.

제36조 일반 비자의 기간연장, 교환, 재발급, 외국인의 단기체류증 및 거류증 발급, 거류 기간 연장의 최종 불허 결정자는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이다.

제37조 중국 내에서 단기체류 혹은 거류하는 외국인은 단기체류 및 거류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규정한 단기체류 및 거류 기간 만료 전에 출경해야 한다.

6 직할시 외에 직할구가 있는 시 또는 직할구가 있고 현, 자치현, 기(旗), 자치기(自治旗)를 관리하며, 현급 시를 대리 관리하는 지급시

7 본서에서 사용하는 '단기체류증'이라는 용어는 동법 제 34 조 등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으로, 비자소지자의 중국내 '단기체류(停留)'라는 용어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

제38조 만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중국 내에 단기체류 또는 거류할 경우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혹은 외국인 단기체류증, 거류증을 항상 휴대하고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된 시간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외국인 거류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외국인이 중국 내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숙박시설은 숙박업 치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하며, 소재지 공안기관에도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숙박시설 외의 기타 장소에서 거주 또는 투숙할 경우 입주일로부터 24시간 내에 본인 혹은 유숙인(留宿人)이 주거지 공안기관에서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제40조 중국 내에서 외국인 신생아가 출생한 경우, 그 부모 혹은 대리인이 출생 60일 내에 해당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부모의 단기체류지, 거류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방문해 단기체류 혹은 거류 등기를 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사망한 경우 그 가족, 후견인, 대리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사망 증명서를 소지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방문해 해당 사항 통지 및 외국인 단기체류증, 거류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41조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취업할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증(工作许可证)과 취업 유형에 따른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취업허가증과 취업 유형에 따른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2조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기관, 외국 전문가 주관기관은 국무원 관련 기관과 함께 경제사회 발전 수요와 인력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지도 목록을 제정 및 정기 조정해야 한다.

국무원 교육 주관기관은 국무원 관련 기관과 함께 외국 유학생 근로활동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외국 유학생 근로 활동 범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제43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한다.

- (1)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증과 취업 유형에 따른 서류증을 받지 않고 중국 내에서 취업한 경우
- (2) 허가된 취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국 내에서 취업한 경우
- (3)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 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된 활동 범위 혹은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제44조 국가 안보, 공공안전 수호의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 국가 안보기관은 외국인, 외국기관이 일정 지역에 거주 혹은 사무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설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한 내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비준을 받지 못한 외국인은 외국인 출입 제한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제45조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 기관은 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외국인의 불법 입경, 불법 거류, 불법 취업 정황을 발견했을 경우 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46조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 심사 기간에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으로 중국 내에 단기체류 할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난민 신분증으로 중국 내 단기체류·거류할 수 있다.

제 2 절 영구거류

제47조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명확한 기여를 했거나 기타 중국 내 영구거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본인 신청과 공안부 비준을 거쳐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내 영구거류에 대한 심사 관리 방법은 공안부, 외교부가 국무위원 관련 기관과 함께 규정한다.

제48조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구거류증으로 중국 내에서 거류 및 취업이 가능하며, 본인의 여권과 영구거류증으로 출입경 할 수 있다.

제49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공안부가 그 중국 내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한다.

- (1)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 (2) 강제 추방된 경우
- (3) 허위 조작으로 중국 내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4) 중국 내 거류 기간이 규정된 기간에 못 미치는 경우
- (5) 중국 내 영구거류가 적절하지 않은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5 장 교통운수수단 출입경심사

제50조 출입경하는 교통운수수단이 공항만을 떠나거나 도착한 경우 출입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운수수단의 입경심사는 최초로 도착한 공항만에서 한다. 교통운수수단의 출경심사는 마지막으로 떠나는 공항만에서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관련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심사한다.

출경하는 교통운수수단은 출경심사 후 출경 전, 입경하는 교통운수수단은 입경 후 입경심사 전까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인원의 승하선, 적재화물 혹은 물품의 하역이 금지된다.

제51조 교통운수수단의 책임자 혹은 교통운수수단의 출입경 업무 대리 기관은 규정에 따라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출입경하는 교통운수수단의 공항만 입항 및 출항 시간과 단기체류 장소, 직원, 여행객, 화물 및 물품 등의 정보를 사전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52조 교통운수수단의 책임자, 교통운수수단의 출입경 업무 대리 기관은 출입경심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입경한 교통운수수단에 입경이 허가되지 않는 자가 탑승한 경우 교통운수수단 책임자가 책임지고 돌려보내야 한다.

제53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출입경 교통운수수단에 대해 보호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1) 출경하는 교통운수수단은 출경심사 시작부터 출경 전, 입경하는 교통운수수단은 입경 후부터 입경심사 완료 전까지

(2) 외국 선박이 중국 내에서 항행하는 기간

(3) 보호 및 감독이 필요한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 물품 하역, 보수작업, 참관 방문 등의 사유로 외국 선박 탑승자의 승하선이 필요한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승선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선박과 외국 선박 혹은 외국 선박 간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장 혹은 교통운수수단 출입경 업무 대리 기관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선박 간 작업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55조 중국 내에서 외국 선박, 항공기는 규정된 노선, 항선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출입경 선박, 항공기는 대외적으로 개방된 공항만 외의 지역으로 입항할 수 없다.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혹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입항해야 할 경우 즉시 인근 출입경변방검사기관 혹은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보호,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운수수단은 출입경 허가를 불허한다. 이미 공항만을 출발한 경우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

- (1) 공항만 출발 및 도착 시 심사 및 허가 없이 출입경한 경우
- (2) 공항만을 비준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3) 출입경 허가를 받지 못하는 자가 탑승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4) 국가 안보, 이익, 사회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물품을 적재한 혐의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5)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관리를 거절한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관련 교통운수수단의 운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

제57조 교통운수수단의 출입경 업무 대리 기관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업무 대리자의 등록 수속은 당사자의 소속 기관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서 한다.

제 6 장 심사 및 송환

제58조 본 장에서 규정하는 현장 심문, 지속 심문, 구류 수사, 활동 범위 제한, 송환 조치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59조 출입경 관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현장 심문을 할 수 있다. 현장 심문 후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법에 의거해 지속 심문을 할 수 있다.

- (1) 불법으로 출입경한 혐의가 있는 경우
- (2) 타인의 불법 출입경에 협조한 혐의가 있는 경우
- (3) 외국인이 불법 거류, 불법 취업한 혐의가 있는 경우
- (4) 국가 안보와 이익에 위해를 가하고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위법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장 심문과 지속 심문은 <중국인민경찰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이 출입경 관리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자의 소환이 필요한 경우 <중국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의거해 집행한다.

제60조 이 법 제59조 제1항 규정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현장 심문 혹은 지속 심문 후에도 혐의가 있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구류 수사를 할 수 있다.

구류 수사를 할 경우 구류 수사 결정서를 제시하고 24시간 내에 심문(询问)을 완료해야 한다. 구류 수사가 필요 없다고 확인될 경우 즉시 구류 수사를 철회해야 한다.

구류 수사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상일급(上一级)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받아 6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의 경우 구류 수사 기간을 그 국적과 신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61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구류 수사를 하지 않으나 그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2) 임신 혹은 수유 중인 만 1세 이하 영아가 있는 경우
- (3) 만 16세 미만 혹은 만 70세 이상인 경우
- (4) 구류 수사가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유에 속하는 경우

활동 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필요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하며 공안기관의 비준 없이는 제한된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활동 범위 제한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적,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의 경우 활동 범위 제한 기간을 그 국적과 신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6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 송환할 수 있다.

- (1) 기한 내 출경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
- (2) 입경이 불허된 경우
- (3) 불법 거류, 불법 취업한 경우
- (4) 이 법 혹은 다른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해 송환이 필요한 경우

기타 해외입국자(境外人員)가 상기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법에 의거해 송환할 수 있다.

송환된 자는 송환일로부터 5년 내에 입경이 금지된다.

제63조 구류 수사 혹은 송환이 결정되었으나 즉각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구류소 혹은 송환 장소에 구금한다.

제64조 외국인이 이 법 규정에 의거해 취한 지속 심문, 구류 수사, 활동 범위 제한, 송환 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해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재의에서 결정되는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

기타 외국인 혹은 다른 지역 주민이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해 취한 송환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 항을 적용한다.

제65조 법에 의거해 출입경 금지가 결정된 자에 대해 결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출입경 금지 처분이 해제된 경우 결정기관은 즉시 출입경 금지 결정을 취소하고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6조 국가 안보와 출입경 관리 질서 유지의 필요에 따라 출입경변방검사 기관은 필요시 출입경자에 신체수색을 할 수 있다. 신체수색은 수색을 받는 자와 동일한 성별의 출입경변방검사기관 직원 두 명이 한다.

제67조 비자, 외국인 단기체류증, 기류증 등 출입경 증명서가 훼손, 분실, 도난되거나 혹은 발급 후 해당인이 발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발급기관은 해당 출입경 증명서의 폐기를 공표해야 한다.

위조, 변조, 편취 혹은 증명서 발급 기관이 폐기를 공표한 출입경 증명서는 무효로 한다.

공안기관은 전 항에서 규정하거나 타인에 도용된 출입경 증명서에 대해 말소 혹은 압수할 수 있다.

제68조 공안기관은 타인의 불법 출입경 조직, 운송, 협조에 사용한 교통운수 수단과 사건 처리에 필요한 증거 물품을 압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수색 시 발견한 금지 물품, 국가 기밀 관련 문서 및 자료, 출입경 관리 활동 위반에 사용한 도구 등을 압수하고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9조 출입경 증명서의 진위 여부는 발급기관, 출입경변방검사기관 혹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가 판단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70조 본 장에서 별도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이 본 장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을 결정한다. 그중 경고 혹은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은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1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하며,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다.

- (1) 위조, 변조, 편취한 출입경 증명서로 출입경한 경우
- (2) 타인의 출입경 증명서를 도용해 출입경한 경우

(3)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심사를 회피하는 경우

(4) 기타 방식으로 불법 출입경한 경우

제72조 타인의 불법 출입경에 협조한 경우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 처분 및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기관이 전 항의 행위를 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또한, 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인사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를 전 항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제73조 허위 조작으로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 등 출입경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2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 및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관이 전 항의 행위를 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인사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를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제7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해 외국인에게 초청장 혹은 다른 신청 자료를 작성해준 경우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하며 초청한 외국인의 출경 비용을 모두 책임지도록 명한다.

기관이 전 항의 행위를 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또한, 초청한 외국인의 출경 비용을 모두 책임지도록 명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인사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를 전 항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제75조 중국 국민이 출경 후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을 불법 방문해 송환된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그 출입경 증명서를 압수하고 출입경 증명서 발급 기관은 그 송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하 기간 내에 출입경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76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하고 동시에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출입경 증명서 심사를 거부한 경우
- (2) 외국인이 거류증 심사를 거부하며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3) 규정에 따라 외국인 출생 등록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 외국인 거류증의 등록 사항의 변경되었음에도 규정에 따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5)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 타인의 출입경 증명서를 도용한 경우
- (6) 이 법의 제39조 제2항에 따라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숙박업소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중국치안관리 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고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7조 외국인이 비준을 받지 않고 외국인 출입 제한 구역에 진입한 경우 즉시 해당 구역을 떠날 것을 명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한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얻은 문자 기록, 오디오·비디오 자료, 전자 데이터 및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압수 혹은 폐기하며, 사용한 도구 역시 압수한다.

외국인, 외국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안기관, 국가 안보기관의 기간 내 퇴거 결정을 거부할 경우 경고 및 강제 퇴거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한다.

제78조 외국인이 불법 거류한 경우 경고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총액이 1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불법 거류일 당 500위안씩 부과하거나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한다.

후견인 혹은 기타 후견 책임이 있는 자가 그 후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만 16세 이하 외국인이 불법 거류한 경우 그 후견인 혹은 기타 후견 책임이 있는 자에 경고하며, 동시에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9조 불법 입경 혹은 거류한 외국인을 수용 또는 은닉, 불법 입경 혹은 불법 거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협조 혹은 불법 거류한 외국인을 위해 출입경 증명서를 불법 제공한 경우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 및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기관이 전 항의 행위를 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인사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를 전 항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제80조 외국인이 불법 취업한 경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 및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소개한 경우 불법 소개를 한 자에게 총액 5만 위안 이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불법 소개한 사람당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관에 대해서는 총액 10만 위안이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불법 소개한 사람당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경우 총액 10만 위안이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불법 고용한 사람당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제81조 외국인이 단기체류·거류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기타 중국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해 중국 내 계속 단기체류·거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출경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외국인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그 사안이 심각하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안부는 강제 추방할 수 있다. 공안부의 처벌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본다.

강제 추방된 외국인은 추방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중국 입경이 금지된다.

제8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하고 동시에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공항만 제한 구역의 관리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2) 외국 선원 및 그 동반 가족이 임시 입경 수속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3) 승선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 선박에 승하선 한 경우

전 항의 제1호 규정을 위반하고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다.

제83조 교통운수수단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책임자에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심사, 허가 없이 출입경 하거나 비준 없이 임의로 공항만을 변경한 경우
- (2) 규정에 따라 직원, 여행객, 화물 또는 물품 등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출입경심사 협조를 거절한 경우
- (3) 출입경심사 규정을 위반하고 인원이 승하선하거나 화물 또는 물품을 하역한 경우

출입경 교통운수수단이 출입경이 금지된 자를 태우고 출입경 했을 경우 출입경이 금지된 사람당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운수수단 책임자가 합리적 예방 조치를 취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84조 교통운수수단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책임자에게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중국 혹은 외국 선박이 비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타 외국 선박과 작업한 경우
- (2) 외국 선박, 항공기가 중국 내에서 규정된 항로로 운항하지 않은 경우
- (3) 출입경한 선박, 항공기가 규정을 어기고 대외 개방된 공항만 외의 지역으로 입항한 경우

제85조 출입경 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에 의거해 처벌한다.

- (1)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규정 조건에 맞지 않는 외국인에게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 등 출입경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2)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규정 조건에 맞지 않는 자 혹은 교통운수수단의 출입경을 허가한 경우
- (3) 출입경 관리 업무 중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 (4) 법에 의거하여 수납한 비용, 벌금 및 몰수한 위법 소득, 불법 재물을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 (5) 벌금, 압수한 물품 혹은 수납한 비용을 개인이 나눠 가지거나, 점유 이탈 횡령, 유용한 경우

(6) 직권 남용, 직무 소홀, 사리사욕 등 법으로 규정한 직무 외의 기타 행위를 한 경우

제86조 출입경 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현장에서 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제87조 출입경 관리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처벌받은 자는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정 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처벌받은 자가 고정된 소재지가 없고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지 않을시 이를 집행하기 어렵거나 공항만에서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한다.

제8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해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8 장 부칙

제89조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출경이란 중국 내륙에서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가는 경우, 중국 내륙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가는 경우, 중국 대륙에서 대만 지역으로 가는 경우를 말한다.

입경이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는 경우,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는 경우, 대만 지역에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이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한다.

제90조 주변 국가와 인접한 성, 자치구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중국 및 관련 국가가 체결한 국경관리협정(边界管理协定)에 근거해 양국 접경 지역 주민들의 왕래에 관한 지방 법규, 지방정부 규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91조 주중국 외국 대표기관, 영사기관 인원 또는 특권 및 면제 권한이 있는 기타 외국인의 출입경 및 단기체류·거류 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의거한다.

제92조 외국인이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 등 출입경 증명서 발급 및 기간

연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비자 및 증명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93조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과 <중국국민출입경관리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2] 중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조례 (2013. 9. 1. 개정시행, 국무원령)

제 1 장 총칙

제1조 비자 발급 및 중국 내 외국인의 단기체류·거류 서비스와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출입경관리법〉(이하 '출입경관리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외국인 출입경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 업무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외국인 출입경 서비스 및 관리 업무 조정 시스템의 필요에 근거하여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외국인의 출입경 서비스와 관리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조 공안부는 국무원 유관기관과 외국인 출입경 서비스 및 관리 관련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 비자 발급 관리와 중국 내 외국인의 단기체류·거류 관리 업무 중, 외교부, 공안부 등 국무원 기관은 기관의 공식 사이트, 출입경 증명서 신청 접수 장소 등에 외국인 출입경 관리 법률·법규와 기타 외국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제 2 장 비자 유형과 발급

제5조 외교비자, 예우비자, 공무비자의 발급 범위와 방법은 외교부가 규정한다.

제6조 일반 비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비자에는 관련 중국어 병음 자모를 기재한다.

- (1) C비자는 승무, 항공, 해운 등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 열차 승무원, 항공기 승무원, 선박 선원 및 그 동반 가족, 국제도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발급한다.

- (2) D비자는 중국 내에서 영구거류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 (3) F비자는 교류, 방문, 시찰 등을 위해 입경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 (4) G비자는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 (5) J1비자는 중국 주재 해외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중국에 상주하려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한다. J2비자는 중국을 단기간 방문하여 보도 취재하려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한다.
- (6) L비자는 관광객에게 발급하며, 단체 관광객일 경우, 단체 L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 (7) M비자는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 무역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 (8) Q1비자는 친지 방문을 사유로 중국 내에 거류해야 하는 중국 공민의 가족,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 및 입양 등의 사유로 중국 내에 거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Q2비자는 중국 내에 거주 중인 중국 공민인 친족, 영구 거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 친족을 단기 방문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 (9) R비자는 국가에 필요한 외국 고위층 인재와 중국 내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에 발급한다.
- (10) S1비자는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중국 내에 거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장기간 방문하거나 기타 개인적 사무로 중국 내에서 거류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발급한다. S2비자는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중국 내에서 단기체류·거류 중인 외국인 가족을 단기간 방문하거나 기타 개인적 사무로 중국 내에서 단기체류 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발급한다.
- (11) X1비자는 중국 내에서 장기간 학습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X2비자는 중국에서 단기간 학습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 (12) Z비자는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

제7조 외국인이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및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C비자 신청 시, 해외 운수업체가 발급한 담보증명서 혹은 중국 내 유관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 (2) D비자 신청 시,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 영구거류 신원확인표>를 제출해야 한다.
- (3) F비자 신청 시, 중국 내 초청자가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 (4) G비자 신청 시, 목적 국가 또는 지역으로 떠나는 출발일, 좌석이 확정된 항공(차량, 선박)의 경우 탑승권을 제출해야 한다.
- (5) J1 및 J2비자 신청 시, 중국의 외국 언론기관 및 외국 기자 취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신청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 (6) L비자 신청 시, 요구에 따라 관광 일정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체 관광일 경우 여행사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 (7) M비자 신청 시, 요구에 따라 중국 내 비즈니스, 무역 협력업체가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 (8) Q1비자 신청 시, 친지 방문 사유로 입경해 거류하려는 자는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 국민,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발급한 초청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 등 사유로 입경하려는 자는 위탁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Q2비자 신청 시,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발급한 초청장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9) R비자 신청 시, 유관 주관기관이 정한 외국 고위층 인재와 중국 내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의 유치 조건과 필요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0) S1 및 S2비자 신청 시, 요구에 따라 취업, 학업 등 사유로 중국 내에 단기 체류·거류 중인 외국인이 발급한 초청장,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입경 후 사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1) X1비자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모집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서와 주관기관이 발급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X2비자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모집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2) Z비자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 기타 신청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재외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면담에 응해야 한다.

- (1) 입경 거류를 신청하는 경우
- (2) 개인 신원 정보, 입경 사유 관련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과거 입경이 금지된 적이 있거나, 기한 내 출경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 (4) 면담이 필요한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비자기관이 비자를 발급할 경우 중국 내 유관기관, 기관에 관련 정보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유관기관과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비자기관은 심사 결과 비자 발급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유형의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입경 후 거류증 발급을 해야 할 경우, 비자기관은 입경 후 거류증 발급 기한을 비자에 명시해야 한다.

제 3 장 단기체류와 거류 관리

제10조 비자를 소지하고 입경한 외국인에게 국가 규정에 따라 체류 사유 변경, 입경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新) 여권, 단체 비자를 소지하고 입경한 후 객관적인 사유로 단체와 분리되어 체류해야 할 경우 체류지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비자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를 분실, 훼손, 도난당한 경우, 즉시 체류지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비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외국인이 비자 기간연장, 갱신, 재발급 및 단기체류증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및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과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외국인의 비자 기간연장, 갱신, 재발급 및 단기체류증 발급 신청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유효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접수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효기간 내에 발급 여부 결정을 해야 한다.

외국인의 비자 기간연장, 갱신, 재발급 및 단기체류증 발급 신청 절차 혹은 자료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신청인에 수속 절차와 보완해야 하는 신청 자료를 1회에 한하여 고지해야 한다.

증서 발급을 위해 신청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가 보관될 경우, 접수확인증으로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의 비자·단기체류 기간 연장 결정은 해당 입경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비자의 입경 횟수와 유효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누적 단기체류 연장 기간은 기존 비자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비자 체류 기간이 연장된 후, 외국인은 기존 비자에서 규정하는 사유와 연장된 기간에 따라 체류해야 한다.

제15조 거류증은 다음 유형으로 분류한다.

- (1) 취업 거류증은 중국 내에서 취업한 자에게 발급한다.
- (2) 학업 거류증은 중국 내에서 장기간 학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3) 기자 거류증은 중국 주재 해외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중국에 상주하려는 외국 기자에 발급한다.
- (4) 친지 방문 거류증은 친지 방문을 사유로 중국 내에 거류해야 하는 중국 국민의 가족,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 및 입양 등의 사유로 중국 내에 거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5) 개인 사무 거류증은 취업, 학업 등 사유로 중국 내 거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장기간 방문하거나 기타 개인 사무로 중국 내에 거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제16조 외국인이 거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및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 신청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서 신청해야 하며, 지문 등 개인 생체 식별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 (1) 취업 거류증 신청 시, 취업허가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에 필요한 외국 고위층 인재와 중국 내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에게 발급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 학업 거류증 신청 시, 규정에 따라 모집기관에서 학업 기간을 기재해 발행한 증명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3) 기자 거류증 신청 시, 유관 주관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와 기자증을 제출해야 한다.
- (4) 친지 방문 거류증 신청 시, 친지 방문을 사유로 중국 내에 거류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 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 등의 사유로 중국 내에 거류하고자 할 경우, 위탁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5) 개인 사무 거류증 신청 시, 장기간 친척 방문을 하고자 할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방문하고자 하는 친척의 거류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 사무 처리를 위해 입경하고자 할 경우 개인 사무 처리를 위해 중국 내에 거류해야 한다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거류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제17조 외국인이 거류증 기간연장, 갱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및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 신청 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외국인의 거류증 발급, 기간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이 접수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유효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접수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의 거류증 발급, 기간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 수속 혹은 관련 자료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신청인에 수속 절차와 보완해야 하는 신청 자료를 1회에 한해 고지해야 한다.

증서 발급을 위해 신청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가 보관될 경우, 접수확인증으로 중국 내에 합법적인 거류를 할 수 있다.

제19조 비자와 거류증의 기간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 단기체류증 발급 신

청을 하려는 외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기관 또는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중개업체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1) 만 16세 미만 혹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 (2) 최초 입경이 아니며 양호한 중국 내 단기체류·거류 기록이 있는 경우
- (3) 초청기관 또는 개인이 외국인의 중국 내 단기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일체 비용을 보증한 경우

외국인이 거류증을 신청할 시, 국가에 필요한 외국 고위층 인재와 중국 내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 상기 1항에 속하는 자는 초청기관 또는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중개업체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면담, 전화 인터뷰, 현장 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신청 사유의 사실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초청장, 증명자료를 발급한 기관 또는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1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거류증의 기간연장, 갱신, 재발급 및 단기체류증의 발급을 허가하지 않는다.

- (1)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신청 시 허위 조작을 한 경우
- (3) 중국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을 위반해 중국 내 단기체류 및 거류가 부적절한 경우
- (4) 비자, 거류증의 기간연장, 갱신, 재발급 또는 단기체류증 발급 허가가 부적절한 기타 사유에 속하는 경우

제22조 학업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교외 아르바이트(勤工助学) 또는 인턴 활동에 종사할 경우, 소속 학교의 동의를 거친 후,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아르바이트 혹은 인턴활동 장소, 기간 등을 거류증에 명시해 주도록 신청해야 한다.

학업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거류증에 상기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교외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3조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소지한 증서 분실, 훼손, 도난 등의 사유로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주중국 본국 유관 기관에서 재발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기체류지,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출경 수속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단기체류 지역이 명시된 출입경 증서를 소지한 외국인, 출입경변방 검사기관으로부터 임시 입경 및 제한된 지역에서의 단기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체류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불법 거류로 간주한다.

- (1)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이 규정하는 단기체류 또는 거류 기간이 초과하였음에도 단기체류 또는 거류하는 경우
- (2) 비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입경한 외국인이 면제 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단기체류증 또는 거류증을 발급받지 않고 단기체류 또는 거류하는 경우
- (3) 외국인이 제한된 단기체류지 또는 거류지를 이탈한 경우
- (4) 기타 불법 거류 정황이 있는 경우

제26조 외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외국인을 고용한 기관 또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 기관은 즉시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 (1) 고용한 외국인이 사직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2) 모집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수료, 퇴학 등의 사유로 기존 모집기관을 떠난 경우
- (3) 고용한 외국인, 모집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경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고용한 외국인, 모집한 외국인 유학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금융, 교육, 의료, 전신 등 기관에서 업무 처리 시 외국인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외교, 공무 등의 사유로 외국인의 중국 내 단기체류증, 거류증 발급 관리가 필요할 경우 외교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 장 조사와 송환

제29조 공안기관은 실수요에 따라 송환 장소를 설정할 수 있다.

〈출입경관리법〉 제60조 규정에 의거해 외국인에게 구류 조사를 진행할 경우, 24시간 내에 구류 조사받은 외국인을 구류소 혹은 송환 장소로 이송해야 한다.

날씨, 당사자의 건강 상태 등 사유로 즉시 송환, 강제 출경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외국인을 구류소 또는 송환 장소에 구금해야 한다.

제30조 〈출입경관리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경우, 활동범위제한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활동 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공안기관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결정기관의 허가 없는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제한된 활동 범위를 이탈할 수 없다.

제31조 〈출입경관리법〉 제62조 규정에 의거해 외국인을 송환할 경우, 송환 결정을 내린 기관은 반드시 법에 의거해 송환 당한 외국인의 입경 금지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제32조 외국인의 송환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당사자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할 여력이 없을 경우, 불법 취업을 했다면 불법 고용한 기관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기타 사유에 속할 경우, 외국인이 중국 내에 단기체류·거류하는 동안 보증 조치를 제공한 기관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외국인의 송환은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3조 외국인의 기한 내 출경이 결정될 경우, 결정을 내린 기관이 출입경증서를 말소 혹은 몰수하고, 단기체류증 재발급 및 출경 기한 지정을 해야 한다. 출경 기한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외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의 발급기관이 해당 증서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 (1)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을 분실, 훼손, 도난당한 경우
- (2) 기한 내 출국, 송환, 강제 출국 되었으나 소지한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이 몰수, 말소되지 않은 경우

- (3) 기존 거류 사유가 변경되었으나 규정된 기한 내에 공안기관 출입경관리 기구에 신고하지 않고, 공안기관이 통보한 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 <출입경관리법> 제21조, 제31조에서 규정한 비자, 거류증 발급 부적절 사유에 속하는 경우

발급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의 폐기를 한 경우, 현장 폐기 혹은 통보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제35조 외국인인 소지한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안기관이 해당 증서를 말소 또는 몰수할 수 있다.

- (1) 발급기관이 폐기처분을 명령하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도용된 경우
- (2) 위조, 조작, 편취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불법 취득한 경우
- (3) 소지자의 기한 내 출국, 송환, 강제출국 등 처분이 결정된 경우

말소 혹은 몰수에 대해 결정된 기관은 해당 증서 발급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36조 동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1) 비자의 입경 횟수: 비자 소지자가 비자 입경 유효기간 내에 입경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
- (2) 비자의 입경 유효기간: 비자를 소지하고 입경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 범위를 말한다. 발급 기관의 별도 소명이 없을 경우,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베이징 시간 24시를 기준으로 실효된다.
- (3) 비자의 단기체류기한(停留期限): 비자 소지자가 입경할 때마다 단기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입경 다음날로부터 계산한다.
- (4) 단기: 중국내 단기체류 18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180일 포함).
- (5) 장기, 상주: 중국 내 거류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의 심사 기간과 접수확인 등의 유효기간은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은 평일만으로 계산한다.

제37조 재외비자기관은 외교부의 비준을 얻어 현지 유관 기관에 외국인 비자 신청 접수, 입력, 상담 등 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비자 양식은 외교부와公安부가 규정한다. 단기체류증, 거류증의 양식은 公安부가 규정한다.

제39조 본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6년 12월 3일 국무원이 비준, 1986년 12월 27일 公安부, 외교부가 공포, 1994년 7월 13일과 2010년 4월 24일에 국무원이 수정한 〈중국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실시세칙〉은 폐지한다.

[3] 중국 출입경 변방검사 조례 (1995. 9. 1. 시행, 국무원령)

제 1 장 총칙

제1조 중국의 주권, 안보,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출입경하는 자와 교통운수수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출입경변방검사(边防检查)는公安부가 주관한다.

제3조 중국은 대외 개방된 항구, 공항, 역(车站), 변경 통로 등 출입국항에 출입경변방검사소(出境入境边防检查站, 이하 '변방검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변방검사소는 국가 주권, 안보, 사회질서 수호를 위해 다음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출입경하는 자 및 소지한 수하물, 교통운수수단 및 적재된 화물에 대한 변방검사
- (2) 국가 유관 규정에 따른 출입경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감호
- (3) 공항만의 제한 구역에 대한 경비, 출입경 질서 유지
- (4) 주관기관이 부여한 업무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 규정 관련 업무

제5조 출입경하는 자와 교통운수수단은 반드시 대외 개방된 공항만 또는 주관기관이 특별 허가한 지점으로 통행하며, 변방검사, 감호, 관리를 받아야 한다. 출입경하는 자는 중국의 법률과 행정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6조 변방검사원(边防检查人员)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변방검사원의 법에 의거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제 2 장 출입경하는 자에 대한 검사와 관리

제7조 출입경하는 자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해 출입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변방검사소에 유효한 본인 여권 또는 기타 출입경 증서(이하 '출입경 증서'라 한다)를 제출해 검사를 통과해야 출입경이 가능하다.

제8조 변방검사소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자의 출입경을 저지할 수 있다.

- (1) 출입경 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2) 무효한 출입경 증서를 소지한 경우
- (3) 타인의 출입경 증서를 사용한 경우
- (4) 위조 또는 변조된 출입경 증서를 사용한 경우
- (5) 변방검사를 거부한 경우
- (6) 지정되지 않은 공항만으로 통행한 경우
- (7) 국무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출입경 금지를 통지한 경우
- (8)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하는 출입경 불가 사유에 속하는 경우. 출입경하는 자가 전 항의 제3호, 제4호 또는 중국 국민이 전 항의 제7호, 제8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방검사소는 출입경 증서를 압수, 몰수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운수수단 탑승 직원의 변방검사, 관리는 본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과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이 유관 합의를 체결한 경우, 해당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제10조 중국 공항만에 도착한 선박의 외국 국적 선원 및 그 동반 가족, 홍콩·마카오·대만 선원과 그 동반 가족이 항구도시에 상륙, 주숙을 원할 경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변방검사소에 상륙, 주숙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상륙, 주숙 비준을 받은 선원 및 그 동반가족은 규정된 시간에 선박으로 돌아와야 한다. 상륙 후 위법 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시 선박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고 재상륙을 금지한다. 국제항행 선박에 종사하는 중국 선원은 본인의 출입경 증서로 상륙, 주숙해야 한다.

제11조 변방검사소는 상륙을 신청한 선원이 본 조례 제8조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상륙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 선박에 승하선하고자 하는 자는 변방검사원에 출입경 증서 또는 기타 규정한 증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뒤 승하선할 수 있다. 공항만 검사, 검중 기관 직원은 필요시 선박에 탑승해 공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제복을 착용하고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3조 중국과 인접한 국가(지역) 접경 지역의 양측 공무원은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임시 출입경 변방검사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집행한다. 합의안이 없을 경우, 본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인접 국가의 접경 지역 주민이 합의에 따라 임시 입경하고자 할 경우, 합의에서 규정한 구역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합의에서 규정한 구역 외에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입경 수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필요시 변방검사소는 출입경하는 자에 대한 신체수색을 할 수 있다. 신체수색은 신체수색을 받는 자와 동일한 성별의 변방검사소 직원 두 명이 한다.

제15조 변방검사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경하는 자에 대해 그 행동 범위를 제한하고, 조사 또는 유관기관으로 처리를 이관할 권한이 있다.

- (1) 타인의 출입경 증서를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 (2) 위조 또는 변조한 출입경 증서를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 (3) 국무원 공안부서, 국가안전부서, 성·자치구·직할시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통지한 경우
- (4) 국가안보, 이익, 사회 질서를 위해할 혐의가 있는 경우

제 3 장 출입경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검사와 감호

제16조 출입경하는 교통운수수단이 공항만에 출도착 할 경우,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입경검사는 최초로 도착한 공항만에서 한다. 출경검사는 마지막으로 출항하는 공항만에서 한다. 특수한 상황일 경우,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 교통운수수단의 출입경검사를 특별 허가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7조 교통운수수단의 책임자 또는 관련 교통운수기관은 사전에 출입경 선박, 항공기, 열차의 공항만 출도착 시간, 단기체류지, 탑승자, 적재화물 관련 사항을 유관 변방검사소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운수수단이 공항만에 도착할 경우, 선장, 기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변방검사소에 직원과 여행객 명단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여객 전무 및 기타 교통운수수단의 책임자는 직원과 여행객 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제18조 교통운수수단에 변방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책임자 또는 대리인은 현장에서 변방검사원의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19조 출입경하는 교통운수수단은 중국 내에서 규정된 노선, 항선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외국 선박은 허가 없이 대외 개방되지 않은 공항만에 정박할 수 없다. 출경하는 교통운수수단은 출경검사 후 출경 전, 입경하는 교통운수수단은 입경 후 입경검사 전까지 변방검사소의 허가 없이 사람의 승하선 또는 물품의 하역이 금지된다.

제20조 중국 선박과 외국 선박 간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변방검사소에 작업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작업할 수 없다.

제21조 변방검사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경 교통운수수단에 대해 감호할 수 있다.

- (1) 공항만에 출도착한 열차, 외국 선박과 중국 여객선의 출경검사 후부터 출경 전까지, 입경 후부터 입경검사 완료 전까지
- (2) 열차와 기타 차량이 중국 국(변)경선과 변방검사소 간 거리가 먼 구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기간
- (3) 외국 선박이 중국 내 강에서 운항하고 있는 기간
- (4) 변방검사소에서 감호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 교통운수수단에 감호 업무를 집행하는 변방검사원에 대해 교통운수수단의 책임자는 필요한 사무 및 생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감호를 받는 교통운수수단과 동 수단에 승하선하는 자는 감호원의 검사에 응해야 한다.

제23조 감호조치를 받지 않는 교통운수수단은 그 책임자가 자체 관리해야 하며, 해당 교통운수수단과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증해야 한다.

제24조 출입경 교통운수수단에 출입경이 불가한 자, 밀출입경자 및 유효한 출입경 증서 미소지자가 탑승한 경우, 교통운수수단의 책임자가 그 송환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5조 변방검사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경 교통운수수단의 출입경을 기간연장 또는 저지할 권한이 있다.

- (1) 공항만 출도착 시, 변방검사소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출입경한 경우
- (2) 변방검사, 감호를 거부한 경우
- (3) 국가 안보, 이익, 사회 질서를 위해할 혐의가 있는 자가 탑승 혹은 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4) 불법 출입경한 자가 탑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5) 변방검사소가 법에 의거해 내린 처벌 혹은 처리 결정의 집행을 거부한 경우
- (6) 비준 없이 공항만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변방검사소는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관련 교통운수수단의 운항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

제26조 출입경하는 선박, 항공기가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외 개방된 공항만 외의 지역에 입항해야 하는 경우, 인근의 변방검사소 또는 현지 공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검사와 감호를 받아야 한다. 입항 사유가 해결된 후에는 통지된 시간과 노선에 따라 공항만을 즉시 떠나야 한다.

제 4 장 수하물과 화물에 대한 검사

제27조 변방검사소는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 수호의 필요에 따라 출입경하는 자가 휴대한 수하물과 교통운수수단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집중 검사할 수 있다.

제28조 출입경하는 자와 교통운수수단은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위해하는 금지 물품의 휴대, 운반이 불가하다. 금지 물품을 휴대, 운반한 경우, 변방검사소는 해당 금지 물품을 압수하고, 휴대인, 교통운수수단의 책임자를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누구든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료, 기타 물품을 불법으로 휴대하고 출경할 수 없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 자료, 기타 물품을 불법으로 휴대한 경우, 변방검사소는 이를 몰수하고, 휴대인을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출입경하는 자가 총기, 탄약을 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변방검사소에 휴대 또는 운반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총기, 탄약을 휴대, 운반하고 출입경할 수 없다.

제 5 장 처벌

제31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변방검사소가 처벌을 집행한다.

제32조 출입경하는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 규정에 의거해 구류한다.

- (1) 출입경 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2) 유효하지 않은 출입경 증서를 사용한 경우
- (3) 타인의 출입경 증서를 사용한 경우
- (4) 위조 혹은 변조된 출입경 증서를 사용한 경우

제33조 타인의 불법 출입경에 협조했으나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

제34조 비준 없이 총기·탄약을 휴대, 운반하고 출입경한 경우, 그 총기와 탄약을 몰수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비준 없이 공항만의 제한구역에 진입 또는 진입 후 관리를 따르지 않고 공항만 관리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2) 변방검사원을 모욕한 경우
- (3) 비준을 받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상륙, 주숙하지 않은 경우

제36조 출입경 교통운수수단에 출입경이 불가능한 자, 밀출입경자 및 유효한 출입경 증서 미소지자를 태워 출입경한 경우, 그 책임자에 운송한 사람 1명당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교통운수수단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책임자에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공항만 출도착 시 변방검사소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출입경하는 경우
- (2) 규정에 따라 변방검사소에 직원, 여행객, 화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검사 협조를 거절한 경우

- (3) 입경 후 입경검사 전, 출경검사 후 출경 전까지 변방검사소의 허가 없이 교통운수수단 탑승자의 승하선 또는 물품의 하역이 이뤄진 경우

제38조 교통운수수단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책임자에게 경고 및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출입경 교통운수수단이 중국 내에서 규정된 노선에 따라 운항하지 않은 경우
- (2) 외국 선박이 허가 없이 대외 개방되지 않은 항구에 정박한 경우
- (3) 중국 선박이 비준 없이 외국 선박과 자의적으로 작업한 경우

제39조 출입경하는 선박, 항공기가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외 개방된 공항만 외의 지역에 입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인근의 변방검사소 또는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항 사유가 해소된 후 통지된 시간과 노선에 따라 공항만을 떠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자에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변방검사소는 벌금 부과 시 처벌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벌금은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제41조 출입경하는 자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해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2조 처벌자가 변방검사소의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변방검사소 소재지 현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현급 공안기관은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처벌자가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장 부칙

제43조 외교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국인의 출입경 변방검사에 대한 별도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중국 공민과 교통운수수단의 출입경 및 국경 통과 검사와 관리에 대한 외국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변방검사소는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라 상응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 홍콩특별행정자치구,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 대만을 왕복하는 중국 국민과 교통운수수단의 변방검사에 대해서는 본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의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본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출입경하는 자'는 중국 국(변)경에 출도착 또는 통과하는 중국 국적, 외국 국적 및 무국적자를 말한다. '출입경 교통운수수단'은 중국 국(변)경에 출도착 또는 통과하는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비동력차량(非机动车辆), 짐을 나르는 가축을 말한다. '직원'이란 출입경하는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의 책임자, 운전자, 서비스 원, 기타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제47조 본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2년 7월 29일 중앙인민 정부 정무원이 비준·시행한 〈출입경치안검사잠행조례〉와 1965년 4월 30일 국무원이 발표한 〈변방검사조례〉는 폐지한다.

[4] 외국인 강제 출경 집행 방법에 관한 규정 (1992. 7. 31. 시행, 부령)

위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출경 집행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적용 범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 강제 출경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1) 〈중국 형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단독 또는 부가로 강제출경 형벌을 부과한 경우
- (2) 〈중국 출입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안부가 위법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기한 내 출경 또는 강제출경을 과한 경우
- (3) 〈중국 출입경관리법〉과 기타 유관 법률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송환 또는 단기체류 기간 단축, 거류 자격 취소를 결정한 외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출경하지 않아 강제 출경이 필요한 경우
- (4) 중국 정부가 국제조약 또는 〈중국 외교특권및할면(豁免)조례〉 규정에 따라 외교 또는 영사 특권과 면제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을 환영받지 못하는 자 혹은 그 외교 또는 영사 신분 인정 불가·거절된 자로 발표해 기한 내 출경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출경하지 않은 경우

2. 집행 기관

외국인 강제 출경 집행 및 감시 업무는 공안기관이 유관 법률 문서 또는 공문에 따라 진행한다.

- (1) 단독으로 추방을 판결 받은 외국인의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 유효일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범죄인의 형사판결서, 집행통지서 부분을 소재지 성급 공안기관에 전달하고, 성급 공안기관이 지정한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 (2) 징역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경우, 그 주형(主刑) 집행 기간이 끝난 후 부가형인 강제출경을 집행해야 하며, 주형 형기 만료 1개월 전에 구류되어 있는 감옥의 주관기관이 해당 범죄인의 기존 판결서, 집행통지서 부분 또는 사본을 소재지 성급 공안기관에 전달하고, 성급 공안기관이 지정한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 (3) 공안부에 의해 강제출경, 기한 내 출경이 과해진 외국인의 경우, 공안부 출입경관리처별제결서(裁決書)에 따라 현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 (4) 공안기관에 의해 송환, 단기체류 기간 단축 또는 거류 자격 취소가 결정된 외국인의 경우, 현지 공안기관이 결정서에 따라 집행한다.

단기체류 기간 단축 또는 거류 자격이 취소된 외국인의 경우 그 초청기관(接待單位)이 출경조치(安排)를 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결정서에 따라 감독을 책임진다.

- (5) 중국 정부가 국제조약 또는 〈중국 외교특권및활면조례〉 규정에 따라 외교 또는 영사 특권과 면제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을 환영받지 못하는 자 혹은 그 외교 또는 영사 신분 인정 불가·거절된 자료 발표해 기한 내 출경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출경하지 않은 경우, 외교부 공문에 따라 공안부가 지정한 공안기관이 집행 또는 감독을 책임진다.

3. 집행 전 준비업무

- (1) 강제 출경되는 외국인이 소지한 중국 거류 허가 증서는 일률적으로 몰수한다. 여권상의 비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기간연장 불허 도장을 찍거나 말소해야 한다.
- (2) 추방되는 외국인은 모두 입경 금지자 명단에 기재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공안부가 제정한 〈입경 금지 외국 국적자 명단 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1989) 공경자 87호)에 따라 집행한다. 입경 금지자 명단에 기타 강제 출경되는 외국인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비준을 요청(報批) 한다.

집행하는 공안기관은 집행 전 입경 금지자 명단에 기재된 외국인에게

그 입경 금지 연한을 알려야 한다.

- (3) 집행기관은 강제 출경 당하는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경유 국가 혹은 지역의 유효한 비자를 확인해야 한다.

상기 비자 또는 증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먼저 해당국의 주중국대사관, 영사관에 연락하여 책임지고 처리하게 한다. 중국 내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이 대사관, 영사관에 연락한다.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공안부 출입경관리국 또는 대사관, 영사관 소재지 공안기관이 대사관, 영사관에 연락한다. 중국 내에 해당 국의 대사관, 영사관이 소재하지 않거나 해당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교부 또는 공안부에 보고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인접 국가의 공민이 변경 출입국항 또는 통로를 통해 출경하는 경우, 상대방의 증서 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 (4) 강제 출경되는 외국인은 출경할 비행기 표, 기차 표, 선박 승선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할 수 없고 협의에 따라 중국 관련 기관이 여비를 제공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 대사관, 영사관이 해결해야 한다(대사관, 영사관에 동 문제 해결에 관해 연락하는 방법은 전 조항과 같다). 대사관, 영사관이 해당 비용 부담을 거절하거나 또는 중국 내에 해당국 대사관, 영사관이 소재하지 않는 경우 중국 정부가 부담한다.
- (5) 해당국 주중 대사관, 영사관에 강제 출경이 결정된 외국인의 강제 출경 사유와 날짜 통보 여부는 현지 외사 기관이 외교부에 결정을 문의한다.
- (6) 외교교섭 또는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유관 경위와 상의·결정한 대외 발표 방법 등을 현지 외사 기관에 즉시 통지한다. 대외 보도가 필요한 경우, 공안부, 외교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집행기준

구체적인 집행을 담당한 공안기관은 교부기관(交付机关)이 정한 기한에 따

라 즉시 집행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집행을 연기해야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국에 심사·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5. 출경항 (出境口岸)

- (1) 강제 출경 당하는 외국인의 출경항은 사전에 가까운 곳으로 정해야 한다.
- (2) 강제 출경 당하는 외국인이 중국과 인접한 국가로 가는 경우, 변경 공항만을 통해 출경하도록 할 수 있다.
- (3) 집행기관은 사전에 출경항 공안기관, 변방검사소와 연락해 강제 출경 당하는 자의 공항만 도착 시간, 교통수단의 운행 편수, 출경 시 이용할 항공 운항 편명, 열차 번호, 시간, 기타 집행 협조와 관련한 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출경항 공안기관과 변방검사소는 출경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 (4) 출경 시간은 최대한 공항만에 도착한 당일로 정해야 한다. 당일에 출경할 수 없는 경우, 공항만 소재지 공안기관은 필요한 감호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6. 집행 방법 및 관련 사항

- (1) 인민법원이 강제출경을 단독 판결하거나 공안부가 강제출경을 결정한 외국인은 공안기관 구치소(看守所) 무경과 외사 민경이 함께 압송한다. 주형 집행 기간이 끝난 뒤 강제출경 당하는 외국인은 구류되어 있던 감옥의 교화·관리 담당 간부와 경찰(干警), 감시 담당 무경과 공안기관 외사 민경이 함께 압송한다. 상기 두 유형의 외국인을 압송할 시 필요한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출경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압송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이 외사 민경을 파견해 압송한다. 압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출경 시 외사 민경을 파견해 현장 감독할 수 있다.
- (2) 집행 인원의 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하며,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3) 압송 인원은 경계 강화, 안전 보장을 해 도주, 폭행·살해(行凶),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4) 변방검사소는 외국인의 강제 출경에 대한 집행 통지서, 결정서 또는 재결서 및 강제 출경 당하는 자의 여권, 증서에 따라 통과를 허가한다.
- (5) 집행 인원은 강제 출경 당하는 외국인의 교통수단 탑승을 감독하고, 해당자가 출경한 후에야 현장을 떠날 수 있다. 변경 통로로 출경하는 경우, 중국 국경을 벗어나는 것을 감독한 뒤 현장을 떠날 수 있다.
- (6) 추방 당하는 외국인의 출입경 교통수단 등 구체적인 상황은 사진 촬영하고,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녹화해 보관한다.

7. 경비

외국인의 강제 출경 집행에 필요한 비용(압송 인원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및 본인의 비용 부담 능력이 없고, 해당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비용 부담을 거절하거나 또는 중국에 대사관, 영사관이 소재하지 않은 외국인의 중국 내 식비, 숙박비, 교통비, 임시 구류 장소 임대비, 국제 여비 등)은 현행 재정 체제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역(办案地) 재정 기관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8. 강제 출경 임무를 집행하는 인민경찰과 직원은 언행이 정중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문명적 태도를 유지하고, 외사 기율을 준수 하여야 한다.

앞으로 외국인 강제 출경 관련 집행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외국인과 중국 공민의 출경제한 문제에 관한 규정 (1987. 3. 10. 시행, 부령)

〈중국 출입경관리법〉 제28조와 제12조⁸에서 일부 외국인과 중국 공민의 출경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집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입경한 외국인의 출경 또는 중국 공민의 출경을 제한해야 할 경우, 반드시 법률 규정에 의거해 집행해야 한다. 집행 중 주의사항: 사전 처리가 가능한 경우 외국인 또는 중국 공민의 출경 직전까지 기다려 처리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증서를 압수하는 방법으로 출경을 제한하지 않는다. 내지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 공항만에 도착한 뒤 처리하지 않으며, 공항만에서 출경 저지가 필요한 인원을 극소수로 통제한다.
- (2) 외국인 또는 중국 공민의 출경 제한에 관한 심사·비준 권한
 1.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이 인정한 범죄 용의자 또는 기타 법률 위반 행위가 미처리 되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그 출경 제한 결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국, 또는 국가안전청·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이 인정한 범죄 용의자 또는 기타 법률 위반 행위가 미처리 되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이 그 출경 제한을 결정하며,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동급 공안기관에 통보한다.
 3. 국가안전기관이 일부 외국인 또는 중국 공민의 출경을 제한할 경우, 공안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미해결된 민사사건(경제 분쟁 포함)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그 출경 제한 결정 및 집행을 하고 공안기관에 통보한다.
 5. 기타 변방 공항만에서 출경 제한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1985년

8 2013.7.1. 〈중국 출입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 〈중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과 구 〈중국 공민출입경관리법〉이 폐지되고 동시에 통합되어, 관련 법조항을 현행 법규에 맞추어 수정함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출입경 조사 통제 업무에 관한 통지〉(85) 공발 24호 문건) 지침(精神)에 따라 처리한다.

-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외국인과 중국 공민의 출경을 제한할 경우, 다음의 방법을 각각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에게 구두 혹은 서면으로 해당 사건(또는 문제) 해결 전에 출경이 불가함을 통지한다.
 2.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거주 감시 또는 보석(取保候審) 하거나, 혹은 재산 담보 제공 또는 일정액의 보증금 납부 후 출경을 허락한다.
 3. 당사자의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출입경 증서를 압수한다. 여권 또는 기타 출입경 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에게 증서 압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혹은 국가안전기관은 당사자의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출입경 증서를 압수한 뒤, 출입경 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안기관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은 변방검사소에서 일부 출경이 금지된 외국인과 중국 공민의 출경을 저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항만 인원 출경 저지 통지서〉(양식 첨부, 자체 인쇄)를 작성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항만이 출경을 저지할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국에 출입경 통제를 이관(交控)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해당인에 대한 출경 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먼저 변방검사소에 출입경 통제를 이관하고,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에 출입경 통제 이관 수속을 한다. 통제하는 공항만이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를 초과하는 경우, 유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국을 통해 출입경 통제 이관 수속을 한다.

▶ 비자 및 체류 관련 법령

[6] 외국 인재 비자제도 실시방법 (2017. 11. 28. 시행, 부령)

2017년 11월 28일 국가외국전문가국, 외교부, 공안부가 연구 제정한 <외국 인재비자제도실시관법>을 정식으로 발표한다.

제1조 외국인의 외국 인재 비자(R비자)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급 절차 규범화, 외국 인재 비자와 취업허가증, 취업허가증의 유기적 연계 강화, 외국 인재의 재중국(来华) 창업 및 혁신에 편의 제공을 위해 <중국 출입경관리법> 등에 의거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외국전문가국, 외교부, 공안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R 비자 신청 조건을 규정하며, R비자의 발급, 기간연장, 갱신, 재발급 업무를 지도한다.

제3조 국가외국전문가국, 외교부, 공안부는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统筹协调) 외국 인재의 자질 확인, R비자 발급, 취업허가증 발급, 취업허가증 발급 등 서비스 관리 업무의 협력 메커니즘을 완비해 원활한 정보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R비자 발급 대상은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외국 고위층 인재, 중국 내 수요가 시급한 인재, 고학력의 학계 정상급 인재(高精尖缺)와 시장 수요가 있는 과학자, 과학기술 선두주자, 글로벌 기업가, 전문가, 높은 수준의 기능을 갖춘 인재 등이다.

R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인 <외국인중국취업분류기준(外国人来华工作分类标准 (시범시행))> 중 외국 고급인재(高端人才, A류(类))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외교부, 공안부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와 인재 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외국 고급인재 인정 기준을 적절한 시기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 외에서 R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초청기관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국인 취업관리기관(工作管理部门, 이하 '성급 인민정

부 외국인 취업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 국내기관 초청서 및 R비자 인제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고급인제 기준에 부합한 자에 대해 성급 인민정부 외국인 취업관리기관은 업무일 기준 5일 내에 국내 초청기관에 <외국고급인제확인서>를 별첨해 온라인으로 송부하고, <외국고급인제확인서> 등 정보를 신청인 소재국 혹은 지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駐外) 기관에 전달한다.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상기 정보를 외교부, 공안부에 전달한다.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성급 인민정부 외국인 취업관리기관의 외국 인재 자질 심사 접수, 심사 및 결정, 취업 관리와 서비스 보장 등 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한다.

제6조 외국인이 재외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에 R비자 발급 신청을 할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비자 신청서
- (2)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본인 여권 및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
- (3) <외국고급인제확인서> 인쇄본
- (4) 외국 주재(駐外)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7조 재외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은 R비자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인에게 유효기간 5~10년의 복수 비자를 발급한다. 상기 신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동일한 유효기간의 복수 비자를 발급한다.

제8조 재외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은 제7조의 신청인에게 긴급히 비자 발급을 해야 할 경우 업무일로부터 2일 내에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재외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은 제7조 신청인의 비자 발급 시, 수수료와 긴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10조 R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고용기관 소재지 지방 인민정부 외국인 취업관리기관 또는 동 기관이 위탁한 기관에 외국인 재중국 취업허가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R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인 고용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任职证明), 신체검사서, R비자, 여권 신원정보면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외국인 재중국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재중국 취업허가증의 기간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인민정부 외국인 취업관리기관은 업무일 기준 3일 내에 심사 후 결정을 완료하고, 관련 정보를 동급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제11조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해 재중국 외국 인재에 대해 비자 및 거류 관련 편의를 제공한다.

제12조 국가외국전문가국, 외교부, 공안부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법에 의거해 관리상의 혁신을 추진하고, 외국 인재가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서비스 수준을 지속 제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방법(办法)은 국가외국전문가국, 외교부, 공안부에서 설명을 책임지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7] 중국내 외국인 취업관리 규정 (2017. 3. 13. 개정시행, 부령)

제 1 장 총칙

제1조 중국내 외국인의 취업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국인이란 <중국 국적법>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중국내 외국인 취업이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중국내 법률에 따라 사회노동에 종사하여 노동의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중국내 취업한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한 기관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은 주중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 UN 주중대표기관 및 그 외 국제기구 중 외교특권과 면책권을 가진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기관 및 그 권한을 받은 지방급 노동행정기관은 중국내 외국인의 취업 관리를 책임진다.

제 2 장 취업허가

제5조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외국인의 취업허가를 신청하고, 비준을 거쳐 <중국 외국인취업허가증서>(이하 허가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제6조 기관에서 고용한 외국인의 직무는 반드시 특별 수요가 존재하고, 중국내 적합한 인력이 없으며, 국가의 직무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기관은 상업성 문화 공연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으나, 이 규정 제9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인원은 제외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취업할 경우, 반드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 (2)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과 그에 상응하는 근무 경력을 갖춘 자
- (3) 범죄 기록이 없는 자

(4) 정확한 고용기관이 있는 자

(5) 유효한 여권 소지자 또는 여권을 대신할 국제 여행증서 소지자(이하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류)

제8조 중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Z비자를 소지하여 입국하여야 하며(상호 비자면제협정에 해당하는 자는 협정에 따라 처리), 입국 후 <외국인취업증>(이하 취업증)과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하여야 중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거류증 미취득 외국인(즉 F, L, C, G비자 소지자), 유학·연수 외국인 및 취업 비자 소지 외국인의 동반가족은 중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고용기관은 이 규정이 제정한 비준 절차에 따라 허가증서를 신청·취득해야 하며, 고용된 외국인은 허가증서에 근거하여 공안기관에 체류자격을 갱신하고, 취업증과 거류증을 발급 받은 후에 취업이 가능하다.

주중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과 UN 산하기구, 그 외 국제기구 주중대표기구 인원의 배우자가 중국내 취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 외교부의 주중외국 공관과 주중 UN 산하기구의 배우자 중국내 임직 규정>을 따라야 하고, 본 조항 제2조 규정의 비준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허가증서와 취업증은 노동부가 일괄 제작한다.

제9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취업허가와 취업증 발급을 면제한다:

- (1) 정부가 직접 출자하여 초청한 외국국적 전문기술자와 관리자, 국가기관과 국영기업이 출자하여 고용한 자, 자국 또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술관리기관 또는 업계 협회에서 인정한 고급 기술직종이나 특수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외국국적 전문기술자와 관리자, 외국전문가국에서 발급한 <외국전문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 (2) <외국인의 중국 해상 석유작업 종사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해상 석유작업에 종사하며 육지로의 방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국적 노동자
- (3) 문화부의 비준을 받아 <임시영업 공연허가증>을 소지하고 상업성 문화공연을 하는 외국인

제10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허가증서 발급을 면제하고, 입국

후 Z비자 및 관련 증명에 따라 직접 취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1) 중국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간의 협의·협정에 따라, 중외협력교류프로젝트에 고용되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 (2) 외국 기업의 중국 지사에 상주하는 수석대표 및 대표

제 3 장 신청과 심사

제11조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고용외국인취업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행정 주관기관과 동급인 업계 주관기관(이하 업계 주관기관)에 신청하고, 다음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력증명서
- (2) 채용의향서
- (3)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고용 사유에 관한 보고서
- (4)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해당 업무 종사 자격 증명서
- (5)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건강상태증명서
- (6) 법률 및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업계 주관기관은 이 규정 제6조, 제7조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제12조 업계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고용기관은 신청서를 갖고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의 노동행정부 또는 그 권한을 받은 지방 시(地市)급 노동행정기관에 비준 절차를 신청한다. 성·자치구·직할시 노동행정기관 또는 그 권한을 받은 지방 시(地市)급 노동행정기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이하 발급기관)은 허가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발급기관은 업계 주관기관의 동의 및 노동시장의 수요 상황에 따라 심사·비준을 진행하고, 비준 후 고용기관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중앙급(中央級) 고용기관과 업계 주관기관이 부재한 고용기관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행정기관 발급기관에 취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업계 주관기관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계약서, 규정, 허가증서, 영업허가증 및 이 규정 제11조가 규정한 서류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 발급기관에 허가증서를 직접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 비준을 받고 중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인 반드시 허가증서 및 자국의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할 증명서류를 가지고 중국 재외 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에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제2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중국 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통지서한을 가지고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문화부에서 비준한 서류를 가지고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 제10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협력교류 프로젝트 허가서를 가지고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제2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공상행정 관리기관의 등기 증명을 가지고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15조 고용기관은 피고용 외국인이 입국한 후 15일 내에 허가증서와 피고용 외국인과 체결한 노동계약서 및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할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발급기관에 해당 외국인의 취업증을 신청하고 <외국인취업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취업증은 발급기관이 규정한 지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제16조 취업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은 입국 후 30일 내에 취업증을 소지하고 공안기관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취업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확정한다.

제 4 장 노무관리

제17조 고용기관과 피고용 외국인은 법에 따라 노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서의 기한은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노동계약서의 기한은 만기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나, 이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피고용 외국인과 고용기관이 체결한 노동계약서가 만료될 경우 취업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고용기관은 기존 계약서 만기

30일 전에 노동행정기관에 고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비준을 거쳐 취업증도 연장해야 한다.

제19조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기한 또는 취업 지역 및 회사 변경이 허가된 경우 반드시 10일 내에 현지 공안기관에서 거류증을 연장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제20조 피고용 외국인과 고용기관 사이의 노동계약서가 해지된 후, 고용기관은 즉시 노동 및 공안 기관에 보고하고, 동 외국인의 취업증과 거류증을 반납하며, 공안기관에서 출국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21조 고용기관이 피고용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제22조 중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에 대한 근로자 보호 및 사회보험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3조 중국내 외국인 고용기관은 반드시 취업증에 명시된 기관과 일치해야 한다.

외국인이 발급기관의 규정 지역 내에서 고용기관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동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기존 발급기관의 비준을 거쳐 취업증을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이 발급기관의 규정 지역을 떠나 취업하거나 또는 기존 규정 지역 내에서 고용기관을 변경하고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취업허가를 재신청해야 한다.

제24조 중국 법률을 위반하여 중국 공안기관으로부터 거류자격을 취소당한 외국인의 경우, 고용기관은 노동계약서를 해지하고, 노동기관은 취업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25조 고용기관과 피고용 외국인간에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노동법〉과 〈중국 기업노동분쟁조정중재법〉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노동행정기관은 취업증에 대하여 연간 검사를 진행한다. 고용기관으로부터 고용된 외국인은 취업 후 만1년이 되기 30일 전에 노동행정기관 발급기관으로부터 취업증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취업증은 자동 실효된다.

외국인이 중국내 취업기간 동안 취업증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즉시 기존 발급기관에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벌칙

제27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증을 신청·수령하지 않고 무단 취업한 외국인과 허가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용 무단 고용한 고용기관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중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시행세칙> 제44조⁹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노동행정기관의 취업증 검사 거부, 고용기관 무단 변경, 직업 무단 전환 또는 취업기간 무단 연장 등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노동행정기관은 해당 취업증을 회수하고 공안기관에 거류자격 취소를 신청한다. 강제 출국이 필요한 자에 대한 송환 비용은 고용기관 또는 해당 외국인이 부담한다.

제29조 취업증과 허가증서를 위조, 수정, 도용, 양도 매매를 한 외국인 및 고용기관에 대하여 노동행정기관은 취업증과 허가증서를 회수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0조 발급기관 또는 유관 기관 근무자가 직권 남용, 불법 수금, 불법 행위 등으로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다.

제 6 장 부칙

제31조 대만, 홍콩 및 마카오 지역 주민이 내륙에서 취업하는 경우 <대만·홍콩·마카오 주민의 내륙취업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2조 외국인이 대만, 홍콩 및 마카오 지역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 일반 소규모 회사(个体经济组织)와 국민 개인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제34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기관은 공안 등 기관과 함께 이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노동부, 공안부, 외교부,

9 <중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시행세칙>은 2013. 9. 1. 폐지 후 <중국 외국인출입경 관리조례>로 대체되었음에도 법령 정비가 안된 것으로 추정되고, 관련 내용은 <중국 출입경관리법> 제 80 조 및 <중국 외국인출입경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유의하기 바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이를 신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5조 이 규정의 해석은 노동부에서 담당한다.

제36조 이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노동인사부와 공안부가 1987년 10월 5일 공포한 <거류중 미취득 외국인과 중국내 유학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8] 외국인의 재중국 영구거류 관련 대우에 관한 방법 (2012. 9. 25. 시행, 부령)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거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증을 말하며,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 국적자는 다음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 정치 권리 및 법률·법규 규정에서 향유를 허가하지 않는 특정 권리와 의무 외에는, 중국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국 거류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거류증〉으로 중국 국경을 출입할 경우 비자 발급 등의 수속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直系亲属)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자, 거류증 또는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자가 사용 물품의 반출입은 해관의 정착 여행객(定居旅客)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중국에서 취업할 경우 〈외국인 취업증〉 발급이 면제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외국전문가증〉, 〈귀국(재중국(来华)) 전문가증〉 및 각 지역 인재 취업 거주증(工作居住证)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5. 기술 지분 매입(技术入股) 또는 투자 등의 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취득한 인민폐로 중국 경내에서 외상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6. 중국 내 투자 프로젝트와 외상기업 설립 시, 발전개혁, 상무, 공상(工商), 외환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외사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대조 및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을 높인다.

7. 규정에 따라 전문 기술직무 재직(任职) 자격 평가 심사 및 전문 기술인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8. 동반자녀의 의무교육단계 입학 시에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관련 정책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해당 거주지 교육행정 담당기관은 근거리 입학의 원칙에 따라 입학과 전학 수속을 처리하고, 국가 규정 외의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

9.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유효한 신분증으로 하여 각 항목의 사회보험 가입 수속을 할 수 있다.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 <중국 사회보험법> 유관 규정에 따라 각 항목의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 경내에서 거주하나 취업하지 않고 지역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의 중국 국내 도시(城鎮) 주민 가입자 기준을 참고하여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 관계 이전, 중지 등의 수속 처리는 사회보험처리기구(社会保險经办机构)가 유관 규정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10.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라 근무지에서 주택공적금의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을 떠날 경우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의 인출(提取) 또는 이전 수속이 가능하다.

11. <부동산 시장 외자유입 및 관리의 규범화에 관한 의견>중 경외개인(境外个人)이 중국 경내에서 자가 사용 상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국 내에서 근무, 학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기타 유관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자가 사용, 자가 거주 상품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12. 소득세 납부의 경우에는 중국 세수 법률·법규 및 세수 협정 유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납세 의무를 이행한다.

13. 국내에서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금융 업무 처리시에는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분증으로 하여 중국 공민과 동등한 권리 대우를 받고 동등한 의무 이행을 해야 하며 통계에 포함된다.

14.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은 법에 따라 납세 및 세무 담당기관이 발급한 대외지불세무증명서를 지참한 후에야 외환 환전과 경외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분증으로 하여 외환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5. 국내에서 물건 구입, 공원 및 각 문화 체육 장소(文体场馆) 입장권 구입, 문화, 오락, 여행 등의 소비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받는 대우와 가격은 중국 공민과 동등하다.

16. 중국 국내 항공편 탑승 시, <외국인 영구거류증>으로 관련 탑승 수속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기차 탑승 시, <외국인 영구거류증>으로 승차권을 구입

할 수 있다. 국내 숙박시설(旅館)에서 숙박 시, 〈외국인 영구거류증〉으로 입소할 수 있다.

17.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수령(申領)과 자동차 등록의 경우, 중국 공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최초 신청·수령 또는 소지한국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수령 또는 갱신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외국인 영구거류증〉,公安 기관이 발급한 주숙등기증명서, 신체요건증명서(身体条件证明)로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公安기관이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영구거류증〉, 公安 기관이 발급한 주숙등기증명서와 자동차 관련 증명서, 증빙 자료 등을 지참하고 公安 기관에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 수속을 진행한다.

18. 중국 국적의 취득(加入) 또는 회복은 公安 기관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19. 이 방법의 해석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公安부가 관련 기관과 함께 담당한다.

20. 이 방법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公安부, 외교부,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주택도시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철도부, 상무부,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인민은행,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해관총서, 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여유국, 국무원교무판공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 국가외국전가국, 민용항공국, 국가외환관리국)

[9] 외국인 중국 영구거류 심사비준 관리 방법 (2004. 8. 15. 시행, 부령)

제1조 외국인의 중국 영구거류 심사비준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 외국인 입경출경 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유관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의 중국 영구거류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거류하는 기한이 제한을 받지 않음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거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증을 말하며,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4조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거류증>으로 중국 국경 출입이 가능하다.

제5조 외국인의 중국 영구거류 신청에 대한 접수 기관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직할시 공안분(分)·현(县)국이고, 외국인의 중국 영구거류 신청에 대한 심사 기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안청(厅)·국(局)이며, 외국인의 중국 영구거류 신청에 대한 심사비준 기관은 공안부이다.

제6조 중국 영구거류를 신청한 외국인은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신체가 건강하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1) 중국에 직접투자하고 3년 연속 투자상황이 안정적이며 납세기록이 양호한 자
- (2) 중국에서 부총경리(副总经理), 부공장장 등의 직무 이상 또는 부교수, 부연구원 등 부(副)고위 직책 이상 및 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4년 이상 연속 재직하고, 4년 중 중국 누적 거류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세 기록이 양호한 자
- (3) 중국에 중대하고 뚜렷한 기여를 하거나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
- (4)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지정하는 대상의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 미혼 자녀
- (5) 중국 공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로 혼인

관계가 5년 이상 지속되고, 중국에서 이미 5년 이상 연속 거류하였고, 매년 중국 거류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주거지가 있는 자

- (6) 부모에게 의탁하는 만 18세 미만 미혼 자녀
- (7) 국외에 직계친족이 없고 경내 직계친족에 의탁하는 자로서 만 60세 이상이며 중국에서 이미 5년 이상 연속 거류하였고, 매년 중국 거류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주거지가 있는 자

본 조에서 지칭하는 기간은 신청일 전에 연속된 기간을 의미한다.

제7조 이 방법의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한 실제 납입 등록자본금(注册资本金)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1) 국가에서 반포한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의 장려형 산업에 대한 투자 합계액이 50만 달러 이상
- (2) 중국 서부 지역과 국가 빈곤 지원 개발 사업 중점 현(县)에 대한 투자 합계액이 50만 달러 이상
- (3) 중국 중부 지역에 대한 투자 합계액이 100만 달러 이상
- (4) 중국에 대한 투자 합계액이 200만 달러 이상

제8조 이 방법의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재직 기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1) 국무원 각 기관 또는 성급 인민정부 소속 기관
- (2) 중점 고등 교육기관
- (3) 국가의 중점 공정(工程) 프로젝트 또는 주요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사업기관(事业单位)
- (4) 첨단기술기업, 장려형 외상투자기업, 외상투자선진기술기업, 외상투자 상품수출기업

제9조 신청자는 신청 시 <외국인 중국 영구거류 신청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유효한 외국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서

- (2) 중국 정부가 지정한 보건검역 기관 또는 외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 보건의료 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
- (3) 외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은 국외 무범죄기록증명서
- (4) 최근 촬영한 2인치 천연색 증명사진 4장
- (5) 이 방법이 규정하는 기타 관련 서류

제10조 이 방법의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등록증명서 및 공동연간검사(联合年检证明) 증명서, 자금조사(验资) 보고서, 개인 세금 완납(个人完税)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장려형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에서 발전을 장려하는 외상투자 프로젝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이 방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1) 재직기관이 발급한 본인의 재직 또는 직책(职称) 증명서
- (2) 〈외국전문가증〉 또는 〈외국인 취업증〉
- (3) 재직기관의 등록증명서, 연간검사증명서, 개인세금완납증명서. 재직기관이 외상투자기업인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공동연간검사증명서
- (4) 국가 중점 공정 프로젝트 또는 주요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기관(事业单位)의 재직자인 경우 성(省), 부(部)급 정부 주관 기관이 발급한 프로젝트 증명서, 첨단기술기업 재직자인 경우 첨단기술기업증서, 장려형 외상투자기업과 외상투자선진기술기업, 외상투자상품수출기업의 재직자인 경우 국가에서 발전을 장려하는 외상투자 프로젝트 확인서나 외상투자선진기술기업 확인서, 또는 외상투자상품수출기업 확인서

제12조 이 방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중국 정부 주관 기관이 발급한 추천서 및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이 방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배

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본인의 출생증명서 또는 친자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관계일 경우에는 입양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유관 기관이 발급한 상기 증명서는 해당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이 방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중국 국적 배우자의 상호호적증명서 또는 외국 국적 배우자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결혼증명서, 공중 받은 생활보장증명서 및 부동산임대증명서 또는 재산권증명서(产权证明)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유관기관이 발급한 상기 증명서는 해당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이 방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중국 국적 부모의 상호호적증명서나 외국 국적 부모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본인의 출생증명서 또는 친자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입양관계일 경우 입양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 유관 기관이 발급한 상기 증명서는 해당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이 방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의탁하고 있는 중국 공민의 상호호적증명서 또는 외국인의 〈외국인 영구거류증〉, 공중 받은 친족관계증명서 및 의탁자가 국외에 직계친족 관계가 없다는 증명서, 공중 받은 의탁인의 경제소득증명서(经济来源证明)나 피의탁인의 경제담보증명서, 공중 받은 의탁인 또는 피의탁인의 부동산임대증명서나 재산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유관 기관이 발급한 상기 증명서는 해당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외국인이 중국 영구거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만 18세 미만 미혼 자녀의 부모 또는 수임자(被委托人)가 주요 투자지나 장기 거류지의 설구시(设区的市)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직할시 공안부·현국에 신청한다.

수임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발급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외에서 발급한 위임장의 경우, 해당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안기관은 외국인의 중국 영구거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허가(批准)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9조 공안부는 중국 영구거류 비준을 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 영구거류

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공안부는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확인서(外国人永久居留身份确认表)〉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동 확인서를 지참하여 외국 주재 중국 공관에서 'D' 유형 비자를 신청하고, 중국 입경 후 30일 내에 그 영구거류 신청을 접수한 공안기관으로부터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수령한다.

제20조 중국 영구거류 비준을 받은 외국인인은 매년 중국 누적 거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매년 중국 누적 거류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장기 거류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5년 내 중국 누적 거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의 유효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다.

중국 영구거류 비준을 받은 만 18세 미만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 5년,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발급한다.

제22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이 유효기간 만료, 내용 변경,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영구거류증 소지자는 장기 거류지의 설구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직할시 공안부·현군에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심사를 거쳐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자에 대해 1개월 내에 갱신 또는 재발급 한다.

제23조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인은 동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 1개월 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동 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1개월 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동 증서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을 즉시 신청해야 한다.

제24조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부가 그 중국 영구거류 자격 취소와 해당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몰수 또는 말소할 수 있다.

- (1)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인민법원이 강제추방을 판결한 경우
- (3)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적 수단으로 중국 영구거류 자격을 편취한 경우
- (4) 비준 없이 매년 중국 누적 거류 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5년 내 중국 누적 거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25조 이 방법 시행 전 중국 영구거류 비준을 받은 외국인은 이 방법 시행 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거류증 발급지나 장기 거류지의 설구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또는 직할시 공안부·현국에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교환발급 받아야 한다.

제26조 중국 영구거류 자격 신청 및 〈외국인 영구거류증〉 발급, 갱신, 재발급 신청 관련 비용 수취 항목과 기준은 국무원 가격과 재정(价格和财政)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아래 용어의 정의

- (1) 직계친족은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만 18세 이상 성인 자녀와 그 배우자, 만 18세 이상 성인 손자녀(외손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2) '이상', '이내'는 모두 그 해당 수를 포함한다.

제28조 이 방법의 해석은 공안부, 외교부가 담당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국 형법 (출입국 관련 조항) 및 반테러법

[10] 중국 형법 [출입국 관련 조항] (2021. 3. 1. 개정시행, 주석령)

[타인의 국(변)경 밀출입 조직죄]

제318조 타인의 국(변)경 밀출입을 조직한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 (1) 타인의 국(변)경 밀출입을 조직한 집단의 주범(首要分子)
- (2) 여러 차례 타인의 국(변)경 밀출입을 조직하거나 국(변)경 밀출입을 시킨자가 많은 경우
- (3) 국(변)경 밀출입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4) 국(변)경 밀출입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한 경우
- (5) 폭력, 위협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거부한 경우
- (6) 위법 소득액이 큰 경우
- (7) 기타 특별히 심각한 사상이 있는 경우

전 항의 죄를 범했으며, 국(변)경 밀출입자에 대해 살해, 상해, 강간, 인신매매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검사자(檢査人員)에 대해 살해,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병과주의(數罪并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출경 증서 편취죄]

제319조 용역수출(勞務輸出), 무역 거래 또는 기타 명목으로 여권, 비자 등 출경 증서를 허위 조작하거나 편취해 타인의 국(변)경 밀출입 조직에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기관(單位)이 전 항의 죄를 범한 경우,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위 · 변조된 출입경 증서 제공죄][출입경 증서 판매죄]

제320조 타인에게 위 · 변조된 여권, 비자 등 출입경 증서를 제공하거나 여권, 비자 등 출입경 증서를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타인의 국(변)경 밀출입 운송죄]

제321조 타인을 운송하여 국(변)경 밀출입을 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구역(拘役) 또는 관리통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 (1) 여러 차례 운송하거나 국(변)경 밀출입을 시킨 자가 많은 경우
- (2) 사용한 선박, 차량 등 교통수단이 필요한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3) 위법 소득액이 큰 경우
- (4) 기타 특별히 심각한 사항이 있는 경우

타인을 운송해 국(변)경 밀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피운송인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폭력, 위협 등 방법으로 검사를 거부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본 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하고 피운송인에 대해 살해, 상해, 강간, 인신매매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검사자에 대해 살해, 상해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병과주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변)경 밀출입죄]

제322조 국(변)경 관리 법규를 위반해 국(변)경을 밀출입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구역 또는 관리 통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테러 활동 조직에 참가하거나 테러 활동 훈련을 받거나 테러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변)경을 밀출입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경계비(界碑), 경계말뚝 파괴죄]

제322조 국가 변경의 경계비, 경계말뚝 또는 영구적인 측량표지를 고의로 파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무기 및 탄약 밀수죄, 핵물질(核材料) 밀수죄, 위조화폐 밀수죄, 문물(文物) 밀수죄, 귀·중금속 밀수죄, 희귀동물 밀수죄, 희귀동물 제품 밀수죄, 국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물품 밀수죄]

제151조 무기, 탄약, 핵물질 또는 위조화폐를 밀수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사안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무기 징역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문물, 금, 은, 기타 귀·중금속 또는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한 희귀동물 및 그 제품을 밀수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희귀식물 및 그 제품 등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는 기타 화물 또는 물품을 밀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기관이 본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고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조항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음란물 밀수죄, 폐기물 밀수죄]

제152조 영리와 전파를 목적으로 음란 영화 필름, 비디오 테이프, 녹음 테이

프, 사진, 출판물(书刊), 기타 음란물을 밀수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구역 또는 관리통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해관(海关)의 관리·감독을 피해 해외 고체·액체·기체 폐기물을 중국 국경내로 반입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부과한다. 사안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

기관이 앞선 두 관의 죄를 범한 경우,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그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일반화물 및 물품밀수죄]

제153조 이 법 제151조, 제152조, 제347조 규정 외의 화물 및 물품을 밀수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1) 밀수한 화물 및 물품의 탈세액이 비교적 많거나 1년 내에 밀수로 인하여 2차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밀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탈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 (2) 밀수한 화물 및 물품의 탈세액이 막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탈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3) 밀수한 화물 및 물품의 탈세액이 특별히 막대하거나 기타 정상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탈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제한몰수를 병과한다.

기관이 본 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러 차례 밀수하였으나 처벌 받지 않은 경우, 밀수 화물 및 물품의 누계 탈세액에 따라 처벌한다.

[11] 중국 반테러(反恐怖主义)법 (2018. 4. 27. 개정시행, 주석령)

제 1 장 총칙

제1조 테러활동을 예방·처벌하고, 반테러 업무(工作)를 강화하며, 국가안전, 공공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모든 형식의 테러를 반대하고, 법에 따라 테러활동단체를 단속하며, 모든 테러활동의 조직, 계획, 시행준비, 시행 및 테러 선전, 테러활동 선동, 테러단체의 조직, 지휘, 참가 및 테러를 위한 도움 제공에 대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국가는 어떠한 테러단체 및 테러범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테러범도 보호하거나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3조 이 법에서 지칭하는 테러란 폭력, 훼손,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사회공황, 공공안전 위해, 개인의 신체 및 재산 침범을 초래하거나 국가기관, 국제기구를 협박하여 정치, 이데올로기 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주장과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테러활동은 테러의 성격을 갖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인명피해 초래, 중대한 재산 손실, 공공시설 훼손, 사회질서 혼란 등 심각하게 사회를 위해하는 활동을 조직, 계획, 시행준비, 시행 또는 기도하는 행위
- (2) 테러를 선전하거나 테러활동을 선동하거나 테러 선전 물품을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테러를 선전하는 복장과 표식 착용을 강제하는 행위
- (3) 테러단체를 조직, 지휘, 참가하는 행위
- (4) 테러단체, 테러범 또는 테러 실시 또는 테러훈련에 정보, 자금, 물자, 노동, 기술, 장소 등을 지원, 협조 및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5) 기타 테러활동

이 법에서 지칭하는 테러활동단체는 테러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조직된 3인 이상의 범죄단체를 말한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테러범은 테러활동을 시행하

는 사람과 테러활동조직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테러사건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이미 발생한, 중대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수 있는 테러활동을 말한다.

제4조 국가는 반테러활동을 국가안전전략에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해결하고, 반테러 역량을 강화하며, 정치, 경제, 법률, 문화, 교육, 외교, 군사 등 수단을 통해 반테러 업무를 전개한다. 국가는 모든 형식을 불문하고 종교교리의 왜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한, 차별을 선동하고 폭력을 부추기기는 등의 극단주의세력을 반대하고, 테러의 사상기초를 일소한다.

제5조 반테러업무는 전문적인 업무와 군중노선을 함께 결합하고, 예방을 위주로 처벌과 결합하며, 선제공격과 주동성 유지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6조 반테러업무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인권을 존중, 보장해야 하며, 국민과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반테러업무 중 국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와 민족의 풍습을 존중하며 지역, 민족, 종교 등에서 기인한 차별적 조치를 금지한다.

제7조 국가는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을 설립하여 전국 반테러업무를 총괄 지휘, 지도한다. 구(區) 기관의 행정지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市)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을 설립하고, 현(縣)급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을 설립하며 상급 반테러업무지도기관의 지도, 지휘에 따라 관할 지역의 반테러 업무를 책임진다.

제8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과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과 기타 관련 국가기관은 분업에 따라 업무 책임제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반테러업무를 철저히 수행한다.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와 민병조직은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군사법규 및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과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테러활동을 예방하고 처리한다. 관련 기관은 연동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기관, 사회조직을 바탕으로 동원하여 공동으로 반테러업무를 전개한다.

제9조 어느 기관이나 개인은 모두 관련 기관에 협조하여 반테러업무를 전개할 의무를 갖고 있다. 테러활동 혐의 또는 테러활동의 혐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공안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테러활동을 제보하였거나 테러활동 예방 및 테러활동 제지에 큰 공헌을 한 기관과 개인 그리고 반테러 업무에서 기타 큰 공헌을 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포상한다.

제11조 중국 영토 밖에서 중국 국가, 국민 또는 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테러활동 범죄 또는 중국이 체결하고 참여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테러활동 범죄를 실시할 경우, 중국은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여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 2 장 테러 단체 및 조직원 지정

제12조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테러 단체 및 조직원을 지정(認定)하고,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의 사무기구에서 이를 공고한다.

제13조 국무원 공안 기관, 국가안전기관, 외교기관과 성급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테러단체 및 조직원 지정이 필요할 경우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금융기구와 특정 비금융기구는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 사무기구에서 공고한 테러 단체 및 조직원의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을 즉시 동결하고, 규정에 따라 국무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반자금세탁 행정주관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테러 조직 및 조직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에 불복할 경우,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의 사무기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즉시 재심을 진행하고 지정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한다.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서 철회 결정을 내릴 경우,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 사무기구에서 이를 공고한다. 자금, 자산이 동결된 경우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

제16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형사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 중 법에 따라 테러단체와 조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판결 발효 후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 사무기구에서 이를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장 관련 규정을 이에 적용한다.

제 3 장 안전예방

제17조 각 급 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은 반테러 홍보 교육을 전개하여 국민의 반테러 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교육, 인력자원 행정주관기관과 학교 및 관련 직업훈련기관은 테러활동 예방 및 긴급대응 지식을 교육, 수업, 훈련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문, 방송, TV, 문화, 종교, 인터넷 등 관련 기관은 맞춤형 방식으로 반테러 홍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등은 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에 협조하여 반테러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18조 전기통신사업 경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공간기관, 국가안 전기관에서 법에 따라 진행하는 테러활동 예방, 조사를 위한 기술 제공 및 암호 해독 등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

제19조 전기통신사업 경영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는 법률, 행정법규규정에 따라 사이버 안보, 정보 콘텐츠 감독제도와 안전 기술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테러리즘, 극단주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전달을 방지해야 한다. 테러리즘, 극단주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유포를 중단시키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한편, 공간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정보화, 전기통신, 공간, 국가안전 등 주관부처는 테러리즘, 극단주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 직무 분업에 따라 즉시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유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 또는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한다. 관련 기관은 이를 즉시 이행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된 테러리즘, 극단주의의 내용이 담긴 정보에 대해 전기통신 주관 기관은 즉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 유포를 차단시켜야 한다.

제20조 철도, 도로, 수상, 항공의 화물과 우편, 택배 등 물류 운영업체는 안전 검사 제도를 실시하여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운송, 탁송 물품에 대해 보안 검사 또는 개봉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운송, 탁송이 금지된 물품이나 중대한 안전 리스크가 있는 물품이나 고객이 보안 검사를 거부한 물품에 대해서는 운송, 탁송을 해서는 안 된다. 전 조항에서 규정한 물류 운영업체는 운송·탁송 위탁 고객의 신분과 물품 정보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21조 전기통신, 인터넷, 금융, 숙박, 고속버스, 렌터카 업종의 경영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신원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생산 및 수입업체는 규정에 따라 총기류 등 무기, 탄약, 통제 물품, 위험화학물품, 민간용 폭발물품, 핵물질과 방사능물품에 대해 전자 추적 표식을 해야 하며, 민간용 폭발물품에 대해서도 안전검사 추적표식물을 첨부해야 한다. 운수 업체는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위험화학물품, 민간용 폭발물품, 핵물질과 방사능물품의 운송 수단에 대해서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관련 업체는 규정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에 대해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하며,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의 확산 또는 불법 루트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대비해야 한다. 통제물품, 위험화학물품, 민간용 폭발물품, 국무원 관련 주관부처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수요에 따라 특정지역, 특정시간에 생산, 수·출입, 운수, 판매, 사용, 폐기에 대해 관리 통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현금 사용 및 실물 거래를 금지하거나 거래활동에 대해 기타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3조 총기류 등 무기, 탄약, 위험화학물품, 민간용 폭발물품, 핵물질, 방사능물품, 전염병 병원체 등 물품이 도난, 약탈되거나 분실 또는 유실되었을 경우, 사건 발생 기관은 즉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 하며, 동시에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보고가 접수된 후 즉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주관기관은 공안기관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이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을 불법으로 제조, 생산, 보관, 운수, 수·출입, 판매, 제공, 구매, 사용, 소지, 폐기,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24조 국무원 반자금세탁 행정주관기관, 국무원 관련 기관, 기관은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에서 반테러 용자 의무의 상황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국무원 반자금세탁 행정주관기관은 테러 관련 용자 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임시적인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감사, 재정, 세무 등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해 감독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 자금유입·유출의 테러 관련 용자 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해관(海關)이 출·입국자 대상으로 휴대한 현금과 무기명 유가증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과정 중 테러 관련 용자 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국무원 반자금세탁 행정 주관부처와 관련 관할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7조 지방 각 급 인민정부가 제정·수립한 도시농촌 계획은 반테러업무 수요에 부합해야 한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관련 건설업체가 주요 도로, 교통 요충지, 도시 공공지역의 중요 지역에서 공공안전 CCTV 시스템 등 테러습격을 대비할 수 있는 기술, 물자설비·시설을 배치, 설치하도록 구성·감독한다.

제28조 공안기관과 관련 기관은 극단주의를 선전하고 극단주의를 이용하여 공공안전에 위협 초래 및 공공질서 파괴 또는 신체, 재산을 침해하고 사회 관리를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저지하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극단주의 활동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단을 명령하고 관련 인원을 현장에서 연행하여 신원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물품, 자료를 압수하고 불법 활동 장소에 대해 봉쇄해야 한다. 모든 기관이나 개인은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물품, 자료, 정보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테러활동, 극단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교사, 위협, 유인 받은 자 또는 테러활동, 극단주의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소재지 기관, 재학 중인 학교, 가정과 후견인을 소집하여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감옥, 구치소, 지역사회 교화 기관은 복역 중인 테러범죄자와 극단주의 범죄자의 관리, 교육, 교화 등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감옥, 구치소는 테러활동 범죄자와 극단주의 범죄자에 대해 교육 개조 및 보호감독 관리 질서의 필요에 따라 일반 형사범죄범과 함께 수감시키거나 단독 수감시킬 수 있다.

제30조 테러활동범죄와 극단주의범죄로 인해 유기징역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감옥, 구치소에서는 출소 전 범죄 성격, 정황 및 사회에 끼치는 위험 정도와 복역 기간의 태도를 근거로 출소 후 거주단지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사회 위험성을 평가할 때에는 관련 기층조직과 기존 사건처리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평가에 따라 사회적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감옥, 구치소는 복역 장소 소재지 중급 인민법원에 안치교육 건의를 해야 하며, 건의서 복사본을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역장소 소재지 중급 인민법원은 사회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소 후 안치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출소 전에 내려야 한다. 안치교육 대상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안치교육은 성급 인민정부가 시행한다. 인치교육기관은 매년 안치교육 대상자 상대로

평가를 진행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확연하고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치교육 해제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안치교육을 결정할 바 있는 중급 인민법원에서 이를 최종 결정한다. 안치교육 대상자도 교육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안치교육의 결정과 집행을 감독한다.

제31조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테러습격의 가능성이 비교적 다대하고 테러습격으로 인명·재산 피해 또는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기관, 장소, 활동, 설비 등을 테러습격 방지를 위한 중점 목표로 정하고 본(本)급(级)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32조 중점 목표의 관리 기관은 다음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긴급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 진행
- (2) 반테러업무 특별경비 보장 제도를 구축하고, 대응, 처리 관련 설비의 배치 및 업그레이드
- (3) 관련 기관 또는 책임자 지정, 부서 직무 확정
- (4) 위협 평가 진행, 안전 위협 실시간 모니터링, 내부 안전관리 재정부
- (5) 정기적으로 공안기관과 관련 기관에 대비 조치 이행 상황 보고

중점 목표의 관리 기관은 도농계획, 관련 기준과 실제 수요에 따라 중점 목표에 대해 이 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 물자설비, 시설을 동시에 설계, 건설, 운영해야 한다.

중점 목표 관리 기관은 공공안전 CCTV 시스템 당직 감독제도, 정보보관 사용제도 및 운영 보호 등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수집한 CCTV 정보 보존기한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중점 목표 이외에 공공안전과 관련된 기타 기관, 장소, 활동, 설비에 대해 해당 주관 기관과 관리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제33조 중점 목표 관리 기관은 중요한 직무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부적합자를 대상으로 보직을 조정하고 관련 상황을 공안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34조 대형 행사 주최측과 핵심 목표 관리 기관은 규정에 따라 대형 행사 장소, 공항, 기차역, 항구, 도시 전철역,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만 등 핵심 목표로 출입하는 인원, 물품,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보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금지물품과 관리통제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압수한 후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항공기, 열차, 선박, 지하철, 공용 전기차량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운영 기관은 규정에 따라 보안요원과 상응하는 설비, 시설을 구비하고 보안검사와 경비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36조 공안기관과 관련 기관은 중점 목표의 기초정보와 중요한 동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중점 목표의 관리기관에서 테러습격 대비를 위한 각 중직무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공안기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점 목표에 대해 경계, 순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7조 비행 관리통제, 민용 항공, 공안 등 주관기관은 직무 분업에 따라 공역(空域), 항공기, 비행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항공기 또는 비행 활동을 이용한 테러활동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제38조 각 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중점 국(변)경 지대와 공항만(口岸)에 국경 장벽, CCTV와 밀입국 방지를 위한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공안기관과 중국인민해방군은 국경 순찰을 철저히 하고, 규정에 따라 국(변)경 최전선, 국(변)경 관리구역과 국(변)경 통로, 공항만을 출입하는 인원과 교통운수수단, 물품과 연해 연안지역의 선박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9조 출입국 증명서 발급 기관과 출입국 변방 조사기관은 테러범과 테러 혐의자에 대해 출입국을 금지하거나 출입국 증명서 발급 거부 또는 그 출입국 증명서를 폐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40조 해관, 출입국변방조사기관은 테러 혐의자 또는 테러 혐의 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압류하고 즉시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41조 국무원 외교, 공안, 국가안전,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상무, 여행 등 주관부처는 해외 투자협력, 여행 등 안전 리스크에 대한 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경외(境外) 중국 국민과 해외기관, 설비, 재산에 대해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테러 습격에 대비, 대응해야 한다.

제42조 재외(駐外)기관은 안전 대비 제도와 긴급 대치방안을 구축하여 관련 인원, 설비, 재산에 대한 안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장 정보 신식 (情報信息)

제43조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국가반테러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범부처·범지역의 정보 업무 메커니즘을 이행하여 반테러 정보화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반테러 정보 수집 업무를 강화하여 관련 단서, 인원,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규정에 따라 국가반테러정보센터에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방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범기관간의 정보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반테러 정보 업무를 전개하여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 보고하고 기타 지방의 긴급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통보해야 한다.

제44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과 관련 기관은 대중 신뢰를 통한 기층 기초 업무를 강화하고 기층 정보 업무 역량을 구비하여 반테러 정보 업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45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군사기관은 해당 직무 범위내에서 반테러 정보업무의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통해 기술수사(技術偵察)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 조항 규정에 따라 획득한 서류는 반테러 대응·처리와 테러활동 범죄, 극단주의 범죄의 수사, 기소 및 재판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기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제46조 관련 기관은 이 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대비 업무 중 획득한 정보를 국가반테러정보센터의 요구에 따라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제47조 국가반테러정보센터, 지방반테러업무 지도기관과 공안기관 등 관련기관은 관련 정보에 대해 조사, 연구판단, 검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테러 사건이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상응하는 안전 대비와 대응·처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과 기관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기관은 통보에 따라 안전 대비와 대응·처리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48조 반테러업무 지도기관, 관련 기관과 기관, 개인은 반테러 업무에 관한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중 알게 된 국가기밀, 상업기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기밀, 상업기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 5 장 조사

제49조 공안기관은 테러 혐의 보고서를 받거나 테러활동 혐의를 발견하여 확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50조 공안기관이 테러 혐의를 조사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혐의자에 대해 심문, 수색, 소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면, 지문, 홍채 등 생체 인식정보와 혈액, 소변, 탈락 세포 등 생체 샘플을 채취, 수집하고 서명을 남기도록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테러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관련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공안기관 또는 기타 장소에서 조사를 받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51조 공안기관이 테러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관련 기관, 개인에게 관련 정보와 서류를 수집,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짓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52조 공안기관이 테러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현금 이상의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준을 거쳐 혐의자의 계좌, 송금거래 내역, 채권, 주식, 펀드 배당금 등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봉인, 압수,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봉인, 압수, 동결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상황이 복잡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준을 거쳐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 공안기관이 테러 혐의를 조사하는 경우, 현금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준을 거쳐 위험 정도에 따라 테러활동 혐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다.

- (1) 공안기관의 기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거주지 소재 시, 현 또는 지정 거주 이탈 금지
- (2) 대형 군중행사 참가 또는 특정 활동의 종사 금지
- (3) 공안기관의 기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 또는 특정 장소 진입 금지

- (4) 특정인원과의 만남 또는 연락 금지
- (5) 정기적으로 공안기관에 활동 상황 보고
- (6)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류, 신분증, 면허증을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할 것

공안기관은 전자 감시를 실시할 수 있고 비정기적 조사 등의 방식으로 제한 조치의 이행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앞 2개 규정의 제한조치 기한은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한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해야 한다.

제54조 공안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범죄사실 또는 범죄 혐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본 장에서 규정하는 관련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공안기관에서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은 경우 관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 6 장 대응조치

제55장 국가는 테러사건 긴급 대응·조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테러사건의 규칙, 특징 및 초래할 수 있는 사회 위험, 등급과 종류 분류에 따라 국가 대응·처리 대책을 제정해야 하고, 테러사건 대응·처리의 조직 지휘체계와 테러사건 안전 예방, 대응·처리 절차와 사회 질서 회복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관련 기관, 지방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상응하는 대응·처리 대책을 제정해야 한다.

제56장 테러사건을 대응·처리하기 위해 각 급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관련 기관이 참여한 지휘기관을 설립하여 지휘관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반테러업무 지도기관 책임자 또는 공안기관 책임자 또는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의 기타 소속기관의 책임자가 지휘관을 맡을 수 있다. 다수의 성, 자치구, 직할시를 걸쳐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특히 중요한 테러사건의 대응·처리는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서 지휘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 다수의 행정지역에 걸쳐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중대한 테러사건의 대응·처리는 성급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서 지휘를 책임진다.

제57조 테러사건 발생 후 발생지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즉시 테러사건 대응·처리 대비책을 가동하고, 지휘관을 확정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중국인민

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반테러업무 지도기관과 지휘관의 통일 지도, 지휘 하에 적결, 통제, 구조, 보호 등 현장 대응·처리 업무를 협동으로 전개한다. 상급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대응·처리업무에 대해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반테러자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비상상태 선언이 필요할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규정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58조 테러사건 또는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은 즉각 조취를 취하고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가 테러 현장을 목격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통제하고 사건을 공안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서 미처 지휘관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조치하는 공안기관의 최고 직급자가 현장 지휘를 맡는다. 공안기관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조치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또는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최고 직급자가 현장 지휘를 맡는다. 현장에서 대응·처리하는 인원은 같은 소속, 체계가 아닐지라도 현장 지휘 담당자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지휘관이 확정된 후 현장 지휘 담당자는 지휘관에게 지시를 받고 업무 또는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59조 중국의 해외 주재 기관, 인원, 중요 시설이 테러습격을 받았거나 받을 위협이 있을 경우, 국무원 외교, 공안, 국가안전, 상무, 금융, 국유자산감독관리, 관광, 교통운수 등 주관 기관은 즉시 대응·처리 대비책을 가동해야 한다. 국무원 외교부는 관련 국가와 협조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의 해외 주재 기관, 인원, 중요 설비가 심각한 테러 습격을 받은 후 관련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국가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외교, 공안, 국가안전 등 기관의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대응·조치 업무를 전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0조 테러사건 대응·처리 시 테러의 피해, 위협을 받은 인원의 신변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61조 테러사건 발생 후 대응·처리를 책임지는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관련 기관과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다수의 대응·처리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1) 피해자 구조 및 치료, 위협을 당한 인원의 소산, 철수, 대피 및 기타 구조 조치

- (2) 현장과 주변 도로 봉쇄, 현장인원 신분증 검사, 관련 현장에 임시 폴리스 라인 설치
- (3) 특정 지역내 공역(空域), 해(수)역 통제, 특정 지역내 대중교통에 대한 검사
- (4) 특정 지역내 인터넷, 무선통신, 통신 통제
- (5) 특정 지역내 특정인원에 대한 출입경 통제
- (6) 관련 설비, 시설에 대한 사용 제한 또는 금지, 관련 장소 사용 제한 또는 폐쇄, 인원 밀집 행사 또는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생산경영활동 중지
- (7) 훼손된 교통, 전기통신, 인터넷, 방송, 수도공급, 배수, 전기공급, 가스공급, 난방공급 등 공공시설 복구
- (8) 자원자를 모집하여 반테러 구조 업무 투입, 특정 기술자에게 서비스 제공 요구
- (9) 기타 필요한 대응·처리 조치

본 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응·처리조치는 성급 이상의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서 결정 또는 비준한다. 본 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응·처리조치는 구(區)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시급 이상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서 결정한다. 대응·처리 조치는 적용 시간과 공간 범위를 확정하여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62조 인민경찰, 인민무장경찰 및 기타 법에 따라 무기를 휴대, 배치하고 있는 대응·처리요원은 현장에서 총기류, 칼 등의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는 인원을 상대하고, 폭력행위를 행사하고 있거나 행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인원 대상으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이거나 경고 후 더 큰 위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경우 직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 테러사건 발생, 경과 및 대응·처리 정보는 테러사건 발생지의 성급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서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은 지정된 성급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서 통일 발표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테러사건 정보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유포할 수 없으며, 테러활동 모방을 초래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보도, 유포할 수 없다. 또한 테러사건 중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장면을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테러사건의

대응·처리 과정 중 정보 발표를 책임지는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의 비준을 거친 신문매체를 제외하고 현장 대응·처리 인원 및 인질에 대한 신상정보와 대응·처리 행동 상황을 보도, 유포할 수 없다.

제64조 테러사건 대응·처리 종료 후, 각 급 인민정부는 관련 기관을 구성하여 피해 기관과 개인이 가급적 빨리 정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 지역의 사회질서와 대중 정서를 안정시켜야 한다.

제65조 현지 인민정부는 테러사건 피해자와 해당 인원의 친족에게 적당한 지원을 적시에 지급하고, 기본생활조건을 상실한 피해자와 해당 인원의 근친속에게 기본 생활 보장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위생, 의료보장 등 주관기관은 테러사건 피해자와 해당 인원의 친족에게 심리상당, 의료 등 측면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66조 공안기관은 테러사건에 대해 적시에 입건, 조사해야 하고, 사건 발생 원인, 경과, 결과를 밝힌 후 법에 따라 테러활동 조직, 인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67조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 대응·처리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분석, 최종 평가를 해야 하고, 예방 및 대응·처리 개선 조치를 상급 반테러업무 지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장 국제협력

제68조 중국은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및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기타 국가, 지역, 국제조직과 반테러협력을 전개한다.

제69조 국무원 관련 기관은 국무원이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관련 국제조직과 반테러정책대화, 정보교류, 단속협력 및 국제자금 감독관리 협력을 전개한다. 중국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전제 하에 변경지역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와 해당 주관기관은 국무원 또는 중앙 관련 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이웃 국가 또는 지역과 반테러 정보 교류, 단속 협력, 국제자금 감독관리 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

제70조 반테러활동 범죄자와 관련된 형사사법 협조, 인도 및 수형자 이송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1조 관련 국가와 합의한 협정은 국무원 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무원 공안 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인원을 해외로 파견하여 반테러 임무를 집행할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가 인원을 해외로 파견하여 반테러 임무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를 비준한다.

제72조 반테러 국제협력을 통해 취득한 서류는 행정처벌,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단, 중국 측(我方)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자료는 제외된다.

제 8 장 보장조치

제73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직권 구분에 따라 반테러업무 비용을 각각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반테러 중점 지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제공하고, 대규모 테러사건 대응·처리에 있어 경비를 제공한다.

제74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과 관련 기관,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책에 따라 반테러 전문 역량을 구축하고, 전문적 훈련을 강화하며, 필요한 반테러 전문 설비와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현급, 향급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관련 기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를 지도하여 반테러 업무 역량, 지원 대열(队伍)을 구축하여 유관 기관의 반테러 업무 추진에 지원, 협조한다.

제75조 반테러업무 직책 이행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하여 반테러업무를 이행함으로써 인체 부상 또는 사망한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

제76조 테러사건의 보고 또는 제지, 테러 범죄사건을 입증(作证), 반테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인하여 본인 또는 해당자의 근친속들의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경우, 본인 또는 해당자의 친족이 보호 신청을 할 경우, 공안기관,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한 가지 또는 다수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본인 이름, 주소, 근무처 등 개인 정보 비공개
- (2) 피보호인 대상 특정한 접촉 금지

- (3) 신변, 주택 대상으로 전담 보호 조치 실시
- (4) 피보호인 성명 변경 및 주택, 근무처 재배치
- (5)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

공안기관, 관련 기관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 기관의 명칭, 주소를 비공개하고, 특정 인원의 피보호 기관 접촉을 금지하며, 피보호 기관의 사무실, 경영 장소를 대상으로 전담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7조 국가는 반테러 과학연구와 기술혁신 및 선진화된 반테러 기술, 설비 개발과 사용 확대를 장려, 지지한다.

제78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반테러 직책의 이행에 따른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과 개인의 재산을 동원할 수 있다. 임무 완료 후 적시에 반환 또는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훼손 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반테러업무 이행에 따른 관련 기관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배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 장 법률책임

제79조 테러사건 조직, 계획, 준비 및 테러리즘 선전, 테러사건 이행 선동 및 테러리즘을 선전하는 물품을 불법 소지하거나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공공장소에서 테러리즘을 선전하는 복장, 표식 착용을 강제한 경우와 테러조직을 구성, 지도, 테러조직에 참여하거나 테러조직, 테러요원, 테러활동 실시 또는 테러활동 훈련에 도움을 제공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0조 다음 각 호의 활동 중 하나에 가담하였으나 사건이 경미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에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와 함께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전하거나 테러활동,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하는 경우

- (2)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물품을 제작, 유포, 불법 소지하는 경우
- (3) 타인에게 공공장소에서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복장, 표식 착용을 강제하는 경우
- (4) 테러리즘, 극단주의 선전 또는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 자금, 물자, 노무, 기술, 장소 등을 지원, 협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제81조 극단주의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중 하나에 가담하였으나 사건이 경미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에서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와 함께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타인을 강요하여 종교활동에 참석하거나 종교활동 장소, 종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물 또는 노동 제공을 강요하는 경우
- (2) 협박, 괴롭힘(騷擾) 등의 방식으로 기타 민족 또는 기타 신앙인을 거주지에서 몰아내는 경우
- (3) 협박, 괴롭힘 등의 방식으로 기타 민족 또는 기타 신앙인의 인적교류, 공동생활을 간섭하는 경우
- (4) 협박, 괴롭힘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생활습관, 생활방식과 생산경영을 간섭하는 경우
- (5) 국가기관 직원의 합법적인 직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 (6) 국가 정책, 법률, 행정법규를 외곡, 폄훼하여 인민정부의 합법적인 관리에 저항하도록 선동, 교사하는 경우
- (7) 거민신분증, 호적부 등 국가의 법적 신분증과 인민폐를 고의로 훼손하도록 군중을 선동, 협박하는 경우
- (8) 종교의식으로 결혼, 이혼 등기를 대체하도록 타인을 선동, 협박하는 경우
- (9)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선동, 협박하는 경우
- (10) 기타 극단주의를 이용하여 국가 법률제도의 시행을 방해하는 경우

제82조 타인의 테러범죄, 극단주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폐, 보호하였으나 정황이 경미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사법기관에서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시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리고, 이와 함께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3조 국가 반테러업무 지도기관 사무기구에서 발표한 테러조직 및 테러 요원의 자산과 기타 자산에 대해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에서 즉시 동결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20만 이상 5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위관리자 및 기타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5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위관리자 및 기타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84조 전기통신(电信) 업무 경영자,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주관기관은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관련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관련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안기관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관련 책임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릴 수 있다.

- (1)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에서 진행되는 테러활동 예방, 조사에 기술지원, 암호 해독 등 기술지원과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
- (2)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테러리즘, 극단주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의 유포를 중단, 삭제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았을 경우
- (3) 사이버 안전, 정보내용에 대한 감독 제도 및 안전기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테러리즘, 극단주의가 포함된 내용 정보가 유포되고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

제85조 철도, 도로, 수상, 항공의 화물, 우정(邮政), 택배 등 물류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주관기관은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관련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고객의 신분증 검사 등 안전검사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운송, 탁송 물품에 대한 보안 검사 또는 개봉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 (2) 운송, 탁송 금지 물품, 중대한 안전 리스크가 있는 물품 또는 고객이 안전 검사를 거부한 물품을 운송, 탁송한 경우
- (3) 운송, 탁송을 의뢰한 고객의 신분, 물품정보 등록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86조 전기통신, 인터넷, 금융업무경영자, 서비스제공자가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거나, 신원 불분명 또는 신분 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할 경우, 5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숙박, 고속버스, 렌트카 등 업종의 경영자, 서비스 제공자가 본 조 제 1항, 제2항 규정에 해당될 경우, 주관기관은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게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다음 각 호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주관기관은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규정에 따라 총기류 등 무기, 탄약, 통제물품, 위험 화학물품, 민간용 폭발물품,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에 대한 전자 추적 표식 조치를 하지 않고, 민간용 폭발물품에 대해 보안검사 추적 표식을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
- (2)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위험 화학물품, 민간용 폭발물품,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의 운반 수단을 위치확인 장치를 통해 감독·통제 하지 않았을 경우
- (3) 규정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에 대해 엄격한 감독 관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

- (4) 국무원 주관 기관 또는 성급 인민정부에서 통제물품, 위험 화학물품, 민간용 폭발물품을 대상으로 내린 통제 또는 거래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88조 테러습격 방비 중점 목표의 운영·관리 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안기관은 그에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요 관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테러 예방 및 대응·처리에 관한 대비책, 조치를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 (2) 반테러업무 특별경비 보장 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예방, 처치를 위한 설비, 시설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 (3) 업무 기관 또는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 (4) 중요 직위에 있는 인원에 대해 보안 배경심사(背景審査)를 하지 않았거나 부적합 요소가 있는 인원의 직무를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
- (5) 대중교통 수단에 규정에 부합하는 보안인력과 상응하는 설비, 시설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 (6) 공공안전 CCTV 시스템에 대한 당직 모니터링 체제, 정보의 보관 사용, 운행·유지 등의 관리 제도를 구축하지 않았을 경우

대형 행사 주최측과 중점 목표 관리기관이 규정에 따라 대형 행사 장소, 공항, 기차역, 항구,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항구만 등을 출입하는 중점 목표 인원, 물품 및 교통수단 대상으로 보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89조 테러활동 혐의자가 공안기관에서 명령하여 준수해야 하는 제한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이에 대해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린다.

제90조 언론매체 등 기관에서 테러사건 정보를 변조 또는 허위 테러사건 정보를 유포하거나, 모방이 가능하도록 테러의 세부 사항을 보도, 유포하거나 테

러사건 중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장면을 발표하거나, 기준을 거치지 않고 현장 대응·처리 관계자 또는 인질의 신원정보와 대응·처리 행동 상황을 보도, 유포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관계자와 기타 책임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내리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인이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리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91조 관련 기관의 반테러 업무를 위한 안전 예방, 정보, 조사, 대응·처리에 협조를 거부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은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리고 이와 함께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기관이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은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관계자와 기타 책임자에 대해서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2조 관련 기관에서 전개하는 반테러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은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내리고, 이와 함께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기관에서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요 관계자와 기타 책임자를 대상으로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인민경찰,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의 합법적인 직무 이행을 방해할 경우 엄중 처벌한다.

제93조 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사안이 엄중할 경우, 주관기관은 관련 업무 종사를 중단시킬 것을 명령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 또는 생산업무 중단을 명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관련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등록을 취소한다.

제94조 반테러업무 지도기관, 관련 기관의 직원이 반테러업무 중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정보 등을 유출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반테러업무 지도기관, 관련 기관과 직원이 반테러업무 중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기타 법률, 기율을 위반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기관이나 개인은 관련 기관에 이를 고발, 고소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고발, 고소를 접수한 후 적시에 처리하고 접수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95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봉인, 압수, 동결, 압류, 몰수한 물품, 자금 등이 심사를 거쳐 테러리즘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관련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

제96조 관련 기관과 개인이 이 법에 따라 결정된 행정처벌과 행정 강제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 장 부칙

제97조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10월 29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통과된 〈반테러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 중국 국민, 귀국동포, 기타 관련 법령

[12] 중국 국민 출국여행 관리방법 (2017. 3. 1. 개정시행, 국무원령)

제1조 여행사의 중국 국민 출국여행(出国旅游, 해외여행)활동 모집을 규범화하고, 출국 여행객과 출국여행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출국여행의 목적지 국가 명단은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에서 국무원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제기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에서 발표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중국 국민을 모집하여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에서 발표한 출국여행목적지 국가 이외의 국가로 여행할 수 없다. 중국 국민을 모집하여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에서 발표한 출국여행목적지 국가 외의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체육, 문화 활동에 관련된 특별 여행을 진행하려는 경우,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여행사에서 출국여행업무를 경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국제여행사 자격 취득 기간 만1년
- (2) 입국여행업무 경영에 있어 특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 (3) 경영 기간내 중대 위법행위와 중대 서비스 품질 문제가 없는 경우

제4조 출국여행업무 경영을 신청하려는 여행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여행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여행행정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30일내에 이 방법 제3조의 규정 조건에 따라 신청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를 거쳐 동의할 경우,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를 거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은 여행사 출국여행업무 경영을 비준하며, 여행업 발전 계획 및 합리적인 발전 구도(布局)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출국여행업무 경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임의로 출국여행업무를 경영하거나 상무, 현지시찰, 훈련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출국여행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5조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은 출국여행업무 경영 자격을 취득한 여행사(이하 여행사(组团社)) 명단을 발표하고, 국무원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은 전년도 전국 입국여행(入境旅游, 외국인의 국내 여행) 실적, 출국여행 목적지의 증가 상황과 출국여행의 발전 추세에 따라 매년 2월 말 이전 당해 연도 출국여행 총 인원수 계획을 확정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여행행정기관에 하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여행행정기관은 본 행정구역내 각 여행사의 전년도 입국여행의 경영 실적, 경영 능력, 서비스 품질에 따라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에 따라 매년 3월 말 이전 각 여행사의 당해 연도 출국여행 인원수를 심사 결정한다.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여행행정기관이 심사 결정한 여행사의 연간 출국여행 총 인원수 계획 및 여행사의 중국 국민 출국여행 모집 상황을 감독한다.

제7조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은 〈중국 국민 출국여행 여행객 단체 명단표〉(이하 〈명단표〉)를 일괄 제작하여 당해 연도 출국여행인원수 계획 하달 시 일련번호를 성, 자치구, 직할시 여행행정기관에 배포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여행행정기관에서 확인 후 여행사에게 배포하도록 한다.

여행사는 심사 결정된 출국여행 인원수 계획에 따라 출국여행 여행객 단체를 모집하고, 〈명단표〉를 작성한다. 여행객과 인솔자는 최초 출국 및 재출국 시 〈명단표〉를 작성해야 하며, 심사 결정 후의 〈명단표〉에는 증원할 수 없다.

제8조 〈명단표〉는 동일한 양식 4장으로 구성(一式四联)되며, 각각 출경변 방조사 전용, 입국변방조사 전용, 여행행정기관 심의 조사 전용, 여행사 보관 전용으로 구분된다.

여행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여행 여행객 단체 출입국 시, 여행객 단체 입국 후 〈명단표〉를 관련 기관에 각각 제출하여 확인, 보관하도록 한다.

출국여행 외환 환전은 여행객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여행객이 유효한 일반 여권을 소지한 경우 여행사에서 직접 출국여행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일반 여권이 없는 경우, 〈중국 국민 출입경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 받은 후 출국여행 절차를 처리한다.

여행사는 여행객이 방문하는 국가의 비자 등 출국 절차를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10조 여행사는 여행객 단체의 전문 인솔자(领队, 가이드)를 지정해야 한다.

인솔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여행행정기관의 심사 합격을 받고 인솔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솔자는 인솔 시 인솔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 방법 및 국무원 여행 행정기관의 관련 규정에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여행객 단체는 국가에서 개방한 공항만(口岸)을 통해 여행객 단체 전원이 함께 출입국해야 한다.

여행객 단체는 출입국 시 변방검사대에서 여권, 비자, 〈명단표〉를 검사 받아야 한다. 국무원 관련 기관의 비준을 거쳐 여행객 단체는 여행 목적지 국가에 도착하여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거나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행객 단체가 출국 전에 팀을 나누어 입국하기로 확정된 경우, 여행사는 출입경변방검사총참(出入境边防检查总站) 또는 성급 공안변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객 단체가 출국 후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수한 사유로 팀을 나누어 입국해야 하는 경우, 인솔자는 즉시 여행사에 통보하고, 여행사는 관련 출입경변방 검사총참 또는 성급 공안변방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여행사는 여행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출국여행 서비스 정보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허위 홍보를 하여서는 안 되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여행사가 출국여행업무를 경영할 경우 여행객과 서면 형식의 여행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여행계약서에는 여행 출발도착시간, 일정 계획, 가격, 숙식, 교통 및 계약 위

반 책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행계약서는 여행사와 여행객이 각각 1부씩 소지한다.

제14조 여행사는 여행계약서에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여행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행객 신변, 재산 안전 보장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여행객의 신변 안전에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여행객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명확히 경고해야 하며,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15조 여행사가 출국여행객을 모집하는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준법하게 설립되고 신용이 양호한 여행사(이하 경외초청여행사(境外接待社))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해외여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여행사 및 여행객 단체 인솔자는 경외초청여행사를 상대로 약정된 단체 활동계획에 따라 여행 활동을 계획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여행객이 선정, 도박, 마약과 관련된 활동 또는 위험한 활동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단축하지 않을 것, 여행객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일정 참여를 강요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를 강요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 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경외초청여행사가 여행사와 여행객 단체 인솔자가 제시한 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 여행사와 여행객 단체 인솔자는 이를 제지해야 한다.

제17조 여행객 단체 인솔자는 여행객에게 여행 목적지국가의 관련 법률, 풍습 및 기타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여행객의 인격존엄, 종교신앙, 민족풍습과 생활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제18조 여행객 단체 인솔자는 여행객을 인솔하여 여행, 유람하는 과정에서 여행객 신변안전에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여행객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명확히 경고하여야 하며, 여행사의 요구에 따라 효과적 조치를 취하여 위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19조 여행객 단체가 해외에서 특수한 곤경과 안전 문제에 직면하였을 경우, 인솔자는 즉시 여행사와 소재국 중국 대사관에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는 즉시 여행행정기관과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여행객 단체 인솔자는 경외초청여행사, 가이드 그리고 여행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와 공모하여 여행객이 소비하도록 사기를 치거나 협박하여서는 안 되며, 경외초청여행사, 가이드 그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를 상대로 리베이트나 인센티브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여행객은 여행 목적지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현지 풍습을 존중해야 하며 여행객 단체 인솔자의 통솔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여행객이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여행객이 해외에 체류하고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행객 단체 인솔자는 즉시 여행사와 소재국 주재 중국 공관에 보고해야 하고, 여행사는 즉시 공안기관과 여행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기관에서 관련 사항을 처리할 경우, 여행사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여행사 또는 여행객 단체 인솔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여행객은 여행행정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여행사 또는 위탁한 경외초청여행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여행객의 합법적인 권리가 손해를 입을 경우, 여행사는 법에 따라 여행객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여행사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여행행정기관은 출국여행업무 경영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출국여행업무 경영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 입국여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 (2) 당사의 원인으로 1년간 정상적으로 출국 여행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경우
- (3) 출국여행 서비스 품질 문제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은 경우
- (4) 외화 도피, 불법 환차익 행위를 한 경우
- (5) 여행 명목으로 허위로 여권, 비자 등 출입국 증명서를 편취하거나 타인을 해외로 출국시킨 경우
- (6) 국무원 여행행정기관에서 중국 국민 출국여행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한 기타 행위를 한 경우

제26조 어느 기관이든 개인이든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 없이 임의로 경영하거나 상무, 시찰, 훈련 등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출국여행업무를 경영할 경우 여행행정기관에서 불법 경영 중단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7조 여행사가 이 방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객 단체에 인솔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여행행정기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출국여행업무를 경영 자격을 중지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인솔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출국여행업무 경영자격을 취소한다.

제28조 여행사가 이 방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여행객에게 허위 서비스정보 또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중국 소비자권리보호법〉과 〈중국 反불공정경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9조 여행사 또는 여행객 단체 인솔자가 이 방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규정을 위반하고 신변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여행객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명확한 경고를 하지 않았거나, 위협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여행행정기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내린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여행사 출국여행업무 경영자격을 중지하고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여행객 단체 인솔자에게는 가이드 자격증 정지부터 직권 말소가 가능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30조 여행사 또는 여행객 단체 인솔자가 이 방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하고 경외초청여행사에 선정, 도박, 마약 관련 활동 또는 위험한 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요구하지 않았거나, 임의의 일정 변경 및 프로그램을 단축, 여행객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일정 참여를 강요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를 강요하지 않도록 요구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경외초청여행사가 상기 요구 내용을 위반하였으나 제지하지 않은 경우, 여행행정기관은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사가 해당 여행객 단체로부터 징수한 비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국여행업무 경영 자격을 잠정 정지하며, 여행객 단체 인솔자의 가이드증을 정지한다. 악영향이 초래되었을 경우, 여행사의 출국여행업무 경영 자격을 취소하고, 여행객 단체 인솔자의 가이드증을 직권 말소한다.

제31조 여행객 단체 인솔자가 이 방법 제20조 규정을 위반하고 경외초청여

행사, 가이드 및 여행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와 결탁하여 여행객이 소비하도록 사기 또는 협박하거나 경외초청여행사, 가이드 및 기타 여행객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상대로 리베이트, 인텐시브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여행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요구한 리베이트, 인텐시브 또는 수수한 금품을 압수하고, 요구했던 리베이트, 인텐시브 또는 수수한 금품 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가이드증을 말소한다.

제32조 이 방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여행객이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였으나 여행객 단체 인솔자가 여행사와 소재국 주재 중국 공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거나, 여행사가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여행행정기관은 경고를 내리고 여행객 단체 인솔자의 가이드증을 정지하고 여행사의 출국여행업무 경영자격을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여행객이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불법체류하다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공안기관은 여권을 말소한다.

제33조 이 방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7년 3월 17일 국무원에서 비준하고, 1997년 7월 1일 국가여행국, 공안부에서 발표한 〈중국 국민 자비(自費) 출국여행 관리 임시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13] 중국 귀국동포 · 동포가족 권익 보호법 (2009. 8. 27. 개정시행, 주석령)

제1조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귀국동포(归侨)는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를 뜻한다. 화교는 해외에 정착한 중국 국민을 뜻한다. 동포가족(侨眷)은 화교, 귀국동포(归侨)의 중국내 가족을 뜻한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동포가족(侨眷)은 화교, 귀국동포(归侨)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손녀와 장기간 화교, 귀국동포(归侨)와 부양관계에 있는 기타 친척을 포함한다.

제3조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실제 상황과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주관 기관에서 결정한다.

제4조 현급 이상의 각 급 인민정부와 동포사무업무(侨务工作) 기구는 관련 기관과 조율, 협력하여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합법적인 권리 수호를 위한 업무를 철저히 한다.

제5조 국가는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에게 주거장소를 제공한다.

제6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국동포(归侨) 인원이 비교적 많은 지방 인민대표대회는 적정 인원의 귀국동포(归侨)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 설립을 위한 신청 권리가 있으며,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합법적 사회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이 법에 따라 설립한 사회단체의 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와 지방귀국화교연합회는 귀국동포(归侨),

동포 가족(侨眷)의 이익을 대표하며, 법에 따라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9조 국가는 귀국동포(归侨)를 안치한 농장, 임업장(林场) 등 기업에 지원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귀국동포(归侨)를 안치한 농장, 임업장 등 기업의 소재지에 필요에 맞게 학교와 의료보건기구를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원, 설비, 경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

제10조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 직원의 사회보장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 기업과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 직원은 법에 따라 현지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는 노동력을 상실하고, 경제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을 구제한다.

제11조 국가는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이 법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설립 등 산업투자, 창설을 장려, 지도한다. 각 급 인민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하며, 합법적인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2조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이 중국내에서 공익사업을 설립할 경우, 각 급 인민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합법적인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해외 거주 지인이 기증한 물자가 중국내 공익사업에 사용될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

제13조 국가는 법에 따라 중국내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사유 주택 소유권을 보호한다.

법에 따라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 사유 주택을 징수, 동원, 이주할 경우, 건설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 및 적절한 거주지를 지원해야 한다.

제14조 각 급 인민정부는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 취업을 위한 혜택을 부여하고, 필요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귀국동포(归侨) 학생, 귀국동포(归侨) 자녀와 중국내 거주하는 화교 자녀 진

학에 대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혜택을 부여한다.

제15조 국가는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해외동포로부터 송금받은 소득을 보호한다.

제16조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은 해외 지인의 상속과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외 유산을 상속받은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은 해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17조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과 해외 지인과의 왕래 및 통화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이 출국을 신청하면, 관련 주관기관은 규정 기한내에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해외 직계가족의 위독, 사망 또는 기한내 해외 재산 처리 등 특수한 상황으로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이 급히 출국해야 할 경우, 관련 주관 기관은 신청인이 제공한 유효 증명서에 따라 수속을 우선 처리한다.

제19조 국가는 지인 방문을 위한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출국 권리를 보장한다.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 직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인 방문을 위한 출국 대우를 누린다.

제20조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준 허가를 받아 출국하여 정착할 경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그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이직 휴양, 퇴직, 퇴임한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 직원이 출국 정착할 경우, 이직 휴양금, 퇴직금, 퇴임금과 양로금은 예정대로 지급한다.

제21조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이 자비출국 유학, 강연을 신청하거나 출장으로 인해 출국할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 기관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 조약 또는 국제관례에 따라, 국가는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정당한 해외 권익을 보호한다.

제23조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하였을 경우, 침해당한 자는 관련 주관 기관에 의법처리를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귀국화교연합회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24조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상급 주관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거나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25조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든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재산 손실 또는 기타 손실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26조 이 법의 제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귀국동포(归侨)를 안치하는 농장, 임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불법 점유할 경우, 관련 주관기관은 반납할 것을 명령해야 하고, 손실이 초래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제27조 이 법의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중국내 사유 주택을 불법 점거할 경우, 관련 주관 기관은 반납할 것을 명령해야 하고, 손실이 초래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제28조 이 법의 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 정착한 귀국동포(归侨), 동포가족(侨眷)의 이직 휴양금, 퇴직금, 퇴임금, 양로금을 발급 정지하거나 보류하거나 침해하거나 횡령할 경우, 관련 기업 또는 관련 주관 기관이 재지급을 명령해야 하고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29조 국무원은 이 법에 따라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법과 국무원의 실시방법에 따라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4] 중국 여권법 (2007. 1. 1. 시행, 주석령)

제1조 중국 여권의 신청, 발급, 관리의 규범화, 중국 국민의 중국 국경 출입 권익 보장, 대외 왕래 촉진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여권은 중국 국민의 국경 출입 과정 및 국외에서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증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여권을 위조, 변조, 양도, 고의 훼손 또는 불법 압류할 수 없다.

제3조 여권은 보통여권, 외교여권, 공무여권으로 분류한다. 여권은 외교부가 외교적 방법을 통해 외국 정부에 소개한다.

제4조 보통여권은 공안부 출입경관리기구 또는 공안부가 위탁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 중국 재외공관,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이 발급한다.

외교여권은 외교부가 발급한다.

공무여권은 외교부, 중국 재외공관,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설구시(设区的市)의 인민정부 외사기관이 발급한다.

제5조 국민이 외국 거주, 친지 방문, 학업, 취업, 여행, 비즈니스 활동 종사 등 비(非)공무적인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본인이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보통여권을 신청한다.

제6조 국민이 보통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거민신분증(居民身份证), 호구부, 최근 촬영한 사진(모자 미착용), 신청 사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공무원(国家工作人员)이 이 법 제5조 규정의 사유로 출경하기 위해 보통여권을 신청한 경우,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통여권을 발급해야 한다. 규정 미부합으로 여권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그 발급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이 법에 의거해 행정 복권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산간벽지(偏远地区), 교통이 불편한 지역 및 특수한 사유로 기한 내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여권발급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발급 기한을 30일로 연

장할 수 있다.

공민이 합리적인 긴급 사유로 여권의 긴급 발급을 요청할 경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7조 보통여권에 기재되는 사항은 여권 소지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여권 발급일, 유효기간, 발급지, 발급기관이다.

보통여권의 유효기간은 여권 소지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5년, 만 16세 이상인 경우 10년이다.

보통여권의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공안부가 규정한다.

제8조 외교관원, 영사관원 및 그 동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외교사절(外交信使)은 외교 여권을 사용한다.

중국 정부가 중국 재외공관, UN, UN 전문기구,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에 파견한 직원 및 그 동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공무여권을 사용한다.

본 조 제1항, 제2항 규정 외의 공민이 공무 소속기관(工作单位)이 이 법 제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기관(外交部门)에 집행을 위해 출국할 경우, 그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외교기관은 그 필요에 따라 외교여권 또는 공무여권을 발급한다.

제9조 외교여권, 공무여권의 기재 사항은 여권 소지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여권 발급일, 유효기간, 발급기관이다.

외교여권, 공무여권의 발급 범위, 발급 방법, 유효기간 및 공무여권의 구체적인 유형은 외교부가 규정한다.

제10조 소지한 여권의 기재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여권 소지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변경 주석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여권 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여권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여권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는 경우
- (2) 여권 비자란이 부족한 경우
- (3) 여권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5) 기타 여권 갱신 또는 재발급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권 소지자가 보통여권의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국내에서는 본인이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직접 신청한다. 국외에서는 본인이 중국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기관에 신청한다. 국외에 거주하는 공민이 귀국 후 보통여권의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시 체류지(暫住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한다.

외교여권, 공무여권의 갱신 또는 재발급은 외교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여권은 일반 판독(視讀)과 기계 판독(機讀) 두 가지 기능을 갖춘다.

여권의 위조 방지 성능은 국제기술표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여권 발급기관 및 그 직원은 여권 제작, 발급으로 인해 알게 된 공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保密)해야 한다.

제13조 신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 발급기관은 여권 발급을 하지 않는다.

(1) 중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2)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3) 신청 시 허위 조작을 한 경우

(4) 복역 중인 경우

(5) 미종결 된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경 금지를 통지한 경우

(6)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인 경우

(7) 국무원 유관 주무부처가 출경 후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신청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 발급기관은 그 형벌 집행 완료 또는 송환되어 귀국한 날로부터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다.

- (1) 국(변)경 관리를 방해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2) 불법 출경, 불법 거류, 불법 취업으로 송환 귀국된 경우

제15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행정검찰기관은 사건 처리에 필요할 경우, 법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여권을 압수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가 여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관 이 여권 발급기관에 사건 당사자의 여권 말소(作廢)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여권 소지자가 중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여권 분실, 도난 등을 당한 경우, 여권 발급기관이 해당 여권을 말소한다.

위조, 변조, 편취 또는 발급기관이 말소한 여권은 무효하다.

제17조 허위로 날조하여 여권을 편취한 경우, 여권발급기관이 여권을 몰수 또는 말소한다. 공안기관은 2천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8조 타인에게 여권 위조, 변조를 해주거나 여권을 판매한 경우, 법에 의 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형사처벌이 불충분할 경우, 공안기관이 위법소득을 몰 수하고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처분 및 2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불법 여권 및 그 인쇄기기는 공안기관이 몰수한다.

제19조 위조 또는 변조한 여권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여권을 도용해 국(변) 경을 출입한 경우, 공안기관이 출입경관리의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불법 여권은 공안기관이 몰수한다.

제20조 여권 접수 시 여권 발급기관 직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 라 행정처분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 (1) 접수해야 함에도 접수하지 않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3) 국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 비용을 수취한 경우
- (4) 신청인으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 (5) 여권 제작, 발급으로 알게 된 국민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 (6)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사욕 충족(徇私舞弊) 등의 기타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 보통여권의 양식 규정과 제작·감독(監制)은 공안부가 한다. 외교여권과 공무원여권의 양식 규정과 제작·감독은 외교부가 한다.

제22조 여권 발급기관은 여권의 제작비(工本費), 주석비(加註費)를 수취할 수 있으며, 수취한 제작비와 주석비는 국고에 귀속된다.

여권 제작비와 주석비 기준은 국무원 가격행정기관이 국무원 재정기관과 함께 규정, 공포할 수 있다.

제23조 단기 출국한 공민이 국외에서 여권 분실, 절도를 당하거나 여권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중국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에 중국 여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24조 공민이 변경(邊境) 무역, 변경 관광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변경 여행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공안부가 위탁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중국 출입경 통행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공민이 선원 신분으로 출입경하거나 국외 선박에 종사할 경우, 교통부가 위탁한 해사관리기구에 중국 선원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26조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전 발급한 여권은 그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하다.

[15] 중국 국적법 (1980. 9. 10. 시행,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령)

제1조 중국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은 모두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각 민족인은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진다.

제3조 중국은 중국 공민의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4조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중국 국적을 가진다.

제5조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중국 국적을 가진다. 다만,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며 외국에서 거주(定居)하고, 본인이 출생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조 부모가 국적이 없거나 국적이 분명하지 아니하지만 중국에서 거주(定居)하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중국 국적을 가진다.

제7조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사가 있고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준 신청을 거쳐 국적취득(加入国籍)이 가능하다.

1. 중국인의 가까운 친족인 경우
2. 중국에 거주(定居)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중국국적취득(加入中国国籍)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으면 즉시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중국국적취득(加入中国国籍) 비준을 받은 자는 외국 국적을 더 이상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외국에 거주(定居)하는 중국 공민이 스스로 외국국적에 가입 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국국적이 자동으로 즉시 상실된다.

제10조 중국 공민이 아래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준 신청을 거쳐 중국 국적 이탈(退出中国国籍)이 가능하다.

1. 외국인의 가까운 친족인 경우

2. 외국에 거주(定居)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중국 국적 이탈(退出中国国籍) 신청에 대하여 비준을 받으면 중국 국적이 즉시 상실된다.

제12조 국가공무원(国家工作人员)과 현역 군인은 중국 국적을 이탈(退出中国国籍) 할 수 없다.

제13조 과거 중국 국적이었던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국적 회복 비준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외국 국적을 보유할 수 없다.

제14조 중국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은 제9조 규정 외에는 반드시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그 부모 혹은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국적 신청 접수 기관은 국내에서는 현지 시·현 공안국이며, 국외에서는 중국 외교 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이다.

제16조 중국국적 취득(加入), 이탈 및 회복 신청은 중국 공안부가 심사·비준한다. 비준을 거쳐 공안부가 증서를 발급한다.

제17조 이 법 공포 전 이미 취득한 중국 국적 또는 중국 국적 상실은 계속 유효하다.

제18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안내자료

[16] 중국 비자 개요 (2019. 11. 20.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게재 내용)

1. 기본 개념

비자는 어떤 한 국가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그 국가의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그 국가의 출입경 또는 경유를 신청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허가 증명서이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거해 모든 주권국가는 외국인의 자국 출입경 허가에 대한 자주 결정권이 있으며, 자국 법률에 의거해 비자 발급 및 거절, 기발급 비자 무효화 등을 한다.

중국 비자 기관은 법률과 관련 규정에 의거해 발급하는 비자의 유형, 유효수, 유효기간, 단기체류 기간 등을 결정하며, 당사자의 비자 발급 신청 거절 혹은 기발급 비자 무효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발급 기관

재외중국대사관, 영사관 혹은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재외 기관은 국외에서 외국인의 입경 비자 발급을 책임진다.

〈중국출경입경관리법〉 제20조 관련 규정의 유형에 속하는 외국인은 국무원이 비준한 도착 비자(口岸签证, Port Visa) 발급 업무를 하는 공항만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도착비자기관에 도착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비자 유형

중국 비자는 외교 비자, 예우(礼遇) 비자, 공무 비자, 일반 비자로 분류하며, 일반 비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자 유형	신청인 유형
C	승무, 항공, 항운 등 업무를 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승무원, 국제항행 선박의 선원 및 그 동반가족, 국제도로운송에 종사하는 차량 운전자
D	중국에서 영구거류하고자 하는 자

F	중국에서 교류, 방문, 시찰 등을 하려는 자
G	중국 국경을 통과하려는 자
J1	중국 상주 외국 언론기관의 상주 외국 기자(거류 기간: 180일 이상)
J2	중국에서 단기 취재를 하려는 외국 기자(단기체류 기간: 180일 이내)
L	중국에서 관광하려는 자
M	중국에서 비즈니스, 무역 활동을 하려는 자
Q1	중국인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친/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중국 영구거류 자격 소지 외국인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친/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가족 동반 목적으로 중국 거류(居留)를 신청하려는 자, 그리고 위탁 양육(寄養) 등의 목적으로 중국 거류(居留)를 신청하려는 자
Q2	중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의 친척 및 중국 영구거류 자격 소지 외국인의 친척을 단기(180일 이내) 방문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자
R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위층 인재 및 긴급 수요가 있는 부족한 전문 인재
S1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 내에 거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장기간 방문하려는 자, 기타 개인적 사무로 중국 내에서 거류할 필요가 있는 자(거류기간: 180일 이상)
S2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 내에서 단기체류, 거류 중인 외국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친/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을 단 기간 방문하려는 자, 기타 개인적 사무로 중국에 단기체류할 필요가 있는 자(단기체류 기간: 180일 이내)
X1	중국에서 장기간 학습하려는 자(거류 기간: 180일 이상)
X2	중국에서 단기간 학습하려는 자(단기체류 기간: 180일 이내)
Z	중국에서 근무하려는 자

4. 홍콩 · 마카오 특별행정구 비자

(1) 홍콩특별행정구 비자

1. 홍콩특별행정구는 일부 국가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소 클릭: <http://www.immd.gov.hk/sc/services/hk-visas/visit-transit/visit-visa-entry-permit.html#part2>).
2.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홍콩특별행정구를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 마카오특별행정구 비자

1.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일부 국가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비자 면제 혜택

을 제공한다(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소 클릭: http://www.dsi.gov.mo/documents/visa_free_macau_c.pdf).

2. 소수 특정 국가의 국민 외에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외국인은 원칙상 마카오행정특별구 공항만에서 도착비자(落地簽證, visa on arrival)을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 내륙,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동시에 방문하려는 외국인 이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내륙 비자, 홍콩특별행정구 비자,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비자를 각각 신청해야 한다.

5. 유효기간

비자의 입경 유효기간(enter before)이란 비자 소지자가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입경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발급기관의 별도 주석이 없는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베이징 시간 기준 유효기간 종료 당일 24시에 무효화된다. 입경 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비자의 소지자는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당일 포함)에 입경할 수 있다.

6. 입경 횟수

비자의 입경 횟수(entries)란 비자 소지자가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경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 입경 횟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입경 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비자의 효력은 모두 무효화된다. 이러한 경우, 중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무효 비자를 소지하고 중국을 방문할 경우 입경이 거절된다.

7. 단기체류 기간(停留期)

비자의 단기체류 기간(duration of each stay)이란 입경 시마다 비자 소지자에게 허가된 단기체류 기간을 말하며, 입경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8. 거류 수속

외국인이 D, J1, Q1, S1, X1 유형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경한 경우 입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류 예정지의 현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이 W 유형의 외교, 예우, 공무, 일반 비자를 소지하고 입경한 경우 입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교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 외사기관(外事部门)에 거류 수속을 해야 한다.

[17] 외국인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 신청 안내

(2020. 5. 13.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게재 내용)

1. 신청대상

외국인이 입국 후 외교 및 공무 이외의 사유로 중국내에 체류(停留居留) 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비자의 연장·갱신·재발급, 단기체류증의 발급·갱신·재발급, 거류증의 발급·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기관

외국인은 공안부가 위탁한 현(县)급 이상의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비자(단기체류증·거류증)를 신청해야 한다.

3. 신청방법

외국인이 비자 및 거류증의 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직접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다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회사(기관) 또는 개인, 신청인의 가족 및 전문서비스기관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1) 만 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및 질병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자
- (2) 1회 이상 입국한 자 중 중국내 체류 기록이 양호한 자
- (3) 초청 회사(기관) 또는 개인이 외국인의 중국내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련 비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이 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高层次) 인재와 긴급한 수요가 있는 희소(紧缺) 전문인력 및 상기 (1)항에 해당되는 자는 초청 기관 또는 개인, 신청인의 가족, 관련 전문 서비스기관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회사(기관) 신고(备案)

외국인을 초청한 회사(기관)는 현지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5. 신청 절차

외국인이 비자·단기체류증·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의 관련 문의에 응해야 한다.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이 초청회사(개인)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초청회사(개인)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신청인 또는 관련 회사(개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이 통지한 기한 내에 면답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비자·단기체류증·거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이 비자·단기체류증·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비자신청서>, 규격에 맞는 사진 1장과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접수증

심사 요건에 부합하는 비자·단기체류증·거류증 신청에 대하여,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이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발급하며, 접수증 유효기간 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비자와 단기체류증 신청에 대한 접수증 유효기간은 접수 일로부터 근무일 7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거류증 신청에 대한 접수증 유효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1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근거로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서의 일시적 반환(取回)을 요청할 수 있으나,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의 비자 발급 등에 영향이 없도록 접수증 유효기간 내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비자 연장시 필요한 증명 서류

외국인이 비자·단기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비자에 기재된 단기체류 기한 만료일 7일 전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C비자 소지자는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 주관 기관 또는 현지 민용 항공·철로·육로·항구 등 운수 회사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가능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2) F비자 소지자는 초청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회사의 경우 등록(注册)·등기(登记) 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연장 가능 체류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3) G비자 소지자는 초청회사(기관)의 증명서류와 향후 방문할 국가(지역)로의 출국일자, 항공기 등의 좌석번호가 명시된 항공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연장 가능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4) J2비자 소지자는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 외사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가능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5) L비자 소지자는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체여행일 경우 여행사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가능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6) M비자 소지자는 현지 초청회사(또는 개인)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회사의 경우 등록·등기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합작 파트너가 개인일 경우 발급한 초청서류에 서명하고, 현지 상주 호적증명서 또는 실제 거주지의 거주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장 가능 체류기간은 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7) Q2비자 소지자는 초청인이 발급한 초청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가능 체류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8) R비자 소지자는 초청·담당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회사의 경우 등록·등기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연장 가능 체류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9) S2비자 소지자는 가족방문 목적 신청인은 초청인이 발급한 초청장, 외국인 거류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목적 신청인은 개인사무 처리 또는 인도주의적 사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방문 목적 신청인에 대한 연장 가능 체류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타 목적 신청인의 연장 가능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10) X2비자 소지자는 중국내 교육 및 훈련기관이 발급한 재학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가능 체류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비자·단기체류증의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은 기존에 소지한 비자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8. 비자 변경(换发)시 필요한 증명서류

- (1) 외국인이 국가 규정에 따라 단기체류(停留)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입국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단체비자로 입국 후 객관적인 사유로 일반(普通) 비자로 변경하여 단기체류(停留)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F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초청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경 유효기간 1년 미만, 체류기간 180일 미만의 출국용(0次), 단수(1次), 더블(2次), 복수(多次)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국가가 정한 우수(高层次) 인재 및 투자자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입경 유효기간 5년 미만, 체류기간 180일 미만의 복수(多次)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2) J2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성(省)급 인민정부 외사 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체류기간 30일 미만의 출국용(0次)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3) M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초청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경 유효기간 1년 미만, 체류기간 180일 미만의 출국용(0次), 단수(1次), 더블(2次), 복수(多次)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4) Q2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초청인이 발급한 증명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경 유효기간 1년 미만, 체류기간 180일 미만의 출국용(0次), 단수(1次), 더블(2次), 복수(多次)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5) R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중국정부주관기관에서 인정한 외국 우수(高层次) 인재와 긴급 전문인력의 초청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서류, 초청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경 유효기간 5년 미만, 체류기간 180일 미만의 출국용(0次), 단수(1次), 더블(2次), 복수(多次)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6) S2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가족방문 목적 신청인은 초청인인 가족이 발급한 서류, 외국인 거류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목적 신청인은 인도주의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경 유효기간 3개월 미만, 체류기간 180일 미만의

출국용(0次), 단수(1次)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7) X2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중국 내 교육 및 훈련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합격통지서, 입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경 유효기간 1년 미만, 체류기간 180일 미만의 출국용(0次), 단수(1次), 더블(2次)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2) 외국인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용 가능 비자면 부족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최근 입국 시 소지한 여권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이 발급한 최근 입국 시 소지한 여권의 회수증명서를 제출하면, 기존 비자의 종류, 입국 유효기간, 단기체류 기간, 남은 입국 횟수와 동일한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3) 외국인이 입국 후에 동반자가 추가되는 경우, 최근 입국 시 사용한 여권과 동반자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조항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
- (4) 외국인이 단체비자로 입국한 후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 단기체류 해야 하는 경우, 여행사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본 조항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

비자종류 변경 시 단기체류 기간은 최근 입국일로부터 연속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9. 비자 재발급 시 필요한 증명서류

외국인이 입국 후 소지한 비자의 분실, 훼손, 도난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비자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신청인의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협조공문과 유효한 신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을 제출해야 한다.
- (2) 비자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여권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협조공문과 유효한 신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을 제출해야 한다.
- (3) 단체비자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현지 여행사의 증명서류와 단체 비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비자종류, 입국 유효기간, 단기체류 기간, 기존 비자의 남은 입국 횟수와 동일한 비자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0. 단기체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증명서류

- (1)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여 외교 및 공무 이외의 사유로 무비자 단기 체류 가능 기한을 초과하여 체류가 필요한 경우, 본 안내자료 7. 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상응하는 기한의 단기체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2) 외국인 선원 및 그의 동반 가족이 선박이 정박된 항구 소재 도시를 떠나야 하는 경우, 선원증(海員證) 또는 국제여행증, 선박대리회사의 보증서, 출발일자와 좌석이 기재된 항공권(기차표, 선박표) 또는 단기체류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체류기간 30일 미만의 단기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3) 중국 국적 이탈을 허가받은 자가 중국 내에 단기체류 해야 하는 경우, 중국의 국적이탈증서, 외국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 단기체류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단기체류 기간 180일 미만의 단기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4) 외국인이 거류(居留) 사유가 종료되었으나 인도주의 사유로 계속하여 단기체류(停留)해야 하는 경우, 거류증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체류기간 30일 미만의 단기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5) 중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영아가 계속하여 중국내에 단기체류 해야 하는 경우, 영아의 출생증명서, 여권, 부모의 여권을 제출해야 하며,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한 단기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6) 단기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단기체류증 유효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단기체류증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와 변경에 관한 요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7) 단기체류증을 분실, 훼손, 도난당한 외국인은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협조 공문과 유효한 신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단기체류증에 상응하는 기한의 단기체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1. 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증명서류

외국인이 비자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입국 후 거류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거류지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

청해야 한다.

외국인이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거류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현지 위생검역기관 또는 현(縣)급 이상의 위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각한 정신적 장애,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공위생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요구에 따라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취업 비자 : Z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외국 전문가국 등 주관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증과 취업 회사(기관)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다른 종류의 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중국 정부 관련 주관기관에서 확정된 외국 우수(高层次) 인재, 긴급 전문인력 및 투자자 등의 조건과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우수(高层次) 인재, 긴급 전문인력 및 투자자는 거류기간 5년 미만의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채용된 회사(기관)의 신용상태가 양호할 경우, 거류기간 2년 미만의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인원은 거류기간 1년 미만의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2) 유학 비자 : X1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 기간이 기재된 재학증명서와 채용 또는 입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다른 종류의 비자로 입국한 자는 주관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재학증명서에 기재된 재학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유학 종류의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거나 교외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동의를 얻어 학교와 실습 회사(기관)가 발급한 학업 및 취업 병행허가서 또는 교외 실습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거류증 각주(加注)를 신청할 수 있다.

- (3) 기자 비자 : J1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성(省)급의 인민정부 의사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기자증>을 제출해야 하며, 거류기한 1년 미만의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4) 동반 비자 : Q1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초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다른 비자를 소지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및 만 60세 이상의 입국자에 대한 거류증 발급 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 18세 미만자의 장기거류 기간 만료일은 만18세가 되는 날까지이다.
기타의 경우 거류증 발급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계 외국인(華人) 및 화교가 중국에서 입양한 만18세 미만의 외국인 자녀는 입양자가 호구 소재지 또는 주요 생활지 소재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데리로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외국 국적 부모의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모 쌍방 또는 한 쪽이 중국인일 경우 해외정착증명서 사본, 신청인 부모의 위임장(위탁양육 또는 후견인, 위탁양육 연한 등의 내용 명시), 입양자의 입양서(受托书), 입양자의 현지 거주지 호적 증명서 또는 실제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류기한 3년 미만의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류기한 만료일은 만18세가 되는 날까지이다.

(5) 개인사무 비자: S1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는 가족방문 목적의 경우 초청 인과의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관계 증명서류 및 초청인 거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초청인의 중국 거류기한과 동일한 기한의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목적의 경우 사적사유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류기간 1년 미만의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외 다른 비자를 소지한 입국자의 경우, 가족방문 목적의 경우 초청인과의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만18세 미만의 자녀)관계증명서류와 초청인 거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초청인의 중국 거류기한과 동일한 기한의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도주의 사유로 입국한 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거류기한 1년 미만의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국 내 부동산을 매입한 만 60세 이상의 중국계 외국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증명서 또는 공증을 받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재정능력(经济来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 내 의료구조 또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현지 현(縣)급 이상 또는 2급-급¹⁰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입원증명서 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거류증 연장 신청

외국인이 거류증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10 병원의 등급은 크게 1 등급, 2 등급, 3 등급으로 나누며, 그 중 2 등급은 갑, 을, 병으로 구분함

전에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사유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기간연장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류 기간을 연장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13. 거류증 변경 신청

외국인 거류증 상의 기재사항(성명, 거류사유,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내에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개인정보 및 거류사유 변경에 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거류증을 변경할 수 있다.

14. 거류증 재발급 신청

거류증을 분실, 훼손, 도난당한 외국인은 본인의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협조 공문 또는 훼손된 거류증과 유효한 신여권 또는 국제여행증을 제출하여 거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5. 출입국증명서(出入境証) 신청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명서를 분실, 훼손, 도난 또는 무효조치로 인해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의 협조 공문 또는 훼손, 무효화된 여권, 국제여행증 및 여권 대체가 가능한 임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30일 미만의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6. 용어 설명

- (1) 가족구성원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자녀의 배우자를 말한다.
- (2) 가족구성원 관계증명과 친족관계증명 : 가족구성원 관계증명은 국가주관기관이 발급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 기타 친족관계증명서 및 관련 공증서를 말한다. 친족관계증명은 주재국 재외공관이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등의 서류 변경 증명서 등을 말한다.
- (3) 외국 주관 기관 또는 공증 기관이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등의 서류 변경 증명서 등은 해당국 소재 중국 공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 (4) 신분증명 : 중국 내륙 주민신분증명은 현지 상주 호적 증명서 또는 실제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증명서와 주민신분증을 말한다. 화교신분증명은 중국여권과 해외 정착 증명서를 말한다. 홍콩·마카오 주민 신분증명은 홍콩·마카오주민 내륙통행증을 말한다. 대만 주민신분증명은 대만주민 대륙통행증을 말한다. 외국인 신분증명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말한다. 화교와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은 실제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상기 외국어 증명서류는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17. 심사기간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외국인의 비자와 단기체류증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근무일 7일 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거류증을 접수한 경우 근무일 15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에 급행으로 발급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상황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8. 심사 효력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외국인에 대해 출입경관리법 제21조, 31조 등 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의 비자 연장·갱신·재발급 불허, 외국인 단기체류증 및 거류증 발급 불허, 거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19. 주숙등기

외국인은 <중국 출입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공안 출입경관리기관은 외국인이 비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내 주숙등기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 수수료

외국인은 비자, 단기체류증, 거류증 신청 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8] 외국인 도착비자 신청 유의사항

(2019. 5. 14.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게재 내용)

1. 도착비자 신청 대상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하는 외국인, 초청을 받아 긴급 상용 업무·보수공사 종사 기타 긴급 사유로 주관부서의 도착비자 신청·발급 동의서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국가 규정에 따라 단체관광을 인솔하는 여행사는 공안부가 위탁한 도착비자 기관에 도착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도착비자 신청 경로

- (1) 개인이 도착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공항만에서 도착비자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광단체가 도착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초청 여행사가 도착비자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2) 초청기관(개인)은 외국인이 공항만에 도착하기 전에 외국인을 대신하여 현지 도착비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을 대신하여 타 지역 도착비자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현지 지급시 이상 출입경 관리기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3. 도착비자 신청시 필요한 증명서류

외국인이 도착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도착비자 기관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도착비자 기관이 초청기관(개인)에게 관련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도착비자 신청은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도착비자 신청서(口岸签证申请表)를 작성하고, 규격에 부합하는 본인 사진과 주관부서 또는 초청기관(개인)이 발급한 긴급 입경사유 관련 초청장, 증명서류 또는 여행사의 초청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초청기관(개인)이 외국인을 대신하여 도착비자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사본 및 긴급사무 처리 사유 관련 초청장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C비자 신청시, 현금 이상 인민정부 주관부서 또는 민항, 철도, 고속도로, 항공 등 운수회사가 발급한 긴급 입경사유를 소명하는 초청장을 제

출하여야 한다.

- (2) F비자 신청시, 주관부서가 발급한 도착비자 신청에 동의한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3) 단체L비자 신청시, 단체당 인원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비준을 받아 상응한 자격을 갖춘 여행사가 발급한 초청장, 인원 명단 및 관광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M비자 신청시, 수탁기관 또는 이미 도착비자 기관에 등록된 초청기관이 발급한 긴급 입경사유를 소명하는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초청기관의 경우에는 입경 후 종사 예정 활동에 관한 일정계획서, 긴급 입경사유를 소명하는 초청장 및 주책등기증명(注册登記证明)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Q2비자 신청시, 중국 공민 또는 중국 영주거류자격 소지 외국인이 작성한 가족관계 및 긴급 입경사유를 소명하는 초청장과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6) R비자 신청시, 규정에 따라 관련 인재 주관부서가 발급한 증명서류와 초청기관이 발급한 긴급 입경사유를 소명하는 초청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7) S2 비자 신청시, 친족방문자는 재중 거류 외국인이 작성한 가족관계 및 긴급 입경사유를 소명하는 초청장 및 초청인의 여권과 거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입경하여 기타 개인사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입경하여 처리해야 하는 긴급사무 또는 인도주의적 사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중국 내륙 거민 신분증명은 거민호구부 또는 거민신분증을 말한다. 화교신분증은 중국 여권 또는 국외 장기거주 증명을 말한다. 홍콩·마카오 신분증명은 홍콩·마카오주민 내륙통행증을 말한다. 대만주민의 신분증명은 대만주민 내륙통행증을 말한다. 외국인 신분증명은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말한다. 또한 화교,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은 실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4. 기타 주의사항

- (1) 도착비자기관이 초청기관(개인)의 대리신청을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초청기관(개인)은 도착비자기관이 발급한 외국인 도착비자 접수증을 받게 되며, 신청인은 공항만 도착 후 외국인 도착비자 접수증으로 도착비자 기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도착비자기관이 심사를 거쳐 규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경우, 개인에게 1회입국 유효기간 5일을 초과하지 않고 단기체류 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해당 종류의 단수 비자를 발급한다. 외국 관광단체에게는 유효기간 15일을 초과하지 않고 체류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체 관광비자를 발급한다. 출입경관리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 (3) 도착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로서, 개인은 도착비자 발급기관 소재 공항만을 통해 입경해야 하고, 관광단체는 모든 대외 개방 공항만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의 경우, 외국인은 도착비자기관의 방침에 따라 한정된 구역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한정된 공항만을 통해 출경해야 한다.
- (4)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샤먼(廈門) 도착비자기관은 단기체류 기한 3일 또는 5일의 특구(特區) 관광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특구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입경 후 단기체류 하는 지역은 입경 공항만 소재시의 행정구역을 이탈할 수 없다.
- (5) 외국인은 도착비자 신청시 국가가 규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도착비자기관에 비자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법령 원문

➤ 출입경 관련 법령

[1]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2013. 7. 1. 修正实施, 主席令)

目录

第一章 总则

第二章 中国公民出境入境

第三章 外国人入境出境

第一节 签证

第二节 入境出境

第四章 外国人停留居留

第一节 停留居留

第二节 永久居留

第五章 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边防检查

第六章 调查和遣返

第七章 法律责任

第八章 附则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规范出境入境管理，维护中华人民共和国的主权、安全和社会秩序，促进对外交往和对外开放，制定本法。

第二条 中国公民出境入境、外国人入境出境、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管理，以及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的边防检查，适用本法。

第三条 国家保护中国公民出境入境合法权益。

在中国境内的外国人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在中国境内的外国人应当遵守中国法律，不得危害中国国家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破坏社会公共秩序。

第四条 公安部、外交部按照各自职责负责有关出境入境事务的管理。

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以下称驻外签证机关）负责在境外签发外国人入境签证。出入境边防检查机关负责实施出境入境边防检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及其出入境管理机构负责外国人停留居留管理。

公安部、外交部可以在各自职责范围内委托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外事部门受理外国人入境、停留居留申请。

公安部、外交部在出境入境事务管理中，应当加强沟通配合，并与国务院有关部门密切合作，按照各自职责分工，依法行使职权，承担责任。

第五条 国家建立统一的出境入境管理信息平台，实现有关管理部门信息共享。

第六条 国家在对外开放的口岸设立出入境边防检查机关。

中国公民、外国人以及交通运输工具应当从对外开放的口岸出境入境，特殊情况下，可以从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批准的地点出境入境。出境入境人员和交通运输工具应当接受出境入境边防检查。

出入境边防检查机关负责对口岸限定区域实施管理。根据维护国家安全和出境入境管理秩序的需要，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对出境入境人员携带的物品实施边防检查。必要时，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对出

境入境交通运输工具载运的货物实施边防检查，但是应当通知海关。

第七条 经国务院批准，公安部、外交部根据出境入境管理的需要，可以对留存出境入境人员的指纹等人体生物识别信息作出规定。

外国政府对中国公民签发签证、出境入境管理有特别规定的，中国政府可以根据情况采取相应的对等措施。

第八条 履行出境入境管理职责的部门和机构应当切实采取措施，不断提升服务和管理水平，公正执法，便民高效，维护安全、便捷的出境入境秩序。

第二章 中国公民出境入境

第九条 中国公民出境入境，应当依法申请办理护照或者其他旅行证件。

中国公民前往其他国家或者地区，还需要取得前往国签证或者其他入境许可证明。但是，中国政府与其他国家政府签订互免签证协议或者公安部、外交部另有规定的除外。

中国公民以海员身份出境入境和在国外船舶上从事工作的，应当依法申请办理海员证。

第十条 中国公民往来内地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中国公民往来大陆与台湾地区，应当依法申请办理通行证件，并遵守本法有关规定。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一条 中国公民出境入境，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交验本人的护照或者其他旅行证件等出境入境证件，履行规定的手续，经查验准许，方可出境入境。

具备条件的口岸，出入境边防检查机关应当为中国公民出境入境提供专用通道等便利措施。

第十二条 中国公民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出境：

- (一) 未持有效出境入境证件或者拒绝、逃避接受边防检查的；
- (二) 被判处刑罚尚未执行完毕或者属于刑事案件被告人、犯罪嫌疑人的；

- (三) 有未了结的民事案件，人民法院决定不准出境的；
- (四) 因妨害国(边)境管理受到刑事处罚或者因非法出境、非法居留、非法就业被其他国家或者地区遣返，未满不准出境规定年限的；
- (五) 可能危害国家安全和利益，国务院有关主管部门决定不准出境的；
- (六) 法律、行政法规规定不准出境的其他情形。

第十三条 定居国外的中国公民要求回国定居的，应当在入境前向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提出申请，也可以由本人或者经由国内亲属向拟定居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侨务部门提出申请。

第十四条 定居国外的中国公民在中国境内办理金融、教育、医疗、交通、电信、社会保险、财产登记等事务需要提供身份证明的，可以凭本人的护照证明其身份。

第三章 外国人入境出境

第一节 签证

第十五条 外国人入境，应当向驻外签证机关申请办理签证，但是本法另有规定的除外。

第十六条 签证分为外交签证、礼遇签证、公务签证、普通签证。

对因外交、公务事由入境的外国人，签发外交、公务签证；对因身份特殊需要给予礼遇的外国人，签发礼遇签证。外交签证、礼遇签证、公务签证的签发范围和签发办法由外交部规定。

对因工作、学习、探亲、旅游、商务活动、人才引进等非外交、公务事由入境的外国人，签发相应类别的普通签证。普通签证的类别和签发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七条 签证的登记项目包括：签证种类，持有人姓名、性别、出生日期、入境次数、入境有效期、停留期限，签发日期、地点，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号码等。

第十八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应当向驻外签证机关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申请事由的相关材料，按照驻外签证机关的要求办理相关手续、接受面谈。

第十九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需要提供中国境内的单位或者个人出具的邀请函件的，申请人应当按照驻外签证机关的要求提供。出具邀请函件的单位或者个人应当对邀请内容的真实性负责。

第二十条 出于人道原因需要紧急入境，应邀入境从事紧急商务、工程抢险或者具有其他紧急入境需要并持有有关主管部门同意在口岸申办签证的证明材料的外国人，可以在国务院批准办理口岸签证业务的口岸，向公安部委托的口岸签证机关（以下简称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口岸签证。

旅行社按照国家有关规定组织入境旅游的，可以向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团体旅游签证。

外国人向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签证，应当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申请事由的相关材料，按照口岸签证机关的要求办理相关手续，并从申请签证的口岸入境。

口岸签证机关签发的签证一次入境有效，签证注明的停留期限不得超过三十日。

第二十一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签发签证：

- (一) 被处驱逐出境或者被决定遣送出境，未满不准入境规定年限的；
- (二) 患有严重精神障碍、传染性肺结核病或者有可能对公共卫生造成重大危害的其他传染病的；
- (三) 可能危害中国国家安全和利益、破坏社会公共秩序或者从事其他违法犯罪活动的；
- (四) 在申请签证过程中弄虚作假或者不能保障在中国境内期间所需费用的；
- (五) 不能提交签证机关要求提交的相关材料的；
- (六) 签证机关认为不宜签发签证的其他情形。

对不予签发签证的，签证机关可以不说理由。

第二十二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免办签证：

- (一) 根据中国政府与其他国家政府签订的互免签证协议，属于免办签证人员的；
- (二) 持有效的外国人居留证件的；
- (三) 持联程客票搭乘国际航行的航空器、船舶、列车从中国过境前往第三国或者地区，在中国境内停留不超过二十四小时且不离开口岸，或者在国务院批准的特定区域内停留不超过规定时限的；
- (四) 国务院规定的可以免办签证的其他情形。

第二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外国人需要临时入境的，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申请办理临时入境手续：

- (一) 外国船员及其随行家属登陆港口所在城市的；
- (二) 本法第二十二条第三项规定的人员需要离开口岸的；
- (三) 因不可抗力或者其他紧急原因需要临时入境的。

临时入境的期限不得超过十五日。

对申请办理临时入境手续的外国人，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要求外国人本人、载运其入境的交通运输工具的负责人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提供必要的保证措施。

第二节 入境出境

第二十四条 外国人入境，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交验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签证或者其他入境许可证明，履行规定的手续，经查验准许，方可入境。

第二十五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入境：

- (一) 未持有效出境入境证件或者拒绝、逃避接受边防检查的；
- (二) 具有本法第二十一条第一款第一项至第四项规定情形的；
- (三) 入境后可能从事与签证种类不符的活动的；
- (四) 法律、行政法规规定不准入境的其他情形。

对不准入境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不说明理由。

第二十六条 对未被准许入境的外国人，出入境边防检查机关应当责令其返回；对拒不返回的，强制其返回。外国人等待返回期间，不得离开限定的区域。

第二十七条 外国人出境，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交验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等出境入境证件，履行规定的手续，经查验准许，方可出境。

第二十八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出境：

- (一) 被判处罚尚未执行完毕或者属于刑事案件被告人、犯罪嫌疑人的，但是按照中国与外国签订的有关协议，移管被判刑人的除外；
- (二) 有未了结的民事案件，人民法院决定不准出境的；
- (三) 拖欠劳动者的劳动报酬，经国务院有关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不准出境的；
- (四) 法律、行政法规规定不准出境的其他情形。

第四章 外国人停留居留

第一节 停留居留

第二十九条 外国人所持签证注明的停留期限不超过一百八十日的，持证人凭签证并按照签证注明的停留期限在中国境内停留。

需要延长签证停留期限的，应当在签证注明的停留期限届满七日前向停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按照要求提交申请事由的相关材料。经审查，延期理由合理、充分的，准予延长停留期限；不予延长停留期限的，应当按期离境。

延长签证停留期限，累计不得超过签证原注明的停留期限。

第三十条 外国人所持签证注明入境后需要办理居留证件的，应当自入境之日起三十日内，向拟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外国人居留证件。

申请办理外国人居留证件，应当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

证件，以及申请事由的相关材料，并留存指纹等人体生物识别信息。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十五日内进行审查并作出审查决定，根据居留事由签发相应类别和期限的外国人居留证件。

外国人工作类居留证件的有效期最短为九十日，最长为五年；非工作类居留证件的有效期最短为一百八十日，最长为五年。

第三十一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签发外国人居留证件：

- (一) 所持签证类别属于不应办理外国人居留证件的；
- (二) 在申请过程中弄虚作假的；
- (三) 不能按照规定提供相关证明材料的；
- (四) 违反中国有关法律、行政法规，不适合在中国境内居留的；
- (五) 签发机关认为不宜签发外国人居留证件的其他情形。

符合国家规定的专门人才、投资者或者出于人道等原因确需由停留变更为居留的外国人，经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批准可以办理外国人居留证件。

第三十二条 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申请延长居留期限的，应当在居留证件有效期限届满三十日前向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提出申请，按照要求提交申请事由的相关材料。经审查，延期理由合理、充分的，准予延长居留期限；不予延长居留期限的，应当按期离境。

第三十三条 外国人居留证件的登记项目包括：持有人姓名、性别、出生日期、居留事由、居留期限，签发日期、地点，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号码等。

外国人居留证件登记事项发生变更的，持证件人应当自登记事项发生变更之日起十日内向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变更。

第三十四条 免办签证入境的外国人需要超过免签期限在中国境内停留的，外国船员及其随行家属在中国境内停留需要离开港口所在城市，或者具有需要办理外国人停留证件其他情形的，应当按照规定办理外国人停留证件。

外国人停留证件的有效期最长为一百八十日。

第三十五条 外国人入境后，所持的普通签证、停留居留证件损毁、遗失、被盗抢或者有符合国家规定的事由需要换发、补发的，应当按照规定向停留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提出申请。

第三十六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作出的不予办理普通签证延期、换发、补发，不予办理外国人停留居留证件、不予延长居留期限的决定为最终决定。

第三十七条 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不得从事与停留居留事由不相符的活动，并应当在规定的停留居留期限届满前离境。

第三十八条 年满十六周岁的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应当随身携带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或者外国人停留居留证件，接受公安机关的查验。

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应当在规定的时间内到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交验外国人居留证件。

第三十九条 外国人在中国境内旅馆住宿的，旅馆应当按照旅馆业治安管理的有关规定为其办理住宿登记，并向所在地公安机关报送外国人住宿登记信息。

外国人在旅馆以外的其他住所居住或者住宿的，应当在入住后二十四小时内由本人或者留宿人，向居住地的公安机关办理登记。

第四十条 在中国境内出生的外国婴儿，其父母或者代理人应当在婴儿出生六十日内，持该婴儿的出生证明到父母停留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为其办理停留或者居留登记。

外国人在中国境内死亡的，其家属、监护人或者代理人，应当按照规定，持该外国人的死亡证明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报，注销外国人停留居留证件。

第四十一条 外国人在中国境内工作，应当按照规定取得工作许可和工作类居留证件。任何单位和个人不得聘用未取得工作许可和工作类居留证件的外国人。

外国人在中国境内工作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四十二条 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主管部门、外国专家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经济社会发展需要和人力资源供求状况制定并定期调整外国人在中国境内工作指导目录。

国务院教育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外国留学生勤工助学管理制度，对外国留学生勤工助学的岗位范围和时限作出规定。

第四十三条 外国人有下列行为之一的，属于非法就业：

- (一) 未按照规定取得工作许可和工作类居留证件在中国境内工作的；
- (二) 超出工作许可限定范围在中国境内工作的；
- (三) 外国留学生违反勤工助学管理规定，超出规定的岗位范围或者时限在中国境内工作的。

第四十四条 根据维护国家安全、公共安全的需要，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可以限制外国人、外国机构在某些地区设立居住或者办公场所；对已经设立的，可以限期迁离。

未经批准，外国人不得进入限制外国人进入的区域。

第四十五条 聘用外国人工作或者招收外国留学生的单位，应当按照规定向所在地公安机关报告有关信息。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发现外国人有非法入境、非法居留、非法就业情形的，应当及时向所在地公安机关报告。

第四十六条 申请难民地位的外国人，在难民地位甄别期间，可以凭公安机关签发的临时身份证明在中国境内停留；被认定为难民的外国人，可以凭公安机关签发的难民身份证件在中国境内停留居留。

第二节 永久居留

第四十七条 对中国经济社会发展作出突出贡献或者符合其他在中国境内永久居留条件的外国人，经本人申请和公安部批准，取得永久居留资格。

外国人在中国境内永久居留的审批管理办法由公安部、外交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

第四十八条 取得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凭永久居留证件在中国境内居留和工作，凭本人的护照和永久居留证件出境入境。

第四十九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部决定取消其在中国境内永久居留资格：

- (一) 对中国国家安全和利益造成危害的；
- (二) 被处驱逐出境的；
- (三) 弄虚作假骗取在中国境内永久居留资格的；
- (四) 在中国境内居留未达到规定时限的；
- (五) 不适宜在中国境内永久居留的其他情形。

第五章 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边防检查

第五十条 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离开、抵达口岸时，应当接受边防检查。对交通运输工具的入境边防检查，在其最先抵达的口岸进行；对交通运输工具的出境边防检查，在其最后离开的口岸进行。特殊情况下，可以在有关主管机关指定的地点进行。

出境的交通运输工具自出境检查后至出境前，入境的交通运输工具自入境后至入境检查前，未经出入境边防检查机关按照规定程序许可，不得上下人员、装卸货物或者物品。

第五十一条 交通运输工具负责人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应当按照规定提前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报告入境、出境的交通运输工具抵达、离开口岸的时间和停留地点，如实申报员工、旅客、货物或者物品等信息。

第五十二条 交通运输工具负责人、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应当配合出境入境边防检查，发现违反本法规定行为的，应当立即报告并协助调查处理。

入境交通运输工具载运不准入境人员的，交通运输工具负责人应当负责载离。

第五十三条 出入境边防检查机关按照规定对处于下列情形之一的出

境入境交通运输工具进行监护：

- (一) 出境的交通运输工具在出境边防检查开始后至出境前、入境的交通运输工具在入境后至入境边防检查完成前；
- (二) 外国船舶在中国内河航行期间；
- (三) 有必要进行监护的其他情形。

第五十四条 因装卸物品、维修作业、参观访问等事由需要上下外国船舶的人员，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申请办理登轮证件。

中国船舶与外国船舶或者外国船舶之间需要搭靠作业的，应当由船长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单位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申请办理船舶搭靠手续。

第五十五条 外国船舶、航空器在中国境内应当按照规定的路线、航线行驶。

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不得驶入对外开放口岸以外地区。因不可预见的紧急情况或者不可抗力驶入的，应当立即向就近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或者当地公安机关报告，并接受监护和管理。

第五十六条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出境入境；已经驶离口岸的，可以责令返回：

- (一) 离开、抵达口岸时，未经查验准许擅自出境入境的；
- (二) 未经批准擅自改变出境入境口岸的；
- (三) 涉嫌载有不准出境入境人员，需要查验核实的；
- (四) 涉嫌载有危害国家安全、利益和社会公共秩序的物品，需要查验核实的；
- (五) 拒绝接受出入境边防检查机关管理的其他情形。

前款所列情形消失后，出入境边防检查机关对有关交通运输工具应当立即放行。

第五十七条 从事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业务代理的单位，应当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备案。从事业务代理的人员，由所在单位向出入境边防检查机关办理备案手续。

第六章 调查和遣返

第五十八条 本章规定的当场盘问、继续盘问、拘留审查、限制活动范围、遣送出境措施，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实施。

第五十九条 对涉嫌违反出境入境管理的人员，可以当场盘问；经当场盘问，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依法继续盘问：

- (一) 有非法出境入境嫌疑的；
- (二) 有协助他人非法出境入境嫌疑的；
- (三) 外国人有非法居留、非法就业嫌疑的；
- (四) 有危害国家安全和利益，破坏社会公共秩序或者从事其他违法犯罪活动嫌疑的。

当场盘问和继续盘问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规定的程序进行。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需要传唤涉嫌违反出境入境管理的人员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执行。

第六十条 外国人有本法第五十九条第一款规定情形之一的，经当场盘问或者继续盘问后仍不能排除嫌疑，需要作进一步调查的，可以拘留审查。

实施拘留审查，应当出示拘留审查决定书，并在二十四小时内进行询问。发现不应当拘留审查的，应当立即解除拘留审查。

拘留审查的期限不得超过三十日；案情复杂的，经上一级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批准可以延长至六十日。对国籍、身份不明的外国人，拘留审查期限自查清其国籍、身份之日起计算。

第六十一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适用拘留审查，可以限制其活动范围：

- (一) 患有严重疾病的；
- (二) 怀孕或者哺乳自己不满一周岁婴儿的；

(三) 未满十六周岁或者已满七十周岁的；

(四) 不宜适用拘留审查的其他情形。

被限制活动范围的外国人，应当按照要求接受审查，未经公安机关批准，不得离开限定的区域。限制活动范围的期限不得超过六十日。对国籍、身份不明的外国人，限制活动范围期限自查清其国籍、身份之日起计算。

第六十二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遣送出境：

(一) 被处限期出境，未在规定期限内离境的；

(二) 有不准入境情形的；

(三) 非法居留、非法就业的；

(四) 违反本法或者其他法律、行政法规需要遣送出境的。

其他境外人员有前款所列情形之一的，可以依法遣送出境。

被遣送出境的人员，自被遣送出境之日起一至五年内不准入境。

第六十三条 被拘留审查或者被决定遣送出境但不能立即执行的人员，应当羁押在拘留所或者遣返场所。

第六十四条 外国人对依照本法规定对其实施的继续盘问、拘留审查、限制活动范围、遣送出境措施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该行政复议决定为最终决定。

其他境外人员对依照本法规定对其实施的遣送出境措施不服，申请行政复议的，适用前款规定。

第六十五条 对依法决定不准出境或者不准入境的人员，决定机关应当按照规定及时通知出入境边防检查机关；不准出境、入境情形消失的，决定机关应当及时撤销不准出境、入境决定，并通知出入境边防检查机关。

第六十六条 根据维护国家安全和出境入境管理秩序的需要，必要时，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对出境入境的人员进行人身检查。人身检查应当由两名与受检查人同性别的边防检查人员进行。

第六十七条 签证、外国人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发生损毁、遗失、被盗抢或者签发后发现持证人不符合签发条件等情形的，由签发机关宣布该出境入境证件作废。

伪造、变造、骗取或者被证件签发机关宣布作废的出境入境证件无效。

公安机关可以对前款规定的或被他人冒用的出境入境证件予以注销或者收缴。

第六十八条 对用于组织、运送、协助他人非法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以及需要作为办案证据的物品，公安机关可以扣押。

对查获的违禁物品，涉及国家秘密的文件、资料以及用于实施违反出境入境管理活动的工具等，公安机关应当予以扣押，并依照相关法律、行政法规规定处理。

第六十九条 出境入境证件的真伪由签发机关、出入境边防检查机关或者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认定。

第七章 法律责任

第七十条 本章规定的行政处罚，除本章另有规定外，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决定；其中警告或者五千元以下罚款，可以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决定。

第七十一条 有下列行为之一的，处一千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可以并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

- (一) 持用伪造、变造、骗取的出境入境证件出境入境的；
- (二) 冒用他人出境入境证件出境入境的；
- (三) 逃避出境入境边防检查的；
- (四) 以其他方式非法出境入境的。

第七十二条 协助他人非法出境入境的，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

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单位有前款行为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七十三条 弄虚作假骗取签证、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的，处二千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单位有前款行为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七十四条 违反本法规定，为外国人出具邀请函件或者其他申请材料的，处五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责令其承担所邀请外国人的出境费用。

单位有前款行为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责令其承担所邀请外国人的出境费用，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七十五条 中国公民出境后非法前往其他国家或者地区被遣返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应当收缴其出境入境证件，出境入境证件签发机关自其被遣返之日起六个月至三年以内不予签发出境入境证件。

第七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给予警告，可以并处二千元以下罚款：

- (一) 外国人拒不接受公安机关查验其出境入境证件的；
- (二) 外国人拒不交验居留证件的；
- (三) 未按照规定办理外国人出生登记、死亡申报的；
- (四) 外国人居留证件登记事项发生变更，未按照规定办理变更的；
- (五) 在中国境内的外国人冒用他人出境入境证件的；
- (六) 未按照本法第三十九条第二款规定办理登记的。

旅馆未按照规定办理外国人住宿登记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未按照规定向公安机关报送外国

人住宿登记信息的，给予警告；情节严重的，处一千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

第七十七条 外国人未经批准，擅自进入限制外国人进入的区域，责令立即离开；情节严重的，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对外国人非法获取的文字记录、音像资料、电子数据和其他物品，予以收缴或者销毁，所用工具予以收缴。

外国人、外国机构违反本法规定，拒不执行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限期迁离决定的，给予警告并强制迁离；情节严重的，对有关责任人员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第七十八条 外国人非法居留的，给予警告；情节严重的，处每非法居留一日五百元，总额不超过一万元的罚款或者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因监护人或者其他负有监护责任的人未尽到监护义务，致使未满十六周岁的外国人非法居留的，对监护人或者其他负有监护责任的人给予警告，可以并处一千元以下罚款。

第七十九条 容留、藏匿非法入境、非法居留的外国人，协助非法入境、非法居留的外国人逃避检查，或者为非法居留的外国人违法提供出境入境证件的，处二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单位有前款行为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八十条 外国人非法就业的，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介绍外国人非法就业的，对个人处每非法介绍一人五千元，总额不超过五万元的罚款；对单位处每非法介绍一人五千元，总额不超过十万元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非法聘用外国人的，处每非法聘用一人一万元，总额不超过十万元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第八十一条 外国人从事与停留居留事由不相符的活动，或者有其他违反中国法律、法规规定，不适宜在中国境内继续停留居留情形的，可以处限期出境。

外国人违反本法规定，情节严重，尚不构成犯罪的，公安部可以处驱逐出境。公安部的处罚决定为最终决定。

被驱逐出境的外国人，自被驱逐出境之日起十年内不准入境。

第八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给予警告，可以并处二千元以下罚款：

- (一) 扰乱口岸限定区域管理秩序的；
- (二) 外国船员及其随行家属未办理临时入境手续登陆的；
- (三) 未办理登轮证件上下外国船舶的。

违反前款第一项规定，情节严重的，可以并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

第八十三条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对其负责人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 (一) 未经查验准许擅自出境入境或者未经批准擅自改变出境入境口岸的；
- (二) 未按照规定如实申报员工、旅客、货物或者物品等信息，或者拒绝协助出境入境边防检查的；
- (三) 违反出境入境边防检查规定上下人员、装卸货物或者物品的。

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载运不准出境入境人员出境入境的，处每载运一人五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交通运输工具负责人证明其已经采取合理预防措施的，可以减轻或者免于处罚。

第八十四条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对其负责人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罚款：

- (一) 中国或者外国船舶未经批准擅自搭靠外国船舶的；
- (二) 外国船舶、航空器在中国境内未按照规定的路线、航线行驶的；

(三) 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违反规定驶入对外开放口岸以外地区的。

第八十五条 履行出境入境管理职责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

- (一) 违反法律、行政法规，为不符合规定条件的外国人签发签证、外国人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的；
- (二) 违反法律、行政法规，审核验放不符合规定条件的人员或者交通运输工具出境入境的；
- (三) 泄露在出境入境管理工作中知悉的个人信息，侵害当事人合法权益的；
- (四) 不按照规定将依法收取的费用、收缴的罚款及没收的违法所得、非法财物上缴国库的；
- (五) 私分、侵占、挪用罚没、扣押的款物或者收取的费用的；
- (六) 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不依法履行法定职责的其他行为。

第八十六条 对违反出境入境管理行为处五百元以下罚款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可以当场作出处罚决定。

第八十七条 对违反出境入境管理行为处罚款的，被处罚人应当自收到处罚决定书之日起十五日内，到指定的银行缴纳罚款。被处罚人在所在地没有固定住所，不当场收缴罚款事后难以执行或者在口岸向指定银行缴纳罚款确有困难的，可以当场收缴。

第八十八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章 附则

第八十九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出境，是指由中国内地前往其他国家或者地区，由中国内地前往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由中国大陆前往台湾地区。

入境，是指由其他国家或者地区进入中国内地，由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进入中国内地，由台湾地区进入中国大陆。

外国人，是指不具有中国国籍的人。

第九十条 经国务院批准，同毗邻国家接壤的省、自治区可以根据中国与有关国家签订的边界管理协定制定地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对两国边境接壤地区的居民往来作出规定。

第九十一条 外国驻中国的外交代表机构、领事机构成员以及享有特权和豁免的其他外国人，其入境出境及停留居留管理，其他法律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九十二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外国人停留居留证件等出境入境证件或者申请办理证件延期、变更的，应当按照规定缴纳签证费、证件费。

第九十三条 本法自2013年7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和《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同时废止。

[2]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2013. 9. 1. 修正实施, 国务院令)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规范签证的签发和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服务和管理, 根据《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以下简称出境入境管理法)制定本条例。

第二条 国家建立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协调机制, 加强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的统筹、协调与配合。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需要建立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协调机制, 加强信息交流与协调配合, 做好本行政区域的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工作的。

第三条 公安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外国人入境出境服务和管理信息平台, 实现有关信息的共享。

第四条 在签证签发管理和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管理工作中, 外交部、公安部等国务院部门应当在部门门户网站、受理出境入境证件申请的地点等场所, 提供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律法规和其他需要外国人知悉的信息。

第二章 签证的类别和签发

第五条 外交签证、礼遇签证、公务签证的签发范围和签发办法由外交部规定。

第六条 普通签证分为以下类别, 并在签证上标明相应的汉语拼音字母:

- (一) C字签证, 发给执行乘务、航空、航运任务的国际列车乘务员、国际航空器机组人员、国际航行船舶的船员及船员随行家属和从事国际道路运输的汽车驾驶员。
- (二) D字签证, 发给入境永久居留的人员。

- (三) F字签证, 发给入境从事交流、访问、考察等活动的人员。
- (四) G字签证, 发给经中国过境的人员。
- (五) J1字签证, 发给外国常驻中国新闻机构的外国常驻记者; J2字签证, 发给入境进行短期采访报道的外国记者。
- (六) L字签证, 发给入境旅游的人员; 以团体形式入境旅游的, 可以签发团体L字签证。
- (七) M字签证, 发给入境进行商业贸易活动的人员。
- (八) Q1字签证, 发给因家庭团聚申请入境居留的中国公民的家庭成员和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家庭成员, 以及因寄养等原因申请入境居留的人员; Q2字签证, 发给申请入境短期探亲的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的亲属和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亲属。
- (九) R字签证, 发给国家需要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
- (十) S1字签证, 发给申请入境长期探亲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的配偶、父母、未满18周岁的子女、配偶的父母, 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人员; S2字签证, 发给申请入境短期探亲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外国人的家庭成员, 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停留的人员。
- (十一) X1字签证, 发给申请在中国境内长期学习的人员; X2字签证, 发给申请在中国境内短期学习的人员。
- (十二) Z字签证, 发给申请在中国境内工作的人员。

第七条 外国人申请办理签证, 应当填写申请表, 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

- (一) 申请C字签证, 应当提交外国运输公司出具的担保函件或者中国境内有关单位出具的邀请函件。
- (二) 申请D字签证, 应当提交公安部签发的外国人永久居留身份确认表。

- (三) 申请F字签证,应当提交中国境内的邀请方出具的邀请函件。
 - (四) 申请G字签证,应当提交前往国家(地区)的已确定日期、座位的联程机(车、船)票。
 - (五) 申请J1字及J2字签证,应当按照中国有关外国常驻新闻机构和外国记者采访的规定履行审批手续并提交相应的申请材料。
 - (六) 申请L字签证,应当按照要求提交旅行计划行程安排等材料;以团体形式入境旅游的,还应当提交旅行社出具的邀请函件。
 - (七) 申请M字签证,应当按照要求提交中国境内商业贸易合作方出具的邀请函件。
 - (八) 申请Q1字签证,因家庭团聚申请入境居留的,应当提交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具有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出具的邀请函件和家庭成员关系证明,因寄养等原因申请入境的,应当提交委托书等证明材料;申请Q2字签证,应当提交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具有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出具的邀请函件等证明材料。
 - (九) 申请R字签证,应当符合中国政府有关主管部门确定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的引进条件和要求,并按照规定提交相应的证明材料。
 - (十) 申请S1字及S2字签证,应当按照要求提交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外国人出具的邀请函件、家庭成员关系证明,或者入境处理私人事务所需的证明材料。
 - (十一) 申请X1字签证应当按照规定提交招收单位出具的录取通知书和主管部门出具的证明材料;申请X2字签证,应当按照规定提交招收单位出具的录取通知书等证明材料。
 - (十二) 申请Z字签证,应当按照规定提交工作许可等证明材料。
- 签证机关可以根据具体情况要求外国人提交其他申请材料。

第八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按照驻外签证机关要求接受面谈:

- (一) 申请入境居留的;

- (二) 个人身份信息、入境事由需要进一步核实的；
- (三) 曾有不准入境、被限期出境记录的；
- (四) 有必要进行面谈的其他情形。

驻外签证机关签发签证需要向中国境内有关部门、单位核实有关信息的，中国境内有关部门、单位应当予以配合。

第九条 签证机关经审查认为符合签发条件的，签发相应类别签证。对入境后需要办理居留证件的，签证机关应当在签证上注明入境后办理居留证件的时限。

第三章 停留居留管理

第十条 外国人持签证入境后，按照国家规定可以变更停留事由、给予入境便利的，或者因使用新护照、持团体签证入境后由于客观原因需要分团停留的，可以向停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换发签证。

第十一条 在中国境内的外国人所持签证遗失、损毁、被盗抢的，应当及时向停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补发签证。

第十二条 外国人申请签证的延期、换发、补发和申请办理停留证件，应当填写申请表，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

第十三条 外国人申请签证延期、换发、补发和申请办理停留证件符合受理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出具有效期不超过7日的受理回执，并在受理回执有效期内作出是否签发的决定。

外国人申请签证延期、换发、补发和申请办理停留证件的手续或者材料不符合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履行的手续和补正的申请材料。

申请人所持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因办理证件被收存期间，可以凭受理回执在中国境内合法停留。

第十四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作出的延长签证停留期限决定，仅对本次入境有效，不影响签证的入境次数和入境有效期，并且累计延长的停留期限不得超过原签证注明的停留期限。

签证停留期限延长后，外国人应当按照原签证规定的事由和延长的期限停留。

第十五条 居留证件分为以下种类：

- (一) 工作类居留证件，发给在中国境内工作的人员；
- (二) 学习类居留证件，发给在中国境内长期学习的人员；
- (三) 记者类居留证件，发给外国常驻中国新闻机构的外国常驻记者；
- (四) 团聚类居留证件，发给因家庭团聚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中国公民的家庭成员和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家庭成员，以及因寄养等原因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人员；
- (五) 私人事务类居留证件，发给入境长期探亲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的配偶、父母、未满18周岁的子女、配偶的父母，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人员。

第十六条 外国人申请办理外国人居留证件，应当提交本人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本人到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办理相关手续，并留存指纹等人体生物识别信息。

- (一) 工作类居留证件，应当提交工作许可等证明材料；属于国家需要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的，应当按照规定提交有关证明材料。
- (二) 学习类居留证件，应当按照规定提交招收单位出具的注明学习期限的函件等证明材料。
- (三) 记者类居留证件，应当提交有关主管部门出具的函件和核发的记者证。

(四) 团聚类居留证件，因家庭团聚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应当提交家庭成员关系证明和与申请事由相关的证明材料；因寄养等原因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应当提交委托书等证明材料。

(五) 私人事务类居留证件，长期探亲的，应当按照要求提交亲属关系证明、被探望人的居留证件等证明材料；入境处理私人事务的，应当提交因处理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相关证明材料。

外国人申请有效期1年以上的居留证件的，应当按照规定提交健康证明。健康证明自开具之日起6个月内有效。

第十七条 外国人申请办理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应当填写申请表，提交本人的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符合规定的照片和申请事由的相关材料。

第十八条 外国人申请居留证件或者申请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符合受理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出具有效期不超过15日的受理回执，并在受理回执有效期内作出是否签发的决定。

外国人申请居留证件或者申请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的手续或者材料不符合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一次性告知申请人需要履行的手续和补正的申请材料。

申请人所持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因办理证件被收存期间，可以凭受理回执在中国境内合法居留。

第十九条 外国人申请签证和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申请办理停留证件，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由邀请单位或者个人、申请人的亲属、有关专门服务机构代为申请：

- (一) 未满16周岁或者已满60周岁以及因疾病等原因行动不便的；
- (二) 非首次入境且在中国境内停留居留记录良好的；
- (三) 邀请单位或者个人对外国人在中国境内期间所需费用提供保证措施的。

外国人申请居留证件，属于国家需要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以及前款第一项规定情形的，可以由邀请单位或者个人、申请

人的亲属、有关专门服务机构代为申请。

第二十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可以通过面谈、电话询问、实地调查等方式核实申请事由的真实性，申请人以及出具邀请函件、证明材料的单位或者个人应当予以配合。

第二十一条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对有下列情形之一的外国人，不予批准签证和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不予签发停留证件：

- (一) 不能按照规定提供申请材料的；
- (二) 在申请过程中弄虚作假的；
- (三) 违反中国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不适合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
- (四) 不宜批准签证和居留证件的延期、换发、补发或者签发停留证件的其他情形。

第二十二条 持学习类居留证件的外国人需要在校外勤工助学或者实习的，应当经所在学校同意后，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居留证件加注勤工助学或者实习地点、期限等信息。

持学习类居留证件的外国人所持居留证件未加注前款规定信息的，不得在校外勤工助学或者实习。

第二十三条 在中国境内的外国人因证件遗失、损毁、被盗窃等原因未持有效护照或者国际旅行证件，无法在本国驻中国有关机构补办的，可以向停留居留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出境手续。

第二十四条 所持出境入境证件注明停留区域的外国人、出入境边防检查机关批准临时入境且限定停留区域的外国人，应当在限定的区域内停留。

第二十五条 外国人在中国境内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非法居留：

- (一) 超过签证、停留居留证件规定的停留居留期限停留居留的；
- (二) 免办签证入境的外国人超过免签期限停留且未办理停留居留证件的；

- (三) 外国人超出限定的停留居留区域活动的；
- (四) 其他非法居留的情形。

第二十六条 聘用外国人工作或者招收外国留学生的单位，发现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及时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报告：

- (一) 聘用的外国人离职或者变更工作地域的；
- (二) 招收的外国留学生毕业、结业、肄业、退学，离开原招收单位的；
- (三) 聘用的外国人、招收的外国留学生违反出境入境管理规定的；
- (四) 聘用的外国人、招收的外国留学生出现死亡、失踪等情形的。

第二十七条 金融、教育、医疗、电信等单位在办理业务时需要核实外国人身份信息的，可以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核实。

第二十八条 外国人因外交、公务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证件的签发管理，按照外交部的规定执行。

第四章 调查和遣返

第二十九条 公安机关根据实际需要可以设置遣返场所。

依照出境入境管理法第六十条的规定对外国人实施拘留审查的，应当在24小时内将被拘留审查的外国人送到拘留所或者遣返场所。

由于天气、当事人健康状况等原因无法立即执行遣送出境、驱逐出境的，应当凭相关法律文书将外国人羁押在拘留所或者遣返场所。

第三十条 依照出境入境管理法第六十一条的规定，对外国人限制活动范围的，应当出具限制活动范围决定书。被限制活动范围的外国人，应当在指定的时间到公安机关报到；未经决定机关批准，不得变更生活居所或者离开限定的区域。

第三十一条 依照出境入境管理法第六十二条的规定，对外国人实施遣送出境的，作出遣送出境决定的机关应当依法确定被遣送出境的外国

人不准入境的具体期限。

第三十二条 外国人被遣送出境所需的费用由本人承担。本人无力承担的，属于非法就业的，由非法聘用的单位、个人承担；属于其他情形的，由对外国人在中国境内停留居留提供保证措施的单位或者个人承担。

遣送外国人出境，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出入境边防检查机关实施。

第三十三条 外国人被决定限期出境的，作出决定的机关应当在注销或者收缴其原出境入境证件后，为其补办停留手续并限定出境的期限。限定出境期限最长不得超过15日。

第三十四条 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其所持签证、停留居留证件由签发机关宣布作废：

- (一) 签证、停留居留证件损毁、遗失、被盗抢的；
- (二) 被决定限期出境、遣送出境、驱逐出境，其所持签证、停留居留证件未被收缴或者注销的；
- (三) 原居留事由变更，未在规定期限内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报，经公安机关公告后仍未申报的；
- (四) 有出境入境管理法第二十一条、第三十一条规定的不予签发签证、居留证件情形的。

签发机关对签证、停留居留证件依法宣布作废的，可以当场宣布作废或者公告宣布作废。

第三十五条 外国人所持签证、停留居留证件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注销或者收缴：

- (一) 被签发机关宣布作废或者被他人冒用的；
 - (二) 通过伪造、变造、骗取或者其他方式非法获取的；
 - (三) 持有人被决定限期出境、遣送出境、驱逐出境的。
- 作出注销或者收缴决定的机关应当及时通知签发机关。

第五章 附则

第三十六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 (一) 签证的入境次数，是指持证人在签证入境有效期内可以入境的次数。
- (二) 签证的入境有效期，是指持证人所持签证入境的有效时间范围。非经签发机关注明，签证自签发之日起生效，于有效期满当日北京时间24时失效。
- (三) 签证的停留期限，是指持证入每次入境后被准许停留的时限，自入境次日开始计算。
- (四) 短期，是指在中国境内停留不超过180日（含180日）。
- (五) 长期、常驻，是指在中国境内居留超过180日。

本条例规定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审批期限和受理回执有效期以工作日计算，不含法定节假日。

第三十七条 经外交部批准，驻外签证机关可以委托当地有关机构承办外国人签证申请的接件、录入、咨询等服务性事务。

第三十八条 签证的式样由外交部会同公安部规定。停留居留证件的式样由公安部规定。

第三十九条 本条例自2013年9月1日起施行。1986年12月3日国务院批准，1986年12月27日公安部、外交部公布，1994年7月13日、2010年4月24日国务院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同时废止。

[3]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1995.9.1. 实施, 国务院令)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维护中华人民共和国的主权、安全和社会秩序, 便利出境、入境的人员和交通运输工具的通行, 制定本条例。

第二条 出境、入境边防检查工作由公安部主管。

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在对外开放的港口、航空港、车站和边境通道等口岸 设立出境入境边防检查站(以下简称边防检查站)。

第四条 边防检查站为维护国家主权、安全和社会秩序, 履行下列职责:

- (一) 对出境、入境的人员及其行李物品、交通运输工具及其载运的货物实施边防检查;
- (二) 按照国家有关规定对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进行监护;
- (三) 对口岸的限定区域进行警戒, 维护出境、入境秩序;
- (四) 执行主管机关赋予的和其他法律、行政法规规定的任务。

第五条 出境、入境的人员和交通运输工具, 必须经对外开放的口岸或者主管机关特许的地点通行, 接受边防检查、监护和管理。出境、入境的人员, 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行政法规。

第六条 边防检查人员必须依法执行公务。任何组织和个人不得妨碍边防检查人员依法执行公务。

第二章 人员的检查和管理

第七条 出境、入境的人员必须按照规定填写出境、入境登记卡, 向边防检查站交验本人的有效护照或者其他出境、入境证件(以下简称出境、入境证件), 经查 验核准后, 方可出境、入境。

第八条 出境、入境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 边防检查站有权阻止其出境、入境:

- (一) 未持出境、入境证件的；
- (二) 持有无效出境、入境证件的；
- (三) 持用他人出境、入境证件的；
- (四) 持用伪造或者涂改的出境、入境证件的；
- (五) 拒绝接受边防检查的；
- (六) 未在限定口岸通行的；
- (七) 国务院公安部门、国家安全部门通知不准出境、入境的；
- (八) 法律、行政法规规定不准出境、入境的。出境、入境的人员有前款第(三)项、第(四)项或者中国公民有前款第(七)项、第(八)项所列情形之一的，边防检查站可以扣留或者收缴其出境、入境证件。

第九条 对交通运输工具的随行服务员工出境、入境的边防检查、管理，适用本条例的规定。但是，中华人民共和国与有关国家或者地区订有协议的，按照协议办理。

第十条 抵达中华人民共和国口岸的船舶的外国籍船员及其随行家属和香港、澳门、台湾船员及其随行家属，要求在港口城市登陆、住宿的，应当由船长或者其代理人向边防检查站申请办理登陆、住宿手续。经批准登陆、住宿的船员及其随行家属，必须按照规定的时间返回船舶。登陆后有违法行为，尚未构成犯罪的，责令立即返回船舶，并不得再次登陆。从事国际航行船舶上的中国船员，凭本人的出境、入境证件登陆、住宿。

第十一条 申请登陆的人员有本条例第八条所列情形之一的，边防检查站有权拒绝其登陆。

第十二条 上下外国船舶的人员，必须向边防检查人员交验出境、入境证件或者其他规定的证件，经许可后，方可上船、下船。口岸检查、检验单位的人员需要登船执行公务的，应当着制服并出示证件。

第十三条 中华人民共和国与毗邻国家(地区)接壤地区的双方公务人员、边境居民临时出境、入境的边防检查，双方订有协议的，按照协议执行；没有协议的，适用本条例的规定。毗邻国家的边境居民按照协议

临时入境的，限于在协议规定范围内活动；需要到协议规定范围以外活动的，应当事先办理入境手续。

第十四条 边防检查站认为必要时，可以对出境、入境的人员进行人身检查。人身检查应当由两名与受检查人同性别的边防检查人员进行。

第十五条 出境、入境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边防检查站有权限制其活动范围，进行调查或者移送有关机关处理：

- (一) 有持用他人出境、入境证件嫌疑的；
- (二) 有持用伪造或者涂改的出境、入境证件嫌疑的；
- (三) 国务院公安部门、国家安全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通知有犯罪嫌疑的；
- (四) 有危害国家安全、利益和社会秩序嫌疑的。

第三章 交通运输工具的检查 and 监护

第十六条 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离、抵口岸时，必须接受边防检查。对交通运输工具的入境检查，在最先抵达的口岸进行；出境检查，在最后离开的口岸进行。在特殊情况下，经主管机关批准，对交通运输工具的入境、出境检查，也可以在特许的地点进行。

第十七条 交通运输工具的负责人或者有关交通运输部门，应当事先将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火车离、抵口岸的时间、停留地点和载运人员、货物情况，向有关的边防检查站报告。交通运输工具抵达口岸时，船长、机长或者其代理人必须向边防检查站申报员工和旅客的名单；列车长及其他交通运输工具的负责人必须申报员工和旅客的人数。

第十八条 对交通运输工具实施边防检查时，其负责人或者代理人应当到场协助边防检查人员进行检查。

第十九条 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在中国境内必须按照规定的路线、航线行驶。外国船舶未经许可不得在非对外开放的港口停靠。出境的交通运输工具自出境检查后到出境前，入境的交通运输工具自入境后到入境检查前，未经边防检查站许可，不得上下人员、装卸物品。

第二十条 中国船舶需要搭靠外国船舶的，应当由船长或者其代理人向边防检查站申请办理搭靠手续；未办理手续的，不得擅自搭靠。

第二十一条 边防检查站对处于下列情形之一的出境、入境交通运输工具，有权进行监护：

- (一) 离、抵口岸的火车、外国船舶和中国客船在出境检查后到出境前、入境后到入境检查前和检查期间；
- (二) 火车及其他机动车辆在国(边)界线距边防检查站较远的区域内行驶期间；
- (三) 外国船舶在中国内河航行期间；
- (四) 边防检查站认为有必要进行监护的其他情形。

第二十二条 对随交通运输工具执行监护职务的边防检查人员，交通运输工具的负责人应当提供必要的办公、生活条件。被监护的交通运输工具和上下该交通运输工具的人员应当服从监护人员的检查。

第二十三条 未实行监护措施的交通运输工具，其负责人应当自行管理，保证该交通运输工具和员工遵守本条例的规定。

第二十四条 发现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载运不准出境、入境人员，偷越国(边)境人员及未持有效出境、入境证件的人员的，交通运输工具负责人应当负责将其遣返，并承担由此发生的一切费用。

第二十五条 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边防检查站有权推迟或者阻止其出境、入境：

- (一) 离、抵口岸时，未经边防检查站同意，擅自出境、入境的；
- (二) 拒绝接受边防检查、监护的；
- (三) 被认为载有危害国家安全、利益和社会秩序的人员或者物品的；
- (四) 被认为载有非法出境、入境人员的；
- (五) 拒不执行边防检查站依法作出的处罚或者处理决定的；
- (六) 未经批准擅自改变出境、入境口岸的。边防检查站在前款所列情形消失后，对有关交通运输工具应当立即放行。

第二十六条 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由于不可预见的紧急情况或者不可抗拒的原因，驶入对外开放口岸以外地区的，必须立即向附近的边防检查站或者当地公安机关报告并接受检查和监护；在驶入原因消失后，必须立即按照通知的时间和路线离去。

第四章 行李物品、货物的检查

第二十七条 边防检查站根据维护国家安全和社会秩序的需要，可以对出境、入境人员携带的行李物品和交通运输工具载运的货物进行重点检查。

第二十八条 出境、入境的人员和交通运输工具不得携带、载运法律、行政法规规定的危害国家安全和社会秩序的违禁物品；携带、载运违禁物品的，边防检查站应当扣留违禁物品，对携带人、载运违禁物品的交通运输工具负责人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第二十九条 任何人不得非法携带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物品出境；非法携带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物品的，边防检查站应当予以收缴，对携带人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处理。

第三十条 出境、入境的人员携带或者托运枪支、弹药，必须遵守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边防检查站办理携带或者托运手续；未经许可，不得携带、托运枪支、弹药出境、入境。

第五章 处罚

第三十一条 对违反本条例规定的处罚，由边防检查站执行。

第三十二条 出境、入境的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处以5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或者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以拘留：

- (一) 未持出境、入境证件的；
- (二) 持用无效出境、入境证件的；
- (三) 持用他人出境、入境证件的；(四)持用伪造或者涂改的出境、入境证件的。

第三十三条 协助他人非法出境、入境，情节轻微尚不构成犯罪的，处以2000元以上10000元以下的罚款；有非法所得的，没收非法所得。

第三十四条 未经批准携带或者托运枪支、弹药出境、入境的，没收其枪支、弹药，并处以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第三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处以警告或者500元以下罚款：

- (一) 未经批准进入口岸的限定区域或者进入后不服从管理，扰乱口岸管理秩序的；
- (二) 污辱边防检查人员的；
- (三) 未经批准或者未按照规定登陆、住宿的。

第三十六条 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载运不准出境、入境人员，偷越国(边)境人员及未持有有效出境、入境证件的人员出境、入境的，对其负责人按每载运一人处以5000元以上10000元以下的罚款。

第三十七条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对其负责人处以10000元以上30000元以下的罚款：

- (一) 离、抵口岸时，未经边防检查站同意，擅自出境、入境的；
- (二) 未按照规定向边防检查站申报员工、旅客和货物情况的，或者拒绝协助检查的；
- (三) 交通运输工具在入境后到入境检查前、出境检查后到出境前，未经边防检查站许可，上下人员、装卸物品的。

第三十八条 交通运输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对其负责人给予警告并处5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 (一) 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在中国境内不按照规定的路线行驶的；
- (二) 外国船舶未经许可停靠在非对外开放港口的；
- (三) 中国船舶未经批准擅自搭靠外国籍船舶的。

第三十九条 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由于不可预见的紧急情况或者不可抗拒的原因，驶入对外开放口岸对外地区，没有正当理由不向附近边防检查站或者当地公安机关报告的；或者在驶入原因消失后，没

有按照通知的时间和路线离去的，对其负责人处以10000元以下的罚款。

第四十条 边防检查站执行罚没款处罚，应当向被处罚人出具收据。罚没款应当按照规定上缴国库。

第四十一条 出境、入境的人员违反本条例的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二条 被处罚人对边防检查站作出的处罚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处罚决定书之日起15日内，向边防检查站所在地的县级公安机关申请复议；有关县级公安机关应当自接到复议申请书之日起15日内作出复议决定；被处罚人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复议决定书之日起15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六章 附则

第四十三条 对享有外交特权与豁免权的外国人入境、出境的边防检查，法律有特殊规定的，从其规定。

第四十四条 外国对中华人民共和国公民和交通运输工具入境、过境、出境的检查和管理的特别规定的，边防检查站可以根据主管机关的决定采取相应的措施。

第四十五条 对往返香港、澳门、台湾的中华人民共和国公民和交通运输工具的边防检查，适用本条例的规定；法律、行政法规有专门规定的，从其规定。

第四十六条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出境、入境的人员”，是指一切离开、进入或者通过中华人民共和国国(边)境的中国籍、外国籍和无国籍人；“出境、入境的交通运输工具”，是指一切离开、进入或者通过中华人民共和国国(边)境的船舶、航空器、火车和机动车辆、非机动车辆以及驮畜；“员工”，是指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火车和机动车辆的负责人、驾驶员、服务员和其他工作人员。

第四十七条 本条例自1995年9月1日起施行。1952年7月29日中央人民政府政务院批准实施的《出入境治安检查暂行条例》和1965年4月30日国务院发布的《边防检查条例》同时废止。

[4] 关于强制外国人出境的执行办法的规定 (1992. 7. 31. 实施, 部令)

兹对违法犯罪的外国人强制出境的执行问题, 作如下规定:

一、适用范围

有下列情形之一需要强制出境的外国人, 均按本规定执行:

- (一) 依据我国刑法的规定, 由人民法院对犯罪的外国人判处独立适用或者附加适用驱逐出境刑罚的;
- (二) 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的规定, 由公安部对违法的外国人处以限期出境或者驱逐出境的;
- (三) 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以及其他有关法律的规定, 由公安机关决定遣送出境或者缩短停留期限、取消居留资格的外国人, 未在指定的期限内自动离境, 需强制出境的;
- (四) 我国政府已按照国际条约或《中华人民共和国外交特权与豁免条例》的规定, 对享有外交或领事特权和豁免的外国人宣布为不受欢迎的人或者不可接受并拒绝承认其外交或领事人员身份、责令限期出境的人, 无正当理由逾期不自动出境的。

二、执行机关

执行和监视强制外国人出境的工作, 由公安机关依据有关法律文书或者公文进行:

- (一) 对判处独立适用驱逐出境刑罚的外国人, 人民法院应当自该判决生效之日起15日内, 将该犯的刑事判决书、执行通知书的副本交会所在省省级公安机关, 由省级公安机关指定的公安机关执行。
- (二) 被判处徒刑的外国人, 其主刑执行期满后应执行驱逐出境附加刑的, 应在主刑刑期届满的1个月前, 由原羁押监狱的主管部门将该犯的原判决书、执行通知书副本或者复印本送交所在地

省级公安机关，由省级公安机关指定的公安机关执行。

- (三) 被公安部处以驱逐出境、限期出境的外国人，凭公安部出入境管理处罚裁决书，由当地的公安机关执行。
- (四) 被公安机关决定遣送出境、缩短停留期限或者取消居留资格的外国人，由当地公安机关凭决定书执行。

被缩短停留期限或者取消居留资格的外国人，也可以由接待单位安排出境，公安机关凭决定书负责监督。

- (五) 我国政府已按照国际条约或《中华人民共和国外交特权与豁免条例》的规定，对享有外交或领事特权和豁免的外国人宣布为不受欢迎的人或者不可接受并拒绝承认其外交或领事人员身份、责令限期出境的人，无正当理由逾期不自动出境的，凭外交部公文由公安部指定的公安机关负责执行或者监督执行。

三、执行前的准备工作

- (一) 对被强制出境的外国人持有的准予在我国居留的证件，一律收缴。对护照上的签证应当缩短有效期，加盖不准延期章，或者予以注销。

- (二) 凡被驱逐出境的外国人，均须列入不准入境者名单，具体办法按照公安部制订的《关于通报不准外籍人入境者名单的具体办法》（〔1989〕公境字87号）执行。对其他强制出境的外国人，需要列入不准入境者名单的，按规定报批。

凡被列入不准入境者名单的外国人，执行的公安机关应当在执行前向其宣布不准入境年限。

- (三) 对被强制出境的外国人，执行机关必须查验其本人的有效护照或者其他替代护照的身份证件，以及过境国家或者地区的有效签证。

不具备上述签证或者证件的，应事先同其本国驻华使、领馆联系，由使、领馆负责办理。在华有接待单位的，由接待单位同使、领馆联系。没有接待单位的，由公安部出入境管理局或者使、领馆所在地公安机关同使、领馆联系。在华无使、领馆或者使、领馆不予配合的，应层报

外交部或公安部，通过外交途径解决。

对与我毗邻国家的公民从边境口岸或者通道出境的，可以不办理对方的证件或者签证。

- (四) 被强制出境的外国人应当办妥离境的机票、车票、船票，费用由本人负担。本人负担不了的，也不属于按协议由我有关单位提供旅费的，须由其本国使、领馆负责解决（同使、领馆联系解决的办法，与前项相同）对使、领馆拒绝承担费用或者在华无使、领馆的，由我国政府承担。
- (五) 对已被决定强制出境的外国人，事由和日期是否需要通知其驻华使、领馆，可由当地外事部门请示外交部决定。
- (六) 对有可能引起外交交涉或者纷争的案件，主管机关应及时将有关案情和商定的对外表态的口径等通知当地外事部门。需对外报道的，须经公安部、外交部批准。

四、执行期限

负责具体执行的公安机关，应当按照交付机关确定的期限立即执行。如有特殊情况，需要延期执行的，报省、自治区、直辖市公安厅、局核准。

五、出境口岸

- (一) 对被强制出境的外国人，其出境的口岸，应事先确定，就近安排。
- (二) 如果被强制出境的外国人前往与我国接壤的国家，也可以安排从边境口岸出境。
- (三) 执行机关应当事先与出境口岸公安机关和边防检查站联系，通报被强制出境人员的情况，抵达口岸时间、交通工具班次，出境乘用的航班号、车次、时间，以及其他与协助执行有关的事项。出境口岸公安机关和边防检查站应当协助安排有关出境事项。
- (四) 出境时间应当尽可能安排在抵达口岸的当天。无法在当天出境的，口岸所在地公安机关应当协助采取必要的监护措施。

六、执行方式及有关事项

- (一) 被人民法院判决独立适用驱逐出境和被公安部处以驱逐出境的
外国人，由公安机关看守所武警和外事民警共同押送；对主刑
执行期满后再驱逐出境的外国人由原羁押监狱的管教干警、看
守武警和公安机关外事民警共同押送。对上述两类人员押送途
中确有必要时，可以使用手铐。对其他被责令出境的外国人，
需要押送的，由执行机关派外事民警押送；不需要押送的，可
以在离境 时派出外事民警，临场监督。
- (二) 执行人员的数量视具体情况而定，原则上应不少于2人。
- (三) 押送人员应提高警惕，保障安全，防止发生逃逸、行凶、自
杀、自伤等事故。
- (四) 边防检查站凭对外国人强制出境的执行通知书、决定书或者裁
决书以及被强制出境人的护照、证件安排放行。
- (五) 执行人员要监督被强制出境的外国人登上交通工具并离境后方
可离开。从边境通道出境的，要监督其离开我国境后方可离开。
- (六) 对被驱逐出境的外国人入出境交通工具等具体情况，应拍照，
有条件的也可录像存查。

七、经费

执行强制外国人出境所需的费用（包括押送人员食宿、交通费，以
及其本人无力承担费用而驻华使、领馆拒不承担或者在华没有使、领馆
的外国人在中国境内的食宿、交通费、临时看押场所的租赁费、国际旅
费等），应当按照现行财政体制，由办案地财政部门负责解决。

八、执行强制出境任务的人民警察和工作人员，要仪表庄重，严于律己， 讲究文明，遵守外事纪律。

今后有关强制外国人出境的执行工作，统一遵照本规定执行。

[5] 关于依法限制外国人和中国公民出境问题的若干规定

(1987. 3. 10. 实施, 部令)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第二十三条和《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第八条规定了对某些外国人和中国公民不准其出境, 现将贯彻执行中的若干问题规定如下:

- (一) 需要限制已入境的外国人出境或者限制中国公民出境的, 必须严格依照法律规定执行。在执行中应当注意: 凡能尽早处理的, 不要等到外国人或中国公民临出境时处理; 凡可以通过其他方式处理的, 不要采取扣留证件的办法限制出境; 凡能在内地处理的, 不要到出境口岸处理, 要把确需在口岸阻止出境的人员控制在极少数。
- (二) 限制外国人或中国公民出境的审批权限:
 1. 公安机关和国家安全机关认定的犯罪嫌疑人或有其他违反法律的行为尚未处理并需要追究法律责任的, 其限制出境的决定需经省、自治区、直辖市公安厅、局或国家安全厅、局批准。
 2. 人民法院或人民检察院认定的犯罪嫌疑人或有其他违反法律的行为尚未处理并需要追究法律责任的, 由人民法院或人民检察院决定限制出境并按有关规定执行, 同时通报同级公安机关。
 3. 国家安全机关对某些外国人或中国公民采取限制出境措施时, 要及时通报公安机关。
 4. 有未了结民事案件(包括经济纠纷案件)的, 由人民法院决定限制出境并执行, 同时通报公安机关。
 5. 对其他需要在边防口岸限制出境的人员, 可按1985年公安部、国家安全部《关于做好入出境查控工作的通知》(〔85〕公发24号文件)精神办理。
- (三) 人民法院、人民检察院、公安机关和国家安全机关在限制外国

人和中国公民出境时，可以分别采取以下办法：

1. 向当事人口头通知或书面通知，在其案件（或问题）了结之前，不得离境；
2. 根据案件性质及当事人的具体情况，分别采取监视居住或取保候审的办法，或令其提供财产担保或交付一定数量保证金后准予出境；
3. 扣留当事人护照或其他有效出入境证件。但应在护照或其他出入境证件有效期内处理了结，同时发给本人扣留证件的证明。人民法院、人民检察院或国家安全机关扣留当事人护照或其他有效出入境证件，如在出入境证件有效期内不能了结的，应当提前通知公安机关。

(四) 人民法院、人民检察院、国家安全机关及公安机关对某些不准出境的外国人和中国公民，需在边防检查站阻止出境的，应填写《口岸阻止人员出境通知书》（样式附后，自行印制）。在本省、自治区、直辖市口岸阻止出境的，应向本省、自治区、直辖市公安厅、局交控。在紧急情况下，如确有必要，也可先向边防检查站交控，然后按本通知的规定，补办交控手续。控制口岸超出本省、自治区、直辖市的，应通过有关省、自治区、直辖市公安厅、局办理交控手续。

▶ 비자 및 체류 관련 법령

[6] 外国人人才签证制度实施办法 (2017. 11. 28. 实施, 部令)

第一条 为明确外国人申请外国人才签证(即R字签证)标准条件,规范办理程序,加强外国人才签证和工作许可、工作居留的有机衔接,为外国人才来华创新创业提供便利,根据《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等制定本办法。

第二条 国家外国专家局、外交部、公安部按照职责分工,制定R字签证申请条件,指导做好R字签证签发、延期、换发、补发工作。

第三条 国家外国专家局、外交部、公安部应当加强统筹协调,在确认外国人才资质、签发R字签证、工作许可、工作类居留证件等服务管理工作中完善协作机制,实现信息资源共享。

第四条 R字签证发放对象为国家经济社会发展需要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人才,符合“高精尖缺”和市场需求导向的科学家、科技领军人才、国际企业家、专门人才和高技能人才等。

申请R字签证的外国人,应当符合《外国人来华工作分类标准(试行)》中外国高端人才(A类)标准条件。国家外国专家局会同外交部、公安部,根据经济社会发展需要和人才资源供求状况适时调整外国高端人才认定标准。

第五条 外国人在境外申请R字签证,由邀请单位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外国人工作管理部门(以下称省级人民政府外国人工作管理部门)提出申请,在线提交申请表、国内单位邀请函以及符合R字签证人才认定标准的相关证明材料。

对符合外国高端人才标准条件的,由省级人民政府外国人工作管理部门在5个工作日内在线向国内邀请单位出具《外国高端人才确认函》(见附件),并将《外国高端人才确认函》等信息交换至我国驻申请人所在国(地区)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国家外国专家局将前述信息交换至外交部、公安部。

国家外国专家局应当对省级人民政府外国人工作管理部门开展外国人才资质受理、审核、工作管理和服务保障等加强监督检查。

第六条 外国人向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申请办理R字签证，应提交以下材料：

- (一) 签证申请表；
- (二) 本人护照（有效期为6个月以上）以及符合规定的照片；
- (三) 《外国高端人才确认函》打印件；
- (四) 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要求的其他材料。

第七条 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为符合条件的R字签证申请人签发有效期为5至10年、多次入境的签证；为上述人员的配偶及未成年子女签发有效期相同、多次入境的相应种类签证。

第八条 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可为第七条所述人员加急办理签证申请，在2个工作日内签发签证。

第九条 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为第七条所述人员办理签证，免收签证费和急件费。

第十条 持R字签证在华工作的外国人，应当向用人单位所在地的地方人民政府外国人工作管理部门或其委托机构申请办理外国人来华工作许可。

持R字签证的外国人，可在线提交聘用合同或任职证明、体检证明、R字签证签注页、护照信息页申请外国人来华工作许可，全程在线申请外国人来华工作许可的延期、换发和补发，地方人民政府外国人工作管理部门应在3个工作日内进行审查并作出决定，同时将相关信息交换至同级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

第十一条 公安机关依法为来华外国人才提供签证、居留便利。

第十二条 国家外国专家局、外交部、公安部应当根据国家经济社会发展需要，依法推动管理创新，为外国人才来华提供更多便利，不断提升服务水平。

第十三条 本办法由国家外国专家局、外交部、公安部负责解释，自公布之日起施

[7]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2017. 3. 13. 修正实施, 部令)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加强外国人在中国就业的管理, 根据有关法律、法规的规定, 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外国人, 指依照《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规定不具有中国国籍的人员。本规定所称外国人在中国就业, 指没有取得定居权的外国人在中国境内依法从事社会劳动并获取劳动报酬的行为。

第三条 本规定适用于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和聘用外国人的用人单位。本规定不适用于外国驻华使、领馆和联合国驻华代表机构、其他国际组织中享有外交特权与豁免的人员。

第四条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及其授权的地市级劳动行政部门负责外国人在中国就业的管理。

第二章 就业许可

第五条 用人单位聘用外国人须为该外国人申请就业许可, 经获准并取得《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就业许可证书》(以下简称许可证书)后方可聘用。

第六条 用人单位聘用外国人从事的岗位应是有特殊需要, 国内暂缺适当人选, 且不违反国家有关规定的岗位。用人单位不得聘用外国人从事营业性文艺演出, 但符合本规定第九条第三项规定的人员除外。

第七条 外国人在中国就业须具备下列条件:

- (一) 年满18周岁, 身体健康;
- (二) 具有从事其工作所必需的专业技能和相应的工作经历;
- (三) 无犯罪记录;
- (四) 有确定的聘用单位;
- (五) 持有有效护照或能代替护照的其他国际旅行证件(以下简称代替护照的证件)。

第八条 在中国就业的外国人应持Z字签证入境(有互免签证协议的,按协议办理),入境后取得《外国人就业证》(以下简称就业证)和外国人居留证件,方可在中国境内就业。

未取得居留证件的外国人(即持F、L、C、G字签证者)、在中国留学、实习的外国人及持Z字签证外国人的随行家属不得在中国就业。特殊情况,应由用人单位按本规定规定的审批程序申领许可证书,被聘用的外国人凭许可证书到公安机关改变身份,办理就业证、居留证后方可就业。

外国驻中国使、领馆和联合国系统、其他国际组织驻中国代表机构人员的配偶在中国就业,应按《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关于外国驻中国使领馆和联合国系统组织驻中国代表机构人员的配偶在中国任职的规定》执行,并按本条第二款规定的审批程序办理有关手续。

许可证书和就业证由劳动部统一制作。

第九条 凡符合下列条件之一的外国人可免办就业许可和就业证:

- (一) 由我国政府直接出资聘请的外籍专业技术和管理人员,或由国家机关和事业单位出资聘请,具有本国或国际权威技术管理部门或行业协会确认的高级技术职称或特殊技能资格证书的外籍专业技术和管理人员,并持有外国专家局签发的《外国专家证》的外国人;
- (二) 持有《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从事海上石油作业工作准证》从事海上石油作业、不需登陆、有特殊技能的外籍劳务人员;
- (三) 经文化部批准持《临时营业演出许可证》进行营业性文艺演出的外国人。

第十条 凡符合下列条件之一的外国人可免办许可证书,入境后凭Z字签证及有关证明直接办理就业证:

- (一) 按照我国与外国政府间、国际组织间协议、协定,执行中外合作交流项目受聘来中国工作的外国人;
- (二) 外国企业常驻中国代表机构中的首席代表、代表。

第三章 申请与审批

第十一条 用人单位聘用外国人，须填写《聘用外国人就业申请表》(以下简称申请表)，向其与劳动行政主管部门同级的行业主管部门(以下简称行业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供下列有效文件：

- (一) 拟聘用外国人履历证明；
- (二) 聘用意向书；
- (三) 拟聘用外国人原因的报告；
- (四) 拟聘用的外国人从事该项工作的资格证明；
- (五) 拟聘用的外国人健康状况证明；
- (六) 法律、法规规定的其他文件。

行业主管部门应按照本规定第六条、第七条及有关法律、法规的规定进行审批。

第十二条 经行业主管部门批准后，用人单位应持申请表到本单位所在地区的省、自治区、直辖市劳动行政部门或其授权的地市级劳动行政部门办理核准手续。省、自治区、直辖市劳动行政部门或授权的地市级劳动行政部门应指定专门机构(以下简称发证机关)具体负责签发许可证书工作。发证机关应根据行业主管部门的意见和劳动力市场的需求状况进行核准，并在核准后向用人单位签发许可证书。

第十三条 中央级用人单位、无行业主管部门的用人单位聘用外国人，可直接到劳动行政部门发证机关提出申请和办理就业许可手续。

外商投资企业聘雇外国人，无须行业主管部门审批，可凭合同、章程、批准证书、营业执照和本规定第十一条所规定的文件直接到劳动行政部门发证机关申领许可证书。

第十四条 获准来中国工作的外国人，应凭许可证书及本国有效护照或能代替护照的证件，到中国驻外使、领馆、处申请Z字签证。

凡符合本规定第九条第二项规定的人员，应凭中国海洋石油总公司签发的通知函电申请Z字签证；凡符合第九条第三项规定的人员，应凭文化部的批件申请Z字签证；

凡符合本规定第十条第一款规定的人员，应凭合作交流项目书申请Z字签证；凡符合第十条第二项规定的人员，应凭工商管理行政部门的登记证明申请Z字签证。

第十五条 用人单位应在被聘用的外国人入境后15日内，持许可证书、与被聘用的外国人签订的劳动合同及其有效护照或能代替护照的证件到原发证机关为外国人办理就业证，并填写《外国人就业登记表》。

就业证只在发证机关规定的区域内有效。

第十六条 已办理就业证的外国人，应在入境后30日内，持就业证到公安机关申请办理居留证。居留证件的有效期限可根据就业证的有效期限确定。

第四章 劳动管理

第十七条 用人单位与被聘用的外国人应依法订立劳动合同。劳动合同的期限最长不得超过五年。劳动合同期限届满即行终止，但按本规定第十九条的规定履行审批手续后可以续订。

第十八条 被聘用的外国人与用人单位签订的劳动合同期满时，其就业证即行失效。如需续订，该用人单位应在原合同期满前30日内，向劳动行政部门提出延长聘用时间的申请，经批准并办理就业证延期手续。

第十九条 外国人被批准延长在中国就业期限或变更就业区域、单位后，应在10日内到当地公安机关办理居留证件延期或变更手续。

第二十条 被聘用的外国人与用人单位的劳动合同被解除后，该用人单位应及时报告劳动、公安部门，交还该外国人的就业证和居留证件，并到公安机关办理出境手续。

第二十一条 用人单位支付所聘用外国人的工资不得低于当地最低工资标准。

第二十二条 在中国就业的外国人的工作时间、休息、休假劳动安全卫生以及社会保险按国家有关规定执行。

第二十三条 外国人在中国就业的用人单位必须与其就业证所注明的单位相一致。

外国人在发证机关规定的区域内变更用人单位但仍从事原职业的，须经原发证机关批准，并办理就业证变更手续。

外国人离开发证机关规定的区域就业或在原规定的区域内变更用人单位且从事不同职业的，须重新办理就业许可手续。

第二十四条 因违反中国法律被中国公安机关取消居留资格的外国人，用人单位应解除劳动合同，劳动部门应吊销就业证。

第二十五条 用人单位与被聘用的外国人发生劳动争议，应按照《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和《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处理。

第二十六条 劳动行政部门对就业证实行年检。用人单位聘用外国人就业每满1年，应在期满前30日内到劳动行政部门发证机关为被聘用的外国人办理就业证年检手续。逾期未办的，就业证自行失效。

外国人在中国就业期间遗失或损坏其就业证的，应立即到原发证机关办理挂失、补办或换证手续。

第五章 罚 则

第二十七条 对违反本规定未申领就业证擅自就业的外国人和未办理许可证书擅自聘用外国人的用人单位，由公安机关按《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第四十四条处理。

第二十八条 对拒绝劳动行政部门检查就业证、擅自变更用人单位、擅自更换职业、擅自延长就业期限的外国人，由劳动行政部门收回其就业证，并提请公安机关取消其居留资格。对需该机关遣送出境的，遣送费用由聘用单位或该外国人承担。

第二十九条 对伪造、涂改、冒用、转让、买卖就业证和许可证书的外国人和用人单位，由劳动行政部门收缴就业证和许可证书，没收其非法所得，并处以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构成犯罪的，移送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条 发证机关或者有关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非法收费、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不构成犯罪的，给予行政处分。

第六章 附则

第三十一条 中国的台湾和香港、澳门地区居民在内地就业按《台湾和香港、澳门居民在内地就业管理规定》执行。

第三十二条 外国人在中国的台湾和香港、澳门地区就业不适用本规定。

第三十三条 禁止个体经济组织和公民个人聘用外国人。

第三十四条 省、自治区、直辖市劳动行政部门可会同公安等部门依据本规定制定本地区的实施细则，并报劳动部、公安部、外交部、对外贸易经济合作部备案。

第三十五条 本规定由劳动部解释。

第三十六条 本规定自1996年5月1日起施行。原劳动人事部和公安部1987年10月5日发布的《关于未取得居留证件的外国人和来中国留学的外国人在中国就业的若干规定》同时废止。

[8]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享有相关待遇的办法

(2012. 9. 25. 实施, 部令)

《外国人永久居留证》是获得在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在中国境内居留的合法身份证件, 可以单独使用。凡持有中国《外国人永久居留证》的外籍人员可享有以下待遇:

一、除政治权利和法律法规规定不可享有的特定权利和义务外, 原则上和中国公民享有相同权利, 承担相同义务。

二、在中国居留期限不受限制, 可以凭有效护照和《外国人永久居留证》出入中国国境, 无需另外办理签证等手续; 其配偶及直系亲属, 可按有关规定申请办理相应签证、居留证件或《外国人永久居留证》。

三、进出境自用物品按照海关对定居旅客的有关规定办理手续。

四、在中国就业, 免办《外国人就业证》; 符合条件的, 可优先办理《外国专家证》、《回国(来华)专家证》以及各地人才工作居住证。

五、可以技术入股或者投资等方式创办外商投资企业, 可以合法获得的人民币在中国境内进行外商直接投资。

六、在中国投资项目、设立外商投资企业的, 发展改革、商务、工商、外汇等部门按照外资管理有关规定简化核准及审批程序, 提高效率。

七、可按规定参加专业技术职务任职资格评审和专业技术人员资格考试。

八、随迁子女义务教育阶段入学, 符合条件的, 可享受相关政策, 由其居住地教育行政部门按照就近入学的原则办理入、转学手续, 不收取国家规定以外的费用。

九、可以《外国人永久居留证》作为有效身份证件办理参加社会保险各项手续。在中国境内就业的, 按照《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有关规定参加各项社会保险; 在中国境内居住但未就业, 且符合统筹地区规定的, 可参照国内城镇居民参加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和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 享受社会保险待遇。办理社会保险关系转移接续、终止等手续, 社会保险经办机构按照有关规定简化流程、提供方便。

十、可按照《住房公积金管理条例》等规定，在工作地缴存和使用住房公积金，离开该地区时，可按规定办理住房公积金的提取或转移手续。

十一、可不受《关于规范房地产市场外资准入和管理的意见》中关于境外个人在境内购买自用商品住房需在境内工作、学习超过一年的限制，按照其他有关规定在境内购买自用、自住商品住房。

十二、在缴纳所得税方面，按照中国税收法律法规以及税收协定的有关规定，履行相应的纳税义务。

十三、在国内办理银行、保险、证券和期货等金融方面业务，可以《外国人永久居留证》作为身份凭证，享有中国公民同等权利、义务和统计归属。

十四、在国内取得的收入，依法纳税并持有税务部门出具的对外支付税务证明后，可兑换外汇汇出境外。可以《外国人永久居留证》作为身份凭证，按照相关外汇管理规定办理外汇业务。

十五、在国内购物、购买公园及各类文体场馆门票、进行文化娱乐商旅等消费活动与中国公民同等待遇、价格相同。

十六、乘坐中国国内航班，可凭《外国人永久居留证》办理有关登机手续；在国内乘坐火车，可凭《外国人永久居留证》购买火车票；在国内旅馆住宿，可凭《外国人永久居留证》办理有关入住手续。

十七、在申领机动车驾驶证和办理机动车登记方面，享受中国公民同等待遇。初次申领或持境外机动车驾驶证换领《中华人民共和国机动车驾驶证》，符合驾驶证申领或换领条件的，可凭《外国人永久居留证》、公安部门出具的住宿登记证明、身体条件证明，经考试合格后，由公安机关核发《中华人民共和国机动车驾驶证》。申请办理机动车登记，可以凭《外国人永久居留证》、公安部门出具的住宿登记证明及机动车相关证明、凭证，到公安部门办理机动车登记业务。

十八、加入或恢复中国国籍，公安部门按照有关续，加快办理。

十九、本办法由人力资源社会保障部、公安部会同相关部门负责解释。

二十、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中共中央组织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公安部 外交部 发展改革委
教育部 科技部 财政部 住房城乡建设部 铁道部 商务部 人口计生委 人
民银行 国资委 海关总署 税务总局 工商总局 旅游局 侨办 银监会 证监
会 保监会 外专局 民航局 外汇局)

[9]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 (2004. 8. 15. 实施, 部令)

第一条 为规范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工作, 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及其实施细则的有关规定, 制定本办法。

第二条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是指外国人在中国居留期限不受限制。

第三条 《外国人永久居留证》是获得在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在中国境内居留的合法身份证件, 可以单独使用。

第四条 获得在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 凭有效护照和《外国人永久居留证》出入中国国境。

第五条 受理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申请的机关是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 直辖市公安分、县局; 审核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申请的机关是各省、自治区、直辖市公安厅、局; 审批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申请的机关是公安部。

第六条 申请在中国永久居留的外国人应当遵守中国法律, 身体健康, 无犯罪记录, 并符合下列条件之一:

- (一) 在中国直接投资、连续三年投资情况稳定且纳税记录良好的;
- (二) 在中国担任副总经理、副厂长等职务以上或者具有副教授、副研究员等副高级职称以上以及享受同等待遇, 已连续任职满四年、四年内在中国居留累计不少于三年且纳税记录良好的;
- (三) 对中国有重大、突出贡献以及国家特别需要的;
- (四) 本款第一项、第二项、第三项所指人员的配偶及其未满18周岁的未婚子女;
- (五) 中国公民或者在中国获得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配偶, 婚姻关系存续满五年、已在中国连续居留满五年、每年在中国居留不少于九个月且有稳定生活保障和住所的;
- (六) 未满18周岁未婚子女投靠父母的;

- (七) 在境外无直系亲属，投靠境内直系亲属，且年满60周岁、已在中国连续居留满五年、每年在中国居留不少于九个月并有稳定生活保障和住所的。

本条所指年限均指申请之日前连续的年限。

第七条 本办法第六条第一款第一项所指的外国人，其在中国投资实际缴付的注册资本金应当符合下列条件之一：

- (一) 在国家颁布的《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鼓励类产业投资合计50万美元以上；
- (二) 在中国西部地区和国家扶贫开发工作重点县投资合计 50万美元以上；
- (三) 在中国中部地区投资合计100万美元以上；
- (四) 在中国投资合计200万美元以上。

第八条 本办法第六条第一款第二项所指的外国人，其任职单位应当符合下列条件之一：

- (一) 国务院各部门或者省级人民政府所属的机构；
- (二) 重点高等学校；
- (三) 执行国家重点工程项目或者重大科研项目企业、事业单位；
- (四) 高新技术企业、鼓励类外商投资企业、外商投资先进技术企业或者外商投资产品出口企业。

第九条 申请人申请时需如实填写《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申请表》，并提交下列材料：

- (一) 有效的外国护照或者能够代替护照的证件；
- (二) 中国政府指定的卫生检疫部门出具的或者经中国驻外使、领馆认证的外国卫生医疗机构签发的健康证明书；
- (三) 经中国驻外使、领馆认证的国外无犯罪记录证明；
- (四) 四张二英寸近期正面免冠彩色照片；
- (五) 本办法规定的其他有关材料。

第十条 本办法第六条第一款第一项所指人员申请时还需提交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登记证明以及联合年检证明、验资报告、个人完税证明。

鼓励类外商投资企业还应当提交国家鼓励发展的外商投资项目确认书。

第十一条 本办法第六条第一款第二项所指人员申请时还需提交下列材料：

- (一) 任职单位出具的本人职务或者职称证明；
- (二) 《外国专家证》或者《外国人就业证》；
- (三) 任职单位的登记证明以及年检证明、个人完税证明；任职单位是外商投资企业的，还需提交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和联合年检证明；
- (四) 在执行国家重点工程项目或者重大科研项目的企业、事业单位中任职的人员需提交省、部级政府主管部门出具的项目证明文件；在高新技术企业中任职的人员需提交高新技术企业证书；在鼓励类外商投资企业、外商投资先进技术企业或者外商投资产品出口企业中任职的人员需提交国家鼓励发展的外商投资项目确认书或者外商投资先进技术企业确认书或者外商投资产品出口企业确认书。

第十二条 本办法第六条第一款第三项所指人员申请时还需提交中国政府主管部门出具的推荐函及有关证明。

第十三条 本办法第六条第一款第四项所指人员申请时，属于配偶的，还需提交婚姻证明；属于未满18周岁未婚子女的，还需提交本人出生证明或者亲子关系证明；属收养关系的，还需提交收养证明。外国有关机构出具的上述证明需经中国驻该国使、领馆认证。

第十四条 本办法第六条第一款第五项所指人员申请时还需提交其中国籍配偶的常住户籍证明或者其外国籍配偶的《外国人永久居留证》、婚姻证明、经公证的生活保障证明及房屋租赁或者产权证明。外国有关机构出具的上述证明需经中国驻该国使、领馆认证。

第十五条 本办法第六条第一款第六项所指人员申请时还需提交其中

国籍父母的常住户籍证明或者外国籍父母的《外国人永久居留证》、本人出生证明或者亲子关系证明；属收养关系的，还需提交收养证明。外国有关机构出具的上述证明需经中国驻该国使、领馆认证。

第十六条 本办法第六条第一款第七项所指人员申请时还需提交被投靠的中国公民常住户籍证明或者外国人的《外国人永久居留证》、经公证的亲属关系证明以及投靠人国外无直系亲属关系证明、经公证的投靠人经济来源证明或者被投靠人经济担保证明、经公证的投靠人或者被投靠人的房屋租赁或者产权证明。外国有关机构出具的上述证明需经中国驻该国使、领馆认证。

第十七条 外国人申请在中国永久居留，由本人或者未满18周岁未婚子女的父母或者被委托人向主要投资地或者长期居留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直辖市公安分、县局提出申请。

由被委托人代为申请的，需提交申请人出具的委托书。申请人在国外出具的委托书，需经中国驻该国使、领馆认证。

第十八条 公安机关自受理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的申请之日起六个月以内做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

第十九条 被批准在中国永久居留的外国人，由公安部签发《外国人永久居留证》；申请人在境外的，由公安部发给《外国人永久居留身份确认表》，申请人持《外国人永久居留身份确认表》到中国驻外使、领馆办理“D”字签证，入境后30日以内向受理其申请的公安机关领取《外国人永久居留证》。

第二十条 被批准在中国永久居留的外国人，每年在中国累计居留不得少于三个月。确因实际需要每年不能在中国累计居留满三个月的，需经长期居留地省、自治区、直辖市公安厅、局批准，但五年内在华累计居留不得少于一年。

第二十一条 《外国人永久居留证》的有效期为五年或者十年。

被批准在中国永久居留的未满十八周岁的外国人，发给有效期为五年的《外国人永久居留证》；被批准在中国永久居留的十八周岁以上的外国人，发给有效期为十年的《外国人永久居留证》。

第二十二条 《外国人永久居留证》有效期满、内容变更、损坏或者

遗失的，持证人应当向其长期居留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直辖市公安分、县局申请换发或者补发。公安机关经审核对没有丧失在中国永久居留资格规定情形的，一个月以内换发或者补发证件。

第二十三条 持有《外国人永久居留证》的外国人应当在证件有效期满前一个月以内申请换发；证件内容变更的，应当在情况变更后一个月以内申请换发；证件损坏或者遗失的，应当及时申请换发或者补发。

第二十四条 具有在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有下列情形之一的，公安部可以取消其在中国永久居留资格，同时收缴其所持《外国人永久居留证》或者宣布作废：

- (一) 可能对国家安全和利益造成危害的；
- (二) 被人民法院判处驱逐出境的；
- (三) 通过提供虚假材料等非法手段骗取在中国永久居留资格的；
- (四) 未经批准每年在中国累计居留不满三个月或者五年内在华累计居留不满一年的。

第二十五条 本办法实施前被批准在中国永久居留的外国人，应当在本办法实施之日起六个月以内到原居留证件签发地或者长期居留地的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或者直辖市公安分、县局换领《外国人永久居留证》。

第二十六条 申请在中国永久居留以及签发、换发、补发《外国人永久居留证》，有关收费项目和标准按照国务院价格和财政主管部门的规定执行。

第二十七条 本办法中下列用语的含义：

- (一) “直系亲属”指父母（配偶的父母）、祖父母（外祖父母）、已满18周岁的成年子女及其配偶、已满18周岁的成年孙子女（外孙子女）及其配偶；
- (二) “以上”、“以内”皆包括本数。

第二十八条 本办法由公安部、外交部负责解释。 [2-4]

第二十九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 중국 형법 (출입국 관련 조항) 및 반테러법

[10] 中华人民共和国刑法 [有关出入境条款]

(2021. 3. 1. 修正实施, 主席令)

[组织他人偷越国 (边) 境罪]

第三百一十八条 组织他人偷越国(边)境的, 处二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 有下列情形之一的, 处七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 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

- (一) 组织他人偷越国(边)境集团的首要分子;
- (二) 多次组织他人偷越国(边)境或者组织他人偷越国(边)境人数众多的;
- (三) 造成被组织人重伤、死亡的;
- (四) 剥夺或者限制被组织人人身自由的;
- (五) 以暴力、威胁方法抗拒检查的;
- (六) 违法所得数额巨大的;
- (七) 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

犯前款罪, 对被组织人有杀害、伤害、强奸、拐卖等犯罪行为, 或者对检查人员有杀害、伤害等犯罪行为的, 依照数罪并罚的规定处罚。

[骗取出境证件罪]

第三百一十九条 以劳务输出、经贸往来或者其他名义, 弄虚作假, 骗取护照、签证等出境证件, 为组织他人偷越国(边)境使用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 情节严重的, 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并处罚金。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的规定处罚。

[提供伪造、变造的出入境证件罪][出售出入境证件罪]

第三百二十条 为他人提供伪造、变造的护照、签证等出入境证件，或者出售护照、签证等出入境证件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运送他人偷越国（边）境罪]

第三百二十一条 运送他人偷越国(边)境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有下列情形之一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 (一) 多次实施运送行为或者运送人数众多的；
- (二) 所使用的船只、车辆等交通工具不具备必要的安全条件，足以造成严重后果的；
- (三) 违法所得数额巨大的；
- (四) 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

在运送他人偷越国(边)境中造成被运送人重伤、死亡，或者以暴力、威胁方法抗拒检查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犯前两款罪，对被运送人有杀害、伤害、强奸、拐卖等犯罪行为，或者对检查人员有杀害、伤害等犯罪行为的，依照数罪并罚的规定处罚。

[偷越国（边）境罪]

第三百二十二条 违反国(边)境管理法规，偷越国(边)境，情节严重的，处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为参加恐怖活动组织、接受恐怖活动培训或者实施恐怖活动，偷越国（边）境的，处一年以上三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破坏界碑、界桩罪][破坏永久性测量标志罪]

第三百二十三条 故意破坏国家边境的界碑、界桩或者永久性测量标志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走私武器、弹药罪、走私核材料罪、走私假币罪；走私文物罪、走私贵重金属罪、走私珍贵动物、珍贵动物制品罪；走私国家禁止进出口的货物、物品罪]

第一百五十一条 走私武器、弹药、核材料或者伪造的货币的，处七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情节特别严重的，处无期徒刑，并处没收财产；情节较轻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走私国家禁止出口的文物、黄金、白银和其他贵重金属或者国家禁止进出口的珍贵动物及其制品的，处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没收财产；情节较轻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走私珍稀植物及其制品等国家禁止进出口的其他货物、物品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本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本条各款的规定处罚。

[走私淫秽物品罪、走私废物罪]

第一百五十二条 以牟利或者传播为目的，走私淫秽的影片、录像带、录音带、图片、书刊或者其他淫秽物品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情节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罚金或者没收财产；情节较轻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处罚金。

逃避海关监管将境外固体废物、液态废物和气态废物运输进境，情节严重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

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单位犯前两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两款的规定处罚。

【走私普通货物、物品罪】

第一百五十三条 走私本法第一百五十一条、第一百五十二条、第三百四十七条规定以外的货物、物品的，根据情节轻重，分别依照下列规定处罚：

- (一) 走私货物、物品偷逃应缴税额较大或者一年内曾因走私被给予二次行政处罚后又走私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偷逃应缴税额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
- (二) 走私货物、物品偷逃应缴税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偷逃应缴税额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
- (三) 走私货物、物品偷逃应缴税额特别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无期徒刑，并处偷逃应缴税额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或者没收财产。

单位犯前款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情节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情节特别严重的，处十年以上有期徒刑。

对多次走私未经处理的，按照累计走私货物、物品的偷逃应缴税额处罚。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防范和惩治恐怖活动, 加强反恐怖主义工作, 维护国家安全、公共安全和人民生命财产安全, 根据宪法, 制定本法。

第二条 国家反对一切形式的恐怖主义, 依法取缔恐怖活动组织, 对任何组织、策划、准备实施、实施恐怖活动, 宣扬恐怖主义, 煽动实施恐怖活动, 组织、领导、参加恐怖活动组织, 为恐怖活动提供帮助的, 依法追究法律责任。国家不向任何恐怖活动组织和人员作出妥协, 不向任何恐怖活动人员提供庇护或者给予难民地位。

第三条 本法所称恐怖主义, 是指通过暴力、破坏、恐吓等手段, 制造社会恐慌、危害公共安全、侵犯人身财产, 或者胁迫国家机关、国际组织, 以实现其政治、意识形态等目的的主张和行为。本法所称恐怖活动, 是指恐怖主义性质的下列行为: (一) 组织、策划、准备实施、实施造成或者意图造成人员伤亡、重大财产损失、公共设施损坏、社会秩序混乱等严重社会危害的活动的; (二) 宣扬恐怖主义, 煽动实施恐怖活动, 或者非法持有宣扬恐怖主义的物品, 强制他人在公共场所穿戴宣扬恐怖主义的服饰、标志的; (三) 组织、领导、参加恐怖活动组织的; (四) 为恐怖活动组织、恐怖活动人员、实施恐怖活动或者恐怖活动培训提供信息、资金、物资、劳务、技术、场所等支持、协助、便利的; (五) 其他恐怖活动。本法所称恐怖活动组织, 是指三人以上为实施恐怖活动而组成的犯罪组织。本法所称恐怖活动人员, 是指实施恐怖活动的人和恐怖活动组织的成员。本法所称恐怖事件, 是指正在发生或者已经发生的造成或者可能造成重大社会危害的恐怖活动。

第四条 国家将反恐怖主义纳入国家安全战略, 综合施策, 标本兼治, 加强反恐怖主义的能力建设, 运用政治、经济、法律、文化、教育、外交、军事等手段, 开展反恐怖主义工作。国家反对一切形式的以歪曲宗教教义或者其他方法煽动仇恨、煽动歧视、鼓吹暴力等极端主义, 消除恐怖主义的思想基础。

第五条 反恐怖主义工作坚持专门工作与群众路线相结合, 防范为主

、惩防结合和先发制敌、保持主动的原则。

第六条 反恐怖主义工作应当依法进行，尊重和保障人权，维护公民和组织的合法权益。在反恐怖主义工作中，应当尊重公民的宗教信仰自由和民族风俗习惯，禁止任何基于地域、民族、宗教等理由的歧视性做法。

第七条 国家设立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统一领导和指挥全国反恐怖主义工作。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设立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县级人民政府根据需要设立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在上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领导和指挥下，负责本地区反恐怖主义工作。

第八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和人民检察院、人民法院、司法行政机关以及其他有关国家机关，应当根据分工，实行工作责任制，依法做好反恐怖主义工作。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和民兵组织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军事法规以及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命令，并根据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部署，防范和处置恐怖活动。有关部门应当建立联动配合机制，依靠、动员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企业事业单位、社会组织，共同开展反恐怖主义工作。

第九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协助、配合有关部门开展反恐怖主义工作的义务，发现恐怖活动嫌疑或者恐怖活动嫌疑人员的，应当及时向公安机关或者有关部门报告。

第十条 对举报恐怖活动或者协助防范、制止恐怖活动有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以及在反恐怖主义工作中作出其他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第十一条 对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对中华人民共和国国家、公民或者机构实施的恐怖活动犯罪，或者实施的中华人民共和国缔结、参加的国际条约所规定的恐怖活动犯罪，中华人民共和国行使刑事管辖权，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章 恐怖活动组织和人员的认定

第十二条 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根据本法第三条的规定，认定恐怖活动组织和人员，由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予

以公告。

第十三条 国务院公安部门、国家安全部门、外交部门和省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对于需要认定恐怖活动组织和人员的，应当向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提出申请。

第十四条 金融机构和特定非金融机构对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公告的恐怖活动组织和人员的资金或者其他资产，应当立即予以冻结，并按照规定及时向国务院公安部门、国家安全部门和反洗钱行政主管部门报告。

第十五条 被认定的恐怖活动组织和人员对认定不服的，可以通过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申请复核。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及时进行复核，作出维持或者撤销认定的决定。复核决定为最终决定。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作出撤销认定的决定的，由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予以公告；资金、资产已被冻结的，应当解除冻结。

第十六条 根据刑事诉讼法的规定，有管辖权的中级人民法院在审判刑事案件的过程中，可以依法认定恐怖活动组织和人员。对于在判决生效后需要由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予以公告的，适用本章的有关规定。

第三章 安全防范

第十七条 各级人民政府和有关部门应当组织开展反恐怖主义宣传教育，提高公民的反恐怖主义意识。教育、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主管部门和学校、有关职业培训机构应当将恐怖活动预防、应急知识纳入教育、教学、培训的内容。新闻、广播、电视、文化、宗教、互联网等有关单位，应当有针对性地面向社会进行反恐怖主义宣传教育。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协助人民政府以及有关部门，加强反恐怖主义宣传教育。

第十八条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提供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进行防范、调查恐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密等技术支持和协助。

第十九条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提供者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落实网络安全、信息内容监督制度和安全技术防范措施，防止含有恐怖主义、极端主义内容的信息传播；发现含有恐怖主义、极端主义内容的信息的，应当立即停止传输，保存相关记录，删除相关信息，并向公安机关或者有关部门报告。网信、电信、公安、国家安全等主管部门对含有恐怖主义、极端主义内容的信息，应当按照职责分工，及时责令有关单位停止传输、删除相关信息，或者关闭相关网站、关停相关服务。有关单位应当立即执行，并保存相关记录，协助进行调查。对互联网上跨境传输的含有恐怖主义、极端主义内容的信息，电信主管部门应当采取技术措施，阻断传播。

第二十条 铁路、公路、水上、航空的货运和邮政、快递等物流运营单位应当实行安全查验制度，对客户身份进行查验，依照规定对运输、寄递物品进行安全检查或者开封验视。对禁止运输、寄递，存在重大安全隐患，或者客户拒绝安全查验的物品，不得运输、寄递。前款规定的物流运营单位，应当实行运输、寄递客户身份、物品信息登记制度。

第二十一条 电信、互联网、金融、住宿、长途客运、机动车租赁等业务经营者、服务提供者，应当对客户身份进行查验。对身份不明或者拒绝身份查验的，不得提供服务。

第二十二条 生产和进口单位应当依照规定对枪支等武器、弹药、管制器具、危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核与放射物品作出电子追踪标识，对民用爆炸物品添加安检示踪标识物。运输单位应当依照规定对运营中的危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核与放射物品的运输工具通过定位系统实行监控。有关单位应当依照规定对传染病病原体等物质实行严格的监督管理，严密防范传染病病原体等物质扩散或者流入非法渠道。对管制器具、危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省级人民政府根据需要，在特定区域、特定时间，可以决定对生产、进出口、运输、销售、使用、报废实施管制，可以禁止使用现金、实物进行交易或者对交易活动作出其他限制。

第二十三条 发生枪支等武器、弹药、危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核与放射物品、传染病病原体等物质被盗、被抢、丢失或者其他流失的情形，案发单位应当立即采取必要的控制措施，并立即向公安机关报告

，同时依照规定向有关主管部门报告。公安机关接到报告后，应当及时开展调查。有关主管部门应当配合公安机关开展工作。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制作、生产、储存、运输、进出口、销售、提供、购买、使用、持有、报废、销毁前款规定的物品。公安机关发现的，应当予以扣押；其他主管部门发现的，应当予以扣押，并立即通报公安机关；其他单位、个人发现的，应当立即向公安机关报告。

第二十四条 国务院反洗钱行政主管部门、国务院有关部门、机构依法对金融机构和特定非金融机构履行反恐怖主义融资义务的情况进行监督管理。国务院反洗钱行政主管部门发现涉嫌恐怖主义融资的，可以依法进行调查，采取临时冻结措施。

第二十五条 审计、财政、税务等部门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有关单位实施监督检查的过程中，发现资金流入流出涉嫌恐怖主义融资的，应当及时通报公安机关。

第二十六条 海关在对进出境人员携带现金和无记名有价证券实施监管的过程中，发现涉嫌恐怖主义融资的，应当立即通报国务院反洗钱行政主管部门和有管辖权的公安机关。

第二十七条 地方各级人民政府制定、组织实施城乡规划，应当符合反恐怖主义工作的需要。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需要，组织、督促有关建设单位在主要道路、交通枢纽、城市公共区域的重点部位，配备、安装公共安全视频监控图像信息系统等防范恐怖袭击的技防、物防设备、设施。

第二十八条 公安机关和有关部门对宣扬极端主义，利用极端主义危害公共安全、扰乱公共秩序、侵犯人身财产、妨害社会管理的，应当及时予以制止，依法追究法律责任。公安机关发现极端主义活动的，应当责令立即停止，将有关人员强行带离现场并登记身份信息，对有关物品、资料予以收缴，对非法活动场所予以查封。任何单位和个人发现宣扬极端主义的物品、资料、信息的，应当立即向公安机关报告。

第二十九条 对被教唆、胁迫、引诱参与恐怖活动、极端主义活动，或者参与恐怖活动、极端主义活动情节轻微，尚不构成犯罪的人员，公安机关应当组织有关部门、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所在单位、就读

学校、家庭和监护人对其进行帮教。监狱、看守所、社区矫正机构应当加强对服刑的恐怖活动罪犯和极端主义罪犯的管理、教育、矫正等工作。监狱、看守所对恐怖活动罪犯和极端主义罪犯，根据教育改造和维护监管秩序的需要，可以与普通刑事罪犯混合关押，也可以个别关押。

第三十条 对恐怖活动罪犯和极端主义罪犯被判处有期徒刑以上刑罚的，监狱、看守所应当在刑满释放前根据其犯罪性质、情节和社会危害程度，服刑期间的表现，释放后对所居住社区的影响等进行社会危险性评估。进行社会危险性评估，应当听取有关基层组织和原办案机关的意见。经评估具有社会危险性的，监狱、看守所应当向罪犯服刑地的中级人民法院提出安置教育建议，并将建议书副本抄送同级人民检察院。罪犯服刑地的中级人民法院对于确有社会危险性的，应当在罪犯刑满释放前作出责令其在刑满释放后接受安置教育的决定。决定书副本应当抄送同级人民检察院。被决定安置教育的人员对决定不服的，可以向上级人民法院申请复议。安置教育由省级人民政府组织实施。安置教育机构应当每年对被安置教育人员进行评估，对于确有悔改表现，不致再危害社会的，应当及时提出解除安置教育的意见，报决定安置教育的中级人民法院作出决定。被安置教育人员有权申请解除安置教育。人民检察院对安置教育的决定和执行实行监督。

第三十一条 公安机关应当会同有关部门，将遭受恐怖袭击的可能性较大以及遭受恐怖袭击可能造成重大的人身伤亡、财产损失或者社会影响的单位、场所、活动、设施等确定为防范恐怖袭击的重点目标，报本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小组备案。

第三十二条 重点目标的管理单位应当履行下列职责：（一）制定防范和应对处置恐怖活动的预案、措施，定期进行培训和演练；（二）建立反恐怖主义工作专项经费保障制度，配备、更新防范和处置设备、设施；（三）指定相关机构或者落实责任人员，明确岗位职责；（四）实行风险评估，实时监测安全威胁，完善内部安全管理；（五）定期向公安机关和有关部门报告防范措施落实情况。重点目标的管理单位应当根据城乡规划、相关标准和实际需要，对重点目标同步设计、同步建设、同步运行符合本法第二十七条规定的技防、物防设备、设施。重点目标的管理单位应当建立公共安全视频图像信息系统值班监看、信息保

存使用、运行维护等管理制度，保障相关系统正常运行。采集的视频图像信息保存期限不得少于九十日。对重点目标以外的涉及公共安全的其他单位、场所、活动、设施，其主管部门和管理单位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建立健全安全管理制度，落实安全责任。

第三十三条 重点目标的管理单位应当对重要岗位人员进行安全背景审查。对有不适合情形的人员，应当调整工作岗位，并将有关情况通报公安机关。

第三十四条 大型活动承办单位以及重点目标的管理单位应当依照规定，对进入大型活动场所、机场、火车站、码头、城市轨道交通站、公路长途客运站、口岸等重点目标的人员、物品和交通工具进行安全检查。发现违禁品和管制物品，应当予以扣留并立即向公安机关报告；发现涉嫌违法犯罪人员，应当立即向公安机关报告。

第三十五条 对航空器、列车、船舶、城市轨道车辆、公共电汽车等公共交通运输工具，营运单位应当依照规定配备安保人员和相应设备、设施，加强安全检查和保卫工作。

第三十六条 公安机关和有关部门应当掌握重点目标的基础信息和重要动态，指导、监督重点目标的管理单位履行防范恐怖袭击的各项职责。公安机关、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应当依照有关规定对重点目标进行警戒、巡逻、检查。

第三十七条 飞行管制、民用航空、公安等主管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空域、航空器和飞行活动管理，严密防范针对航空器或者利用飞行活动实施的恐怖活动。

第三十八条 各级人民政府和军事机关应当在重点国（边）境地段和口岸设置拦阻隔离网、视频图像采集和防越境报警设施。公安机关和中国人民解放军应当严密组织国（边）境巡逻，依照规定对抵离国（边）境前沿、进出国（边）境管理区和国（边）境通道、口岸的人员、交通运输工具、物品，以及沿海沿边地区的船舶进行查验。

第三十九条 出入境证件签发机关、出入境边防检查机关对恐怖活动人员和恐怖活动嫌疑人员，有权决定不准其出境入境、不予签发出境入境证件或者宣布其出境入境证件作废。

第四十条 海关、出入境边防检查机关发现恐怖活动嫌疑人员或者涉嫌恐怖活动物品的，应当依法扣留，并立即移送公安机关或者国家安全机关。

第四十一条 国务院外交、公安、国家安全、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商务、旅游等主管部门应当建立境外投资合作、旅游等安全风险评估制度，对中国在境外的公民以及驻外机构、设施、财产加强安全保护，防范和应对恐怖袭击。

第四十二条 驻外机构应当建立健全安全防范制度和应对处置预案，加强对有关人员、设施、财产的安全保护。

第四章 情报信息

第四十三条 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建立国家反恐怖主义情报中心，实行跨部门、跨地区情报信息工作机制，统筹反恐怖主义情报信息工作。有关部门应当加强反恐怖主义情报信息搜集工作，对搜集的有关线索、人员、行动类情报信息，应当依照规定及时统一归口报送国家反恐怖主义情报中心。地方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建立跨部门情报信息工作机制，组织开展反恐怖主义情报信息工作，对重要的情报信息，应当及时向上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报告，对涉及其他地方的紧急情报信息，应当及时通报相关地方。

第四十四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和有关部门应当依靠群众，加强基层基础工作，建立基层情报信息工作力量，提高反恐怖主义情报信息工作能力。

第四十五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军事机关在其职责范围内，因反恐怖主义情报信息工作的需要，根据国家有关规定，经过严格的批准手续，可以采取技术侦察措施。依照前款规定获取的材料，只能用于反恐怖主义应对处置和对恐怖活动犯罪、极端主义犯罪的侦查、起诉和审判，不得用于其他用途。

第四十六条 有关部门对于在本法第三章规定的安全防范工作中获取的信息，应当根据国家反恐怖主义情报中心的要求，及时提供。

第四十七条 国家反恐怖主义情报中心、地方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以及公安机关等有关部门应当对有关情报信息进行筛查、研判、核查、监控，认为有发生恐怖事件危险，需要采取相应的安全防范、应对处置措施的，应当及时通报有关部门和单位，并可以根据情况发出预警。有关部门和单位应当根据通报做好安全防范、应对处置工作。

第四十八条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有关部门和单位、个人应当对履行反恐怖主义工作职责、义务过程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予以保密。违反规定泄露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依法追究法律责任。

第五章 调查

第四十九条 公安机关接到恐怖活动嫌疑的报告或者发现恐怖活动嫌疑，需要调查核实的，应当迅速进行调查。

第五十条 公安机关调查恐怖活动嫌疑，可以依照有关法律规定对嫌疑人员进行盘问、检查、传唤，可以提取或者采集肖像、指纹、虹膜图像等人体生物识别信息和血液、尿液、脱落细胞等生物样本，并留存其签名。公安机关调查恐怖活动嫌疑，可以通知了解有关情况的人员到公安机关或者其他地点接受询问。

第五十一条 公安机关调查恐怖活动嫌疑，有权向有关单位和人员收集、调取相关信息和材料。有关单位和人员应当如实提供。

第五十二条 公安机关调查恐怖活动嫌疑，经县级以上公安机关负责人批准，可以查询嫌疑人员的存款、汇款、债券、股票、基金份额等财产，可以采取查封、扣押、冻结措施。查封、扣押、冻结的期限不得超过二个月，情况复杂的，可以经上一级公安机关负责人批准延长一个月。

第五十三条 公安机关调查恐怖活动嫌疑，经县级以上公安机关负责人批准，可以根据其危险程度，责令恐怖活动嫌疑人员遵守下列一项或者多项约束措施：（一）未经公安机关批准不得离开所居住的市、县或者指定的处所；（二）不得参加大型群众性活动或者从事特定的活动；（三）未经公安机关批准不得乘坐公共交通工具或者进入特定的场所；（四）不得与特定的人员会见或者通信；（五）定期向公安机关报告活

动情况；（六）将护照等出入境证件、身份证件、驾驶证件交公安机关保存。公安机关可以采取电子监控、不定期检查等方式对其遵守约束措施的情况进行监督。采取前两款规定的约束措施的期限不得超过三个月。对不需要继续采取约束措施的，应当及时解除。

第五十四条 公安机关经调查，发现犯罪事实或者犯罪嫌疑人的，应当依照刑事诉讼法的规定立案侦查。本章规定的有关期限届满，公安机关未立案侦查的，应当解除有关措施。

第六章 应对处置

第五十五条 国家建立健全恐怖事件应对处置预案体系。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针对恐怖事件的规律、特点和可能造成的社会危害，分级、分类制定国家应对处置预案，具体规定恐怖事件应对处置的组织指挥体系和恐怖事件安全防范、应对处置程序以及事后社会秩序恢复等内容。有关部门、地方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制定相应的应对处置预案。

第五十六条 应对处置恐怖事件，各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成立由有关部门参加的指挥机构，实行指挥长负责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负责人可以担任指挥长，也可以确定公安机关负责人或者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其他成员单位负责人担任指挥长。跨省、自治区、直辖市发生的恐怖事件或者特别重大恐怖事件的应对处置，由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负责指挥；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发生的涉及多个行政区域的恐怖事件或者重大恐怖事件的应对处置，由省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负责指挥。

第五十七条 恐怖事件发生后，发生地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立即启动恐怖事件应对处置预案，确定指挥长。有关部门和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民兵组织，按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和指挥长的统一领导、指挥，协同开展打击、控制、救援、救护等现场应对处置工作。上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可以对应对处置工作进行指导，必要时调动有关反恐怖主义力量进行支援。需要进入紧急状态的，由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或者国务院依照宪法和其他有关法律规定的权限和程序决定。

第五十八条 发现恐怖事件或者疑似恐怖事件后，公安机关应当立即进行处置，并向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报告；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发现正在实施恐怖活动的，应当立即予以控制并将案件及时移交公安机关。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尚未确定指挥长的，由在场处置的公安机关职级最高的人员担任现场指挥员。公安机关未能到达现场的，由在场处置的中国人民解放军或者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职级最高的人员担任现场指挥员。现场应对处置人员无论是否属于同一单位、系统，均应当服从现场指挥员的指挥。指挥长确定后，现场指挥员应当向其请示、报告工作或者有关情况。

第五十九条 中华人民共和国在境外的机构、人员、重要设施遭受或者可能遭受恐怖袭击的，国务院外交、公安、国家安全、商务、金融、国有资产监督管理、旅游、交通运输等主管部门应当及时启动应对处置预案。国务院外交部门应当协调有关国家采取相应措施。中华人民共和国在境外的机构、人员、重要设施遭受严重恐怖袭击后，经与有关国家协商同意，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可以组织外交、公安、国家安全等部门派出工作人员赴境外开展应对处置工作。

第六十条 应对处置恐怖事件，应当优先保护直接受到恐怖活动危害、威胁人员的人身安全。

第六十一条 恐怖事件发生后，负责应对处置的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可以决定由有关部门和单位采取下列一项或者多项应对处置措施：

(一) 组织营救和救治受害人员，疏散、撤离并妥善安置受到威胁的人员以及采取其他救助措施；(二) 封锁现场和周边道路，查验现场人员的身份证件，在有关场所附近设置临时警戒线；(三) 在特定区域内实施空域、海(水)域管制，对特定区域内的交通运输工具进行检查；(四) 在特定区域内实施互联网、无线电、通讯管制；(五) 在特定区域内或者针对特定人员实施出境入境管制；(六) 禁止或者限制使用有关设备、设施，关闭或者限制使用有关场所，中止人员密集的活动或者可能导致危害扩大的生产经营活动；(七) 抢修被损坏的交通、电信、互联网、广播电视、供水、排水、供电、供气、供热等公共设施；(八) 组织志愿人员参加反恐怖主义救援工作，要求具有特定专长的人员提供服务；(九) 其他必要的应对处置措施。采取前款第三项至第五项规定的应对处置措施，由省级以上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决定或者批准

；采取前款第六项规定的应对处置措施，由设区的市级以上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决定。应对处置措施应当明确适用的时间和空间范围，并向社会公布。

第六十二条 人民警察、人民武装警察以及其他依法配备、携带武器的应对处置人员，对在现场持枪支、刀具等凶器或者使用其他危险方法，正在或者准备实施暴力行为的人员，经警告无效的，可以使用武器；紧急情况下或者警告后可能导致更为严重危害后果的，可以直接使用武器。

第六十三条 恐怖事件发生、发展和应对处置信息，由恐怖事件发生地的省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统一发布；跨省、自治区、直辖市发生的恐怖事件，由指定的省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统一发布。任何单位和个人不得编造、传播虚假恐怖事件信息；不得报道、传播可能引起模仿的恐怖活动的实施细节；不得发布恐怖事件中残忍、不人道的场景；在恐怖事件的应对处置过程中，除新闻媒体经负责发布信息的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批准外，不得报道、传播现场应对处置的工作人员、人质身份信息和应对处置行动情况。

第六十四条 恐怖事件应对处置结束后，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帮助受影响的单位和个人尽快恢复生活、生产，稳定受影响地区的社会秩序和公众情绪。

第六十五条 当地人民政府应当及时给予恐怖事件受害人员及其近亲属适当的救助，并向失去基本生活条件的受害人员及其近亲属及时提供基本生活保障。卫生、医疗保障等主管部门应当为恐怖事件受害人员及其近亲属提供心理、医疗等方面的援助。

第六十六条 公安机关应当及时对恐怖事件立案侦查，查明事件发生的原因、经过和结果，依法追究恐怖活动组织、人员的刑事责任。

第六十七条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应当对恐怖事件的发生和应对处置工作进行全面分析、总结评估，提出防范和应对处置改进措施，向上级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报告。

第七章 国际合作

第六十八条 中华人民共和国根据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

照平等互惠原则，与其他国家、地区、国际组织开展反恐怖主义合作。

第六十九条 国务院有关部门根据国务院授权，代表中国政府与外国政府和有关国际组织开展反恐怖主义政策对话、情报信息交流、执法合作和国际资金监管合作。在不违背我国法律的前提下，边境地区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主管部门，经国务院或者中央有关部门批准，可以与相邻国家或者地区开展反恐怖主义情报信息交流、执法合作和国际资金监管合作。

第七十条 涉及恐怖活动犯罪的刑事司法协助、引渡和被判刑人移管，依照有关法律规定执行。

第七十一条 经与有关国家达成协议，并报国务院批准，国务院公安部门、国家安全部门可以派员出境执行反恐怖主义任务。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派员出境执行反恐怖主义任务，由中央军事委员会批准。

第七十二条 通过反恐怖主义国际合作取得的材料可以在行政处罚、刑事诉讼中作为证据使用，但我方承诺不作为证据使用的除外。

第八章 保障措施

第七十三条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按照事权划分，将反恐怖主义工作经费分别列入同级财政预算。国家对反恐怖主义重点地区给予必要的经费支持，对应对处置大规模恐怖事件给予经费保障。

第七十四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和有关部门，以及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应当依照法律规定的职责，建立反恐怖主义专业力量，加强专业训练，配备必要的反恐怖主义专业设备、设施。县级、乡级人民政府根据需要，指导有关单位、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建立反恐怖主义工作力量、志愿者队伍，协助、配合有关部门开展反恐怖主义工作。

第七十五条 对因履行反恐怖主义工作职责或者协助、配合有关部门开展反恐怖主义工作导致伤残或者死亡的人员，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相应的待遇。

第七十六条 因报告和制止恐怖活动，在恐怖活动犯罪案件中作证，或者从事反恐怖主义工作，本人或者其近亲属的人身安全面临危险的，经本人或者其近亲属提出申请，公安机关、有关部门应当采取下列一项或者多项保护措施：（一）不公开真实姓名、住址和工作单位等个人信息；（二）禁止特定的人接触被保护人员；（三）对人身和住宅采取专门性保护措施；（四）变更被保护人员的姓名，重新安排住所和工作单位；（五）其他必要的保护措施。公安机关、有关部门应当依照前款规定，采取不公开被保护单位的真实名称、地址，禁止特定的人接近被保护单位，对被保护单位办公、经营场所采取专门性保护措施，以及其他必要的保护措施。

第七十七条 国家鼓励、支持反恐怖主义科学研究和技术创新，开发和推广使用先进的反恐怖主义技术、设备。

第七十八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因履行反恐怖主义职责的紧急需要，根据国家有关规定，可以征用单位和个人的财产。任务完成后应当及时归还或者恢复原状，并依照规定支付相应费用；造成损失的，应当补偿。因开展反恐怖主义工作对有关单位和个人的合法权益造成损害的，应当依法给予赔偿、补偿。有关单位和个人有权依法请求赔偿、补偿。

第九章 法律责任

第七十九条 组织、策划、准备实施、实施恐怖活动，宣扬恐怖主义，煽动实施恐怖活动，非法持有宣扬恐怖主义的物品，强制他人在公共场所穿戴宣扬恐怖主义的服饰、标志，组织、领导、参加恐怖活动组织，为恐怖活动组织、恐怖活动人员、实施恐怖活动或者恐怖活动培训提供帮助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十条 参与下列活动之一，情节轻微，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一万元以下罚款：（一）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或者煽动实施恐怖活动、极端主义活动的；（二）制作、传播、非法持有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的物品的；（三）强制他人在公共场所穿戴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的服饰、标志的；（四

) 为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或者实施恐怖主义、极端主义活动提供信息、资金、物资、劳务、技术、场所等支持、协助、便利的。

第八十一条 利用极端主义，实施下列行为之一，情节轻微，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一万元以下罚款：（一）强迫他人参加宗教活动，或者强迫他人向宗教活动场所、宗教教职人员提供财物或者劳务的；（二）以恐吓、骚扰等方式驱赶其他民族或者有其他信仰的人员离开居住地的；（三）以恐吓、骚扰等方式干涉他人与其他民族或者有其他信仰的人员交往、共同生活的；（四）以恐吓、骚扰等方式干涉他人生活习俗、方式和生产经营的；（五）阻碍国家机关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六）歪曲、诋毁国家政策、法律、行政法规，煽动、教唆抵制人民政府依法管理的；（七）煽动、胁迫群众损毁或者故意损毁居民身份证、户口簿等国家法定证件以及人民币的；（八）煽动、胁迫他人以宗教仪式取代结婚、离婚登记的；（九）煽动、胁迫未成年人不接受义务教育的；（十）其他利用极端主义破坏国家法律制度实施的。

第八十二条 明知他人有恐怖活动犯罪、极端主义犯罪行为，窝藏、包庇，情节轻微，尚不构成犯罪的，或者在司法机关向其调查有关情况、收集有关证据时，拒绝提供的，由公安机关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一万元以下罚款。

第八十三条 金融机构和特定非金融机构对国家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的办事机构公告的恐怖活动组织及恐怖活动人员的资金或者其他资产，未立即予以冻结的，由公安机关处二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对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罚款，并对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可以并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第八十四条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提供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主管部门处二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可以由公安机关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一）未依照规定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进行防范、调查恐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密等技术支持和协助的；（二）未按照主管部门的要求，停止传输、删除含有恐怖主义、极端主义内容的信息，保存相关记录，关闭相关网站或者关停相关服务的；（三）未落实网络安全、信息内容监督制度和安全技术防范措施，造成含有恐怖主义、极端主义内容的信息传播，情节严重的。

第八十五条 铁路、公路、水上、航空的货运和邮政、快递等物流运营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主管部门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下罚款：

（一）未实行安全查验制度，对客户身份进行查验，或者未依照规定对运输、寄递物品进行安全检查或者开封验视的；（二）对禁止运输、寄递，存在重大安全隐患，或者客户拒绝安全查验的物品予以运输、寄递的；（三）未实行运输、寄递客户身份、物品信息登记制度的。

第八十六条 电信、互联网、金融业务经营者、服务提供者未按规定对客户身份进行查验，或者对身份不明、拒绝身份查验的客户提供服务的，主管部门应当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二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住宿、长途客运、机动车租赁等业务经营者、服务提供者有前款规定情形的，由主管部门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下罚款。

第八十七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主管部门给予警告，并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下罚款：（一）未依照规定对枪支等武器、弹药、管制器具、危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核与放射物品作出电子追踪标识，对民用爆炸物品添加安检示踪标识物的；（二）未依照规定对运营中的危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核与放射物品的运输工具通过定位系统实行监控的；（三）未依照规定对传染病病原体等物质实行严格的监督管理，情节严重的；（四）违反国务院有关主管

部门或者省级人民政府对管制器具、危险化学品、民用爆炸物品决定的管制或者限制交易措施的。

第八十八条 防范恐怖袭击重点目标的管理、营运单位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给予警告，并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下罚款：（一）未制定防范和应对处置恐怖活动的预案、措施的；（二）未建立反恐怖主义工作专项经费保障制度，或者未配备防范和处置设备、设施的；（三）未落实工作机构或者责任人员的；（四）未对重要岗位人员进行安全背景审查，或者未将有不适合情形的人员调整工作岗位的；（五）对公共交通运输工具未依照规定配备安保人员和相应设备、设施的；（六）未建立公共安全视频图像信息系统值班监看、信息保存使用、运行维护等管理制度的。大型活动承办单位以及重点目标的管理单位未依照规定对进入大型活动场所、机场、火车站、码头、城市轨道交通站、公路长途客运站、口岸等重点目标的人员、物品和交通工具进行安全检查的，公安机关应当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下罚款。

第八十九条 恐怖活动嫌疑人员违反公安机关责令其遵守的约束措施的，由公安机关给予警告，并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第九十条 新闻媒体等单位编造、传播虚假恐怖事件信息，报道、传播可能引起模仿的恐怖活动的实施细节，发布恐怖事件中残忍、不人道的场景，或者未经批准，报道、传播现场应对处置的工作人员、人质身份信息和应对处置行动情况的，由公安机关处二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万元以下罚款。个人有前款规定行为的，由公安机关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一万元以下罚款。

第九十一条 拒不配合有关部门开展反恐怖主义安全防范、情报信息、调查、应对处置工作的，由主管部门处二千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一万元以下罚款。单位有前款规定行为的，由主管部门处五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处

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处罚。

第九十二条 阻碍有关部门开展反恐怖主义工作的，由公安机关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万元以下罚款。单位有前款规定行为的，由公安机关处二十万元以下罚款，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处罚。阻碍人民警察、人民解放军、人民武装警察依法执行职务的，从重处罚。

第九十三条 单位违反本法规定，情节严重的，由主管部门责令停止从事相关业务、提供相关服务或者责令停产停业；造成严重后果的，吊销有关证照或者撤销登记。

第九十四条 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反恐怖主义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有违反规定泄露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等行为，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反恐怖主义工作领导机构、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在反恐怖主义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有其他违法违纪行为的，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有关部门检举、控告。有关部门接到检举、控告后，应当及时处理并回复检举、控告人。

第九十五条 对依照本法规定查封、扣押、冻结、扣留、收缴的物品、资金等，经审查发现与恐怖主义无关的，应当及时解除有关措施，予以退还。

第九十六条 有关单位和个人对依照本法作出的行政处罚和行政强制措施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十章 附则

第九十七条 本法自2016年1月1日起施行。2011年10月29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三次会议通过的《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反恐怖工作有关问题的决定》同时废止。

▶ 중국 국민, 귀국동포, 기타 관련 법령

[12]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2017. 3. 1. 修正实施, 国务院令)

第一条 为了规范旅行社组织中国公民出国旅游活动, 保障出国旅游者和出国旅游经营者的合法权益, 制定本办法。

第二条 出国旅游的目的地国家, 由国务院旅游行政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提出, 报国务院批准后, 由国务院旅游行政部门公布。

任何单位和个人不得组织中国公民到国务院旅游行政部门公布的出国旅游的目的地国家以外的国家旅游; 组织中国公民到国务院旅游行政部门公布的出国旅游的目的地国家以外的国家进行涉及体育活动、文化活动等临时性专项旅游的, 须经国务院旅游行政部门批准。

第三条 旅行社经营出国旅游业务, 应当具备下列条件:

- (一) 取得国际旅行社资格满1年;
- (二) 经营入境旅游业务有突出业绩;
- (三) 经营期间无重大违法行为和重大服务质量问题。

第四条 申请经营出国旅游业务的旅行社, 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个工作日内, 依据本办法第三条规定的条件对申请审查完毕, 经审查同意的, 报国务院旅游行政部门批准; 经审查不同意的, 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国务院旅游行政部门批准旅行社经营出国旅游业务, 应当符合旅游业发展规划及合理布局的要求。

未经国务院旅游行政部门批准取得出国旅游业务经营资格的,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经营或者以商务、考察、培训等方式变相经营出国旅游业务。

第五条 国务院旅游行政部门应当将取得出国旅游业务经营资格的旅

行社（以下简称组团社）名单予以公布，并通报国务院有关部门。

第六条 国务院旅游行政部门根据上年度全国入境旅游的业绩、出国旅游目的地的增加情况和出国旅游的发展趋势，在每年的2月底以前确定本年度组织出国旅游的人数安排总量，并下达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部门。

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部门根据本行政区域内各组团社上年度经营入境旅游的业绩、经营能力、服务质量，按照公平、公正、公开的原则，在每年的3月底以前核定各组团社本年度组织出国旅游的人数安排。

国务院旅游行政部门应当对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部门核定组团社年度出国旅游人数安排及组团社组织公民出国旅游的情况进行监督。

第七条 国务院旅游行政部门统一印制《中国公民出国旅游团队名单表》（以下简称《名单表》），在下达本年度出国旅游人数安排时编号发放给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部门，由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部门核发给组团社。

组团社应当按照核定的出国旅游人数安排组织出国旅游团队，填写《名单表》。旅游者及领队首次出境或者再次出境，均应当填写在《名单表》中，经审核后的《名单表》不得增添人员。

第八条 《名单表》一式四联，分为：出境边防检查专用联、入境边防检查专用联、旅游行政部门审验专用联、旅行社自留专用联。

组团社应当按照有关规定，在旅游团队出境、入境时及旅游团队入境后，将《名单表》分别交有关部门查验、留存。

出国旅游兑换外汇，由旅游者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第九条 旅游者持有有效普通护照的，可以直接到组团社办理出国旅游手续；没有有效普通护照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的有关规定办理护照后再办理出国旅游手续。

组团社应当为旅游者办理前往国签证等出境手续。

第十条 组团社应当为旅游团队安排专职领队。

领队应当经省、自治区、直辖市旅游行政部门考核合格，取得领队证。

领队在带团时，应当佩戴领队证，并遵守本办法及国务院旅游行政部门的有关规定。

第十一条 旅游团队应当从国家开放口岸整团出入境。

旅游团队出入境时，应当接受边防检查站对护照、签证、《名单表》的查验。经国务院有关部门批准，旅游团队可以到旅游目的地国家按照该国有关规定办理签证或者免签证。

旅游团队出境前已确定分团入境的，组团社应当事先向出入境边防检查总站或者省级公安边防部门备案。

旅游团队出境后因不可抗力或者其他特殊原因确需分团入境的，领队应当及时通知组团社，组团社应当立即向有关出入境边防检查总站或者省级公安边防部门备案。

第十二条 组团社应当维护旅游者的合法权益。

组团社向旅游者提供的出国旅游服务信息必须真实可靠，不得作虚假宣传，报价不得低于成本。

第十三条 组团社经营出国旅游业务，应当与旅游者订立书面旅游合同。

旅游合同应当包括旅游起止时间、行程路线、价格、食宿、交通以及违约责任等内容。旅游合同由组团社和旅游者各持一份。

第十四条 组团社应当按照旅游合同约定的条件，为旅游者提供服务。

组团社应当保证所提供的服务符合保障旅游者人身、财产安全的要求；对可能危及旅游者人身安全的情况，应当向旅游者作出真实说明和明确警示，并采取有效措施，防止危害的发生。

第十五条 组团社组织旅游者出国旅游，应当选择在目的地国家依法设立并具有良好信誉的旅行社（以下简称境外接待社），并与其订立书面合同后，方可委托其承担接待工作。

第十六条 组团社及其旅游团队领队应当要求境外接待社按照约定的团队活动计划安排旅游活动，并要求其不得组织旅游者参与涉及色情、赌博、毒品内容的活动或者危险性活动，不得擅自改变行程、减少旅游项目，不得强迫或者变相强迫旅游者参加额外付费项目。

境外接待社违反组团社及其旅游团队领队根据前款规定提出的要求时，组团社及其旅游团队领队应当予以制止。

第十七条 旅游团队领队应当向旅游者介绍旅游目的地国家的相关法律、风俗习惯以及其他有关注意事项，并尊重旅游者的人格尊严、宗教信仰、民族风俗和生活习惯。

第十八条 旅游团队领队在带领旅游者旅行、游览过程中，应当就可能危及旅游者人身安全的情况，向旅游者作出真实说明和明确警示，并按照组团社的要求采取有效措施，防止危害的发生。

第十九条 旅游团队在境外遇到特殊困难和安全问题时，领队应当及时向组团社和中国驻所在国家使领馆报告；组团社应当及时向旅游行政部门和公安机关报告。

第二十条 旅游团队领队不得与境外接待社、导游及为旅游者提供商品或者服务的其他经营者串通欺骗、胁迫旅游者消费，不得向境外接待社、导游及其他为旅游者提供商品或者服务的经营者索要回扣、提成或者收受其财物。

第二十一条 旅游者应当遵守旅游目的地国家的法律，尊重当地的风俗习惯，并服从旅游团队领队的统一管理。

第二十二条 严禁旅游者在境外滞留不归。

旅游者在境外滞留不归的，旅游团队领队应当及时向组团社和中国驻所在国家使领馆报告，组团社应当及时向公安机关和旅游行政部门报告。有关部门处理有关事项时，组团社有义务予以协助。

第二十三条 旅游者对组团社或者旅游团队领队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有权向旅游行政部门投诉。

第二十四条 因组团社或者其委托的境外接待社违约，使旅游者合法权益受到损害的，组团社应当依法对旅游者承担赔偿责任。

第二十五条 组团社有下列情形之一的，旅游行政部门可以暂停其经营出国旅游业务；情节严重的，取消其出国旅游业务经营资格：

- (一) 入境旅游业绩下降的；
- (二) 因自身原因，在1年内未能正常开展出国旅游业务的；
- (三) 因出国旅游服务质量问题被投诉并经查实的；
- (四) 有逃汇、非法套汇行为的；
- (五) 以旅游名义弄虚作假，骗取护照、签证等出入境证件或者送他人出境的；
- (六) 国务院旅游行政部门认定的影响中国公民出国旅游秩序的其他行为。

第二十六条 任何单位和个人违反本办法第四条的规定，未经批准擅自经营或者以商务、考察、培训等方式变相经营出国旅游业务的，由旅游行政部门责令停止非法经营，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

第二十七条 组团社违反本办法第十条的规定，不为旅游团队安排专职领队的，由旅游行政部门责令改正，并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可以暂停其出国旅游业务经营资格；多次不安排专职领队的，并取消其出国旅游业务经营资格。

第二十八条 组团社违反本办法第十二条的规定，向旅游者提供虚假信息或者低于成本报价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的有关规定给予处罚。

第二十九条 组团社或者旅游团队领队违反本办法第十四条第二款、第十八条的规定，对可能危及人身安全的情况未向旅游者作出真实说明和明确警示，或者未采取防止危害发生的措施的，由旅游行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对组团社暂停其出国旅游业务经营资格，并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对旅游团队领队可以暂扣直至吊销其导游证；造成人身伤亡事故的，依法追究刑事责任，并承担赔偿责任。

第三十条 组团社或者旅游团队领队违反本办法第十六条的规定，未

要求境外接待社不得组织旅游者参与涉及色情、赌博、毒品内容的活动或者危险性活动，未要求其不得擅自改变行程、减少旅游项目、强迫或者变相强迫旅游者参加额外付费项目，或者在境外接待社违反前述要求时未制止的，由旅游行政部门对组团社处组织该旅游团队所收取费用2倍以上5倍以下的罚款，并暂停其出国旅游业务经营资格，对旅游团队领队暂扣其导游证；造成恶劣影响的，对组团社取消其出国旅游业务经营资格，对旅游团队领队吊销其导游证。

第三十一条 旅游团队领队违反本办法第二十条的规定，与境外接待社、导游及为旅游者提供商品或者服务的其他经营者串通欺骗、胁迫旅游者消费或者向境外接待社、导游和其他为旅游者提供商品或者服务的经营者索要回扣、提成或者收受其财物的，由旅游行政部门责令改正，没收索要的回扣、提成或者收受的财物，并处索要的回扣、提成或者收受的财物价值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吊销其导游证。

第三十二条 违反本办法第二十二条的规定，旅游者在境外滞留不归，旅游团队领队不及时向组团社和中国驻所在国家使领馆报告，或者组团社不及时向有关部门报告的，由旅游行政部门给予警告，对旅游团队领队可以暂扣其导游证，对组团社可以暂停其出国旅游业务经营资格。

旅游者因滞留不归被遣返回国的，由公安机关吊销其护照。

第三十三条 本办法自2002年7月1日起施行。国务院1997年3月17日批准，国家旅游局、公安部1997年7月1日发布的《中国公民自费出国旅游管理暂行办法》同时废止。

[13]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2009. 8. 27. 修正实施, 主席令)

第一条 为了保护归侨、侨眷的合法的权利和利益, 根据宪法, 制定本法。

第二条 归侨是指回国定居的华侨。华侨是指定居在国外的中国公民。

侨眷是指华侨、归侨在国内的眷属。

本法所称侨眷包括: 华侨、归侨的配偶, 父母, 子女及其配偶, 兄弟姐妹, 祖父母、外祖父母, 孙子女、外孙子女, 以及同华侨、归侨有长期扶养关系的其他亲属。

第三条 归侨、侨眷享有宪法和法律规定的公民的权利, 并履行宪法和法律规定的公民的义务,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歧视。

国家根据实际情况和归侨、侨眷的特点, 给予适当照顾, 具体办法由国务院或者国务院有关主管部门规定。

第四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及其负责侨务工作的机构, 组织协调有关部门做好保护归侨、侨眷的合法权益的工作。

第五条 国家对回国定居的华侨给予安置。

第六条 全国人民代表大会和归侨人数较多地区的地方人民代表大会应当有适当名额的归侨代表。

第七条 归侨、侨眷有权依法申请成立社会团体, 进行适合归侨、侨眷需要的合法的社会活动。

归侨、侨眷依法成立的社会团体的财产受法律保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犯。

第八条 中华全国归国华侨联合会和地方归国华侨联合会代表归侨、侨眷的利益, 依法维护归侨、侨眷的合法权益。

第九条 国家对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给予扶持,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其合法使用的土地, 不得侵犯其合法权益。

在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所在的地方，可以根据需要合理设置学校和医疗保健机构，国家在人员、设备、经费等方面给予扶助。

第十条 国家依法维护归侨、侨眷职工的社会保障权益。用人单位及归侨、侨眷职工应当依法参加当地的社会保险，缴纳社会保险费用。

对丧失劳动能力又无经济来源或者生活确有困难的归侨、侨眷，当地人民政府应当给予救济。

第十一条 国家鼓励和引导归侨、侨眷依法投资兴办产业，特别是兴办高新技术企业，各级人民政府应当给予支持，其合法权益受法律保护。

第十二条 归侨、侨眷在国内兴办公益事业，各级人民政府应当给予支持，其合法权益受法律保护。

归侨、侨眷境外亲友捐赠的物资用于国内公益事业的，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减征或者免征关税和进口环节的增值税。

第十三条 国家依法保护归侨、侨眷在国内私有房屋的所有权。

依法征收、征用、拆迁归侨、侨眷私有房屋的，建设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合理补偿和妥善安置。

第十四条 各级人民政府应当对归侨、侨眷就业给予照顾，提供必要的指导和服务。

归侨学生、归侨子女和华侨在国内的子女升学，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照顾。

第十五条 国家保护归侨、侨眷的侨汇收入。

第十六条 归侨、侨眷有权接受境外亲友的遗赠或者赠与。归侨、侨眷继承境外遗产的权益受法律保护。归侨、侨眷有权处分其在境外的财产。

第十七条 归侨、侨眷与境外亲友的往来和通讯受法律保护。

第十八条 归侨、侨眷申请出境，有关主管部门应当在规定期限内办理手续。

归侨、侨眷确因境外直系亲属病危、死亡或者限期处理境外财产等

特殊情况急需出境的，有关主管部门应当根据申请人提供的有效证明优先办理手续。

第十九条 国家保障归侨、侨眷出境探亲的权利。

归侨、侨眷职工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出境探亲的待遇。

第二十条 归侨、侨眷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出境定居，经批准出境定居的，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损害其合法权益。

离休、退休、退職的归侨、侨眷职工出境定居的，其离休金、退休金、退職金、养老金照发。

第二十一条 归侨、侨眷申请自费出境学习、讲学的，或者因经商出境的，其所在单位和有关部门应当提供便利。

第二十二条 国家对归侨、侨眷在境外的正当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国际惯例，给予保护。

第二十三条 归侨、侨眷合法权益受到侵害时，被侵害人有权要求有关主管部门依法处理，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归国华侨联合会应当给予支持和帮助。

第二十四条 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或者滥用职权，致使归侨、侨眷合法权益受到损害的，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应当责令改正或者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五条 任何组织或者个人侵害归侨、侨眷的合法权益，造成归侨、侨眷财产损失或者其他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六条 违反本法第九条第一款规定，非法占用安置归侨的农场、林场合法使用的土地，有关主管部门应当责令退还；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二十七条 违反本法第十三条规定，非法侵占归侨、侨眷在国内私有房屋的，有关主管部门应当责令退还；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二十八条 违反本法第二十条第二款规定，停发、扣发、侵占或者挪用出境定居的归侨、侨眷的离休金、退休金、退職金、养老金的，

有关单位或者有关主管部门应当责令补发，并依法给予赔偿；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九条 国务院根据本法制定实施办法。

省、自治区、直辖市的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可以根据本法 and 国务院的实施办法，制定实施办法。

第三十条 本法自1991年1月1日起施行。

[14] 中华人民共和国护照法 (2007. 1. 1. 实施, 主席令)

第一条 为了规范中华人民共和国护照的申请、签发和管理, 保障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入中华人民共和国国境的权益, 促进对外交往, 制定本法。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护照是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入国境和在国外证明国籍和身份的证件。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伪造、变造、转让、故意损毁或者非法扣押护照。

第三条 护照分为普通护照、外交护照和公务护照。护照由外交部通过外交途径向外国政府推介。

第四条 普通护照由公安部出入境管理机构或者公安部委托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以及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领馆和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签发。

外交护照由外交部签发。

公务护照由外交部、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以及外交部委托的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人民政府外事部门签发。

第五条 公民因前往外国定居、探亲、学习、就业、旅行、从事商务活动等非公务原因出国的, 由本人向户籍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普通护照。

第六条 公民申请普通护照, 应当提交本人的居民身份证、户口簿、近期免冠照片以及申请事由的相关材料。国家工作人员因本法第五条规定的原因出境申请普通护照的, 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提交相关证明文件。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十五日内签发普通护照; 对不符合规定不予签发的, 应当书面说明理由, 并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在偏远地区或者交通不便的地区或者因特殊情况, 不能按期签发护照的, 经护照签发机关负责人批准, 签发时间可以延长至三十日。

公民因合理紧急事由请求加急办理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及时办理。

第七条 普通护照的登记项目包括：护照持有人的姓名、性别、出生日期、出生地，护照的签发日期、有效期、签发地点和签发机关。

普通护照的有效期为：护照持有人未满十六周岁的五年，十六周岁以上的十年。

普通护照的具体签发办法，由公安部规定。

第八条 外交官员、领事官员及其随行配偶、未成年子女和外交信使持用外交护照。

在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领馆或者联合国、联合国专门机构以及其他政府间国际组织中工作的中国政府派出的职员及其随行配偶、未成年子女持用公务护照。

前两款规定之外的公民出国执行公务的，由其工作单位依照本法第四条第二款、第三款的规定向外交部门提出申请，由外交部门根据需要签发外交护照或者公务护照。

第九条 外交护照、公务护照的登记项目包括：护照持有人的姓名、性别、出生日期、出生地，护照的签发日期、有效期和签发机关。

外交护照、公务护照的签发范围、签发办法、有效期以及公务护照的具体类别，由外交部规定。

第十条 护照持有人所持护照的登记事项发生变更时，应当持相关证明材料，向护照签发机关申请护照变更加注。

第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护照持有人可以按照规定申请换发或者补发护照：

- (一) 护照有效期即将届满的；
- (二) 护照签证页即将使用完毕的；
- (三) 护照损毁不能使用的；
- (四) 护照遗失或者被盗的；
- (五) 有正当理由需要换发或者补发护照的其他情形。

护照持有人申请换发或者补发普通护照，在国内，由本人向户籍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提出；在国外，由本人向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提出。定居国外的中国公民回国后申请换发或者补发普通护照的，由本人向暂住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提出。

外交护照、公务护照的换发或者补发，按照外交部的有关规定办理。

第十二条 护照具备视读与机读两种功能。

护照的防伪性能参照国际技术标准制定。

护照签发机关及其工作人员对因制作、签发护照而知悉的公民个人信息，应当予以保密。

第十三条 申请人有下列情形之一的，护照签发机关不予签发护照：

- (一) 不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
- (二) 无法证明身份的；
- (三) 在申请过程中弄虚作假的；
- (四) 被判处刑罚正在服刑的；
- (五) 人民法院通知有未了结的民事案件不能出境的；
- (六) 属于刑事案件被告人或者犯罪嫌疑人的；
- (七) 国务院有关主管部门认为出境后将对国家安全造成危害或者对国家利益造成重大损失的。

第十四条 申请人有下列情形之一的，护照签发机关自其刑罚执行完毕或者被遣返回国之日起六个月至三年以内不予签发护照：

- (一) 因妨害国（边）境管理受到刑事处罚的；
- (二) 因非法出境、非法居留、非法就业被遣返回国的。

第十五条 人民法院、人民检察院、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行政监察机关因办理案件需要，可以依法扣押案件当事人的护照。

案件当事人拒不交出护照的，前款规定的国家机关可以提请护照签发机关宣布案件当事人的护照作废。

第十六条 护照持有人丧失中华人民共和国国籍，或者护照遗失、被盗窃等情形，由护照签发机关宣布该护照作废。

伪造、变造、骗取或者被签发机关宣布作废的护照无效。

第十七条 弄虚作假骗取护照的，由护照签发机关收缴护照或者宣布护照作废；由公安机关处二千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八条 为他人提供伪造、变造的护照，或者出售护照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公安机关没收违法所得，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处二千元以上五千元以下罚款；非法护照及其印制设备由公安机关收缴。

第十九条 持用伪造或者变造的护照或者冒用他人护照出入国（边）境的，由公安机关依照出境入境管理的法律规定予以处罚；非法护照由公安机关收缴。

第二十条 护照签发机关工作人员在办理护照过程中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一) 应当受理而不予受理的；
- (二) 无正当理由不在法定期限内签发的；
- (三) 超出国家规定标准收取费用的；
- (四) 向申请人索取或者收受贿赂的；
- (五) 泄露因制作、签发护照而知悉的公民个人信息，侵害公民合法权益的；
- (六) 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其他行为。

第二十一条 普通护照由公安部规定式样并监制；外交护照、公务护照由外交部规定式样并监制。

第二十二条 护照签发机关可以收取护照的工本费、加注费。收取的工本费和加注费上缴国库。

护照工本费和加注费的标准由国务院价格行政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规定、公布。

第二十三条 短期出国的公民在国外发生护照遗失、被盗或者损毁不能使用等情形，应当向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驻外机构申请中华人民共和国旅行证。

第二十四条 公民从事边境贸易、边境旅游服务或者参加边境旅游等情形，可以向公安部委托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通行证。

第二十五条 公民以海员身份出入国境和在国外船舶上从事工作的，应当向交通部委托的海事管理机构申请中华人民共和国海员证。

第二十六条 本法自2007年1月1日起施行。本法施行前签发的护照在有效期内继续有效。

[15]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1980. 9. 10. 实施, 全国人大常委会委员长令)

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取得、丧失和恢复, 都适用本法。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是统一的多民族的国家, 各民族的人都具有中国国籍。

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不承认中国公民具有双重国籍。

第四条 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 本人出生在中国, 具有中国国籍。

第五条 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 本人出生在国外, 具有中国国籍; 但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并定居在国外, 本人出生时即具有外国国籍的, 不具有中国国籍。

第六条 父母无国籍或国籍不明, 定居在中国, 本人出生在中国, 具有中国国籍。

第七条 外国人或无国籍人, 愿意遵守中国宪法和法律, 并具有下列条件之一的, 可以经申请批准加入中国国籍:

- 一、中国人的近亲属;
- 二、定居在中国的;
- 三、有其它正当理由。

第八条 申请加入中国国籍获得批准的, 即取得中国国籍; 被批准加入中国国籍的, 不得再保留外国国籍。

第九条 定居外国的中国公民, 自愿加入或取得外国国籍的, 即自动丧失中国国籍。

第十条 中国公民具有下列条件之一的, 可以经申请批准退出中国国籍:

- 一、外国人的近亲属;
- 二、定居在外国的;

三、有其它正当理由。

第十一条 申请退出中国国籍获得批准的，即丧失中国国籍。

第十二条 国家工作人员和现役军人，不得退出中国国籍。

第十三条 曾有过中国国籍的外国人，具有正当理由，可以申请恢复中国国籍；被批准恢复中国国籍的，不得再保留外国国籍。

第十四条 中国国籍的取得、丧失和恢复，除第九条规定的以外，必须办理申请手续。未满十八周岁的人，可由其父母或其他法定代理人代为办理申请。

第十五条 受理国籍申请的机关，在国内为当地市、县公安局，在国外为中国外交代表机关和领事机关。

第十六条 加入、退出和恢复中国国籍的申请，由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审批。经批准的，由公安部发给证书。

第十七条 本法公布前，已经取得中国国籍的或已经丧失中国国籍的，继续有效。

第十八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16] 来华签证简介 (2019. 11. 20.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게재 내용)

一、基本概念

签证是一国政府授权机关依照本国法律法规，为申请人、出或过境本国的外国人颁发的一种许可证明。

根据国际法及国际惯例，任何一个主权国家，有权自主决定是否允许外国人入出其国（边）境，依照本国法律发给签证、拒发签证或吊销已经签发的签证。

中国签证机关根据法律和相关规定，决定颁发签证的种类、次数、有效期和停留期，有权拒绝当事人的签证申请或吊销已经签发的签证。

二、签发机关

中华人民共和国驻外使馆、领馆或者外交部委托的其它驻外机构负责在境外签发外国人入境签证。

符合《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第二十条有关规定情形的外国人，可以在国务院批准办理口岸签证业务的口岸，向公安部委托的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口岸签证。

三、签证种类

中国签证分外交签证、礼遇签证、公务签证和普通签证。其中，普通签证分为以下类别：

签证种类	申请人范围
C	执行乘务、航空、航运任务的国际列车乘务员、国际航空器机组人员、国际航行船舶的船员及船员随行家属和从事国际道路运输的汽车驾驶员
D	入境永久居留的人员
F	入境从事交流、访问、考察等活动的人员
G	经中国过境的人员

J1	外国常驻（居留超过180日）中国新闻机构的外国常驻记者
J2	入境进行短期（停留不超过180日）采访报道的外国记者
L	入境旅游人员
M	入境进行商业贸易活动的人员
Q1	因家庭团聚申请赴中国居留的中国公民的家庭成员（配偶、父母、子女、子女的配偶、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以及配偶的父母）和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家庭成员（配偶、父母、子女、子女的配偶、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以及配偶的父母），以及因寄养等原因申请入境居留的人员
Q2	入境短期（不超过180日）探亲的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的亲属和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亲属
R	国家需要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
S1	入境长期（超过180日）探亲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的配偶、父母、未满18周岁的子女、配偶的父母，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人员
S2	入境短期（不超过180日）探亲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外国人的家庭成员（配偶、父母、子女、子女的配偶、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以及配偶的父母）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停留的人员
X1	在中国境内长期（超过180日）学习的人员
X2	在中国境内短期（不超过180日）学习的人员
Z	在中国境内工作的人员

四、港澳签证

（一）香港特区签证

- 1、香港特区给予部分国家和地区人员免签证待遇（请点击了解详情<http://www.immd.gov.hk/sc/services/hk-visas/visit-transit/visit-visa-entry-permit.html#part2>）。
- 2、不享受免签证待遇的外国人赴港，须申请赴港签证。

（二）澳门特区签证

- 1、澳门特区给予部分国家和地区人员免签证待遇（请点击了解详情http://www.dsi.gov.mo/documents/visa_free_macau_c.pdf）。

2、除少数特定国家人员外，不享受免签证待遇的外国人，原则上可在澳门口岸办理落地签证。

同时申请前往中国内地、香港特区、澳门特区的外国人，须分别申请内地签证和赴港、赴澳签证。

五、有效期

签证的入境有效期（“enter before”），是指持证人所持签证入境的有效时间范围。非经签发机关注明，签证自签发之日起生效，于有效期满当日北京时间24时失效。如仍有未使用的入境次数，在有效期满前（含当日），持证人均可入境。

六、入境次数

签证的入境次数（“entries”），系指持证人在签证入境有效期内可以入境的次数。入境次数用完或入境次数未用完、但已过有效期的签证，均为失效签证。如需前往中国，须重新申请签证。如持证人持失效签证来华，将被拒绝入境。

七、停留期

签证的停留期（“duration of each stay”），系指持证人每次入境被准许停留的时限，自入境次日开始计算。

八、居留手续

外国人持D字、J1字、Q1字、S1字、X1字签证入境后，应当自入境之日起30日内向拟居留的县及以上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办理居留证件。

外国人持W系列外交、礼遇、公务、普通签证入境后，应当自入境之日起30日内向外交部或外交部委托的地方外事部门办理居留手续。

[17] 外国人申请签证证件须知

(2020. 5. 13,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게재 내용)

一、申请对象

外国人入境后, 因非外交、公务事由需要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 可以按照规定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签证的延期、换发、补发和停留证件的签发、换发、补发以及居留证件的签发、延期、换发、补发。

二、申请机构

外国人应当向公安部委托的县级以上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签证证件。

三、申请方式

外国人申请签证和居留证件延期、换发、补发以及停留证件, 应当由本人到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办理相关手续。具有下列情形之一的, 可以由邀请单位或者个人、申请人的亲属、有关专门服务机构代为申请:

- (一) 未满16周岁或者已满60周岁以及因疾病等原因行动不便的;
- (二) 非首次入境且在中国境内停留居留记录良好的;
- (三) 邀请单位或者个人对外国人在中国境内期间所需费用提供保证措施的。

外国人申请居留证件, 应当由本人到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办理相关手续。属于国家需要的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的专门人才以及具有前款第一项情形的, 可以由邀请单位或者个人、申请人的亲属、有关专门服务机构代为申请。

四、单位备案

邀请、接待外国人的单位可以向当地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备案。

五、申请手续

外国人申请签证证件，应当接受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有关询问。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需要向邀请单位（个人）核实有关情况的，相关单位（个人）应当予以配合。申请人或者有关单位、个人无正当理由未根据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通知在约定时间内接受面谈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可以依法不予签发签证证件。

外国人申请签证证件应当提交本人有效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填写《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交一张符合规定要求的照片，提交与申请事由相关的证明材料。

六、受理回执

对经审查符合受理条件的签证证件申请，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应当受理并出具受理回执，在受理回执有效期内作出是否签发的决定。签证和停留证件申请的受理回执有效期自受理之日起不超过7个工作日；居留证件申请的受理回执有效期自受理之日起不超过15个工作日。

申请人所持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被收存的，可以凭受理回执在中国境内合法停留居留；具有正当理由的，可以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临时取回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但应当在受理回执有效期内交还，以不影响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签发相应签证证件。

七、申请签证延期所需证明材料

外国人申请延长签证停留期限，应当在签证注明的停留期限届满7日前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并按照要求提交相关申请证明材料：

- (一) 持C字签证者，应当提交县级以上人民政府主管部门或者当地民航、铁路、公路、港口等运输公司出具的证明函件。可以延长停留期限不超过30日。
- (二) 持F字签证者，应当提交邀请、接待单位出具的证明函件。未备案的单位还应当提交注册登记证明。可以延长停留期限不超过180日。
- (三) 持G字签证者，应当提交接待单位证明函件和前往国家（地区）已确定日期、座位的机（车、船）票。可以延长停留期限不

超过30日。

- (四) 持J2字签证者,应当提交省级人民政府外事部门出具的证明函件。可以延长停留期限不超过30日。
- (五) 持L字签证者,应当提交旅行计划行程安排,团体旅游还应当提交旅行社证明函件。可以延长停留期限不超过30日。
- (六) 持M字签证者,应当提交当地邀请、接待单位或者个人出具的证明函件,未备案的单位还应当提交注册登记证明。合作伙伴为个人的,出具的函件应当签名并提交本地常住户籍证明或者实际居住地居住证明。可以延长停留期限不超过180日。
- (七) 持Q2字签证者,应当提交被探望人出具的函件、身份证明、家庭成员关系证明。可以延长停留期限不超过180日。
- (八) 持R字签证者,应当提交邀请、接待单位证明函件,未备案的单位还应当提交注册登记证明。可以延长停留期限不超过180日。
- (九) 持S2字签证者,探亲人员应当提交被探望人出具的函件、外国人居留证件和家庭成员关系证明。其他人员应当提交处理私人事务或者具有人道原因的相关证明。对探亲人员,可以延长停留期限不超过180日,对其他人员,可以延长停留期限不超过90日。
- (十) 持X2字签证者,应当提交中国境内教育、培训机构出具的在读证明函件。可以延长停留期限不超过180日。

延长签证停留期限,累计不得超过签证原注明的停留期限。

八、申请签证换发所需证明材料

- (一) 外国人符合国家规定需要变更停留事由、给予入境便利或者因换持新护照、持团体签证入境后由于客观原因需要分团停留申请换发普通签证,应当提交下列证明材料:
 - 1、申请换发F字签证,应当提交邀请单位出具的证明函件,可以换发入境有效期不超过1年,停留期不超过180日的零次、一次、二次或者多次签证。对符合国家有关外国高层次人才和投资者规定的人员,可以换发入境有效期不超过5

年、停留期不超过180日的多次签证。

- 2、申请换发J2字签证，应当提交省级人民政府外事部门出具的证明函件。可以换发停留期不超过30日的零次签证。
 - 3、申请换发M字签证，应当提交邀请单位出具的证明函件，可以换发入境有效期不超过1年，停留期不超过180日的零次、一次、二次或者多次签证。
 - 4、申请换发Q2字签证，应当提交被探望人出具的函件、身份证明、家庭成员关系证明。可以换发入境有效期不超过1年，停留期不超过180日的零次、一次、二次或者多次签证。
 - 5、申请换发R字签证，应当提交符合中国政府主管部门确定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引进条件和要求规定的证明材料以及邀请、接待单位出具的证明函件。可以换发入境有效期不超过5年，停留期不超过180日的零次、一次、二次或者多次签证。
 - 6、申请换发S2字签证，探亲人员应当提交被探望人出具的函件、外国人居留证件和家庭成员关系证明。其他人员应当提交具有人道原因的相关证明材料。可以换发入境有效期不超过3个月，停留期不超过180日的零次或者一次签证。
 - 7、申请换发X2字签证，应当提交中国境内教育、培训机构出具的函件和录取、入学证明，可以换发入境有效期不超过1年，停留期不超过180日的零次、一次或者二次签证。
- (二) 外国人因护照即将到期或者签证页用完等情况换持新护照的，应当提交本次入境时所持护照或者所属国驻华使领馆出具的已收回本次入境时所持护照的相关证明，可以换发与原签证种类、入境有效期、停留期限以及原签证剩余有效入境次数一致的签证。
- (三) 外国人入境后增加偕行人的，应当提交本次入境时所持护照，偕行人的出生证明。可以参照本条前述规定换发签证。
- (四) 外国人持团体签证入境申请分团停留的，应当提交接待旅行社

证明函件等材料。可以参照本条前述规定换发。

签证换发的停留期自本次入境之日起连续累计不超过1年。

九、申请签证补发所需证明材料

外国人入境后因所持签证遗失、损毁或者被盗抢申请补发签证，应当提交下列证明材料：

- (一) 签证遗失或者被盗抢的，应当提交本人护照报失证明或者所属国驻华使领馆照会以及新的有效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
- (二) 签证损毁的，应当出示损毁护照或者所属国驻华使领馆照会以及新的有效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
- (三) 团体签证遗失、被盗抢或者损毁的，应当提交当地接待旅行社证明函件和团体签证复印件。

可以补发与原签证种类、入境有效期、停留期以及原签证剩余有效入境次数一致的签证。

十、申请停留证件所需证明材料

- (一) 免办签证入境的外国人因非外交、公务事由需要超过免签期限继续停留的，应当按照本须知第七条规定，提交相关证明材料，可以签发相应期限的停留证件。
- (二) 外国船员及其随行家属需要离开船舶停靠的港口所在城市的，应当提交海员证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和船舶代理公司的担保函件，以及已确定日期和座位的机（车、船）票或者其他与停留事由相关的证明材料，可以签发停留期不超过30日的停留证件。
- (三) 经批准退出中国国籍需要在中国境内停留的，应当提交中华人民共和国退籍证书、外国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以及与停留事由相关的证明材料，可以签发停留期不超过180日的停留证件。
- (四) 外国人居留事由终止，因人道原因需要继续停留的，应当提交居留证件和相关的证明材料，可以签发停留期不超过30日的停留证件。

- (五) 在中国境内出生的外国婴儿需要在中国境内停留的，应当提交婴儿的出生证明、护照和父母双方护照，可以签发与其父母停留期一致的停留证件。
- (六) 持有停留证件的外国人，由于客观原因无法在停留证件有效期内离境的，可以申请换发停留证件。申请材料和换发要求按照前述规定办理。
- (七) 对停留证件遗失、损毁或者被盗抢的外国人，应当提交本人护照报失证明或者所属国驻华使领馆照会和新的有效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可以补发相应期限的停留证件。

十一、申请居留证件所需证明材料

外国人所持签证注明入境后需要办理居留证件的，应当自入境之日起30日内，向拟居留地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外国人居留证件。

外国人申请有效期1年以上的居留证件，应当按照规定提交当地卫生检疫部门或者县级以上卫生医疗部门出具的身体健康证明，证实申请人未患有严重精神障碍、传染性肺结核或者有可能对公共卫生造成重大危害的其他传染病。并按照规定提交下列证明材料：

- (一) 工作类：持Z字签证入境者，应当提交当地人力资源和社会保障、外国专家等主管部门出具的工作许可证明以及工作单位出具的证明函件；持其他种类签证入境者，还应当提交符合中国政府有关主管部门确定的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专门人才、投资者等条件和要求规定的证明材料。对外国高层次人才、急需紧缺专门人才和投资者，可以签发居留期不超过5年的居留证件；对在信誉良好的备案单位工作的人员，可以签发居留期不超过2年的居留证件；对其他人员，可以签发居留期不超过1年的居留证件。
- (二) 学习类：持X1字签证入境者，应当提交就读学校注明学习期限的函件和录取或者入学证明；持其他种类签证入境者，还应当提交主管部门出具的证明材料。可以签发与学校注明学习期限一致的居留证件。

持学习类居留证件的外国人，需要勤工助学或者在校外实习的，应

当经就读学校同意后，提交就读学校和实习单位出具的同意勤工助学或者校外实习的函件，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居留证件加注。

(三) 记者类：持J1字签证入境者，应当提交省级人民政府外事部门出具的函件和核发的《记者证》。可以签发居留期不超过1年的居留证件。

(四) 团聚类：持Q1字签证入境者，应当提交被探望人的身份证明和说明家庭成员关系的函件。持其他种类签证入境的外国人，还应当提交家庭成员关系证明。对未满18周岁和已满60周岁的，可以签发居留期不超过3年的居留证件，对未满18周岁人员的居留期截止日期不能超过其18周岁的日期；对其他人员可以签发居留期不超过2年的居留证件。

对外籍华人、华侨在中国寄养的未满18周岁的外籍子女，寄养受托人可以向户籍所在地或者主要生活地的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代为申请居留证件。应当提交申请人的出生证明、外籍父母的护照复印件，父母双方或者一方为中国人的，还应当提交在境外定居证明的复印件；申请人父母的委托书、寄养受托人的委托书，委托书应当注明委托抚养或者监护人、寄养年限等内容；受托人本地常住户籍证明或者实际居住地6个月以上居住证明和居民身份证。可以签发有效期不超过3年的居留证件，居留期截止日期不能超过其18周岁的日期。

(五) 私人事务类：持S1字签证入境者，探亲人员应当提交被探望人出具的说明亲属（配偶、父母、配偶的父母、未满18周岁子女）关系的函件和居留证件。可以签发与被探望人在华居留期一致的居留证件。其他人员应当提交处理私人事务相关的证明材料。可以签发居留期不超过1年的居留证件。

持其他种类签证入境者，探亲人员应当提交被探望人出具的函件、居留证件和亲属（配偶、父母、配偶的父母、未满18周岁子女）关系证明。可以签发与被探望人在华居留期一致的居留证件。具有人道原因的人员应当提交相关证明材料，可以签发居留期不超过1年的居留证件；已满60周岁在中国境内购置房产的外籍华人，应当提交本人名下的房产证明或者经公证的房屋买卖合同、经济来源证明；在中国境内接受医疗救助、服务的外国人，应当提交当地县级以上或者二级甲等以上医疗机构

出具的6个月以上的住院证明或者接受医疗服务证明。

十二、申请居留证件延期

外国人申请居留证件延期，应当在居留证件有效期限届满30日前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提出申请，并提供与申请事由相关的证明材料。经审查，延期理由合理充分的，准予延长居留期限；不予延长居留期限的，应当按期离境。

十三、申请居留证件换发

外国人居留证件登记事项（姓名、居留事由、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号码等）发生变更的，应当自登记事项发生变更之日起10日内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变更，并参照前述规定提交与个人基本信息和居留事由变更相关的证明材料，可以换发居留证件。

十四、申请居留证件补发

外国人居留证件遗失、损毁或者被盗抢，应当提交本人护照报失证明或者所属国驻华使领馆照会或者出示被损毁证件，以及新的有效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可以补发居留证件。

十五、申请出入境证

在中国境内的外国人因证件遗失、损毁、被盗抢、失效等原因未持有效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无法在所属国驻华使领馆补办的，提交护照报失证明或者所属国驻华使领馆照会或者出示被损毁、失效证件以及代替护照使用的临时身份证明。可以签发有效期不超过30日的外国人出入境证。

十六、用语解释

- (一) 家庭成员：包括配偶、父母、配偶的父母、子女、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子女的配偶。
- (二) 家庭成员关系证明和亲属关系证明：有关国家主管部门出具的结婚证明、出生证明、收养证明、其他亲属关系证明以及相关公证；所属国驻华使领馆出具的婚姻证明、出生证明、亲属关系证明、姓名等资料变更证明等。

- (三) 外国主管部门或者公证部门出具的婚姻证明、出生证明、亲属关系证明、姓名等资料变更证明等应当经中国驻该国使领馆认证。
- (四) 身份证明：中国内地居民身份证明指本地常住户籍证明或者实际居住地6个月以上居住证明和居民身份证；华侨身份证明指中国护照和国外定居证明；港澳居民身份证明指港澳居民来往内地通行证；台湾居民身份证明指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外国人身份证明指外国人永久居留证。华侨和港澳台居民还应当提交实际居住地6个月以上居住证明。

上述有关外文证明材料应当翻译成中文。

十七、审批时间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在受理外国人签证和停留证件申请后的7个工作日内作出是否签发的决定。在受理外国人居留证件申请后的15个工作日内作出是否签发的决定。

申请人具有正当理由的，可以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部门申请缩短签证证件审批时限，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可以根据实际情况提供便利。

十八、审批效力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对外国人具有出境入境管理法第二十一条、三十一条等规定情形的，将不予签发签证证件。

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作出的不予办理签证延期、换发、补发，不予办理外国人停留居留证件、不予延长居留期限的决定为最终决定。

十九、住宿登记

外国人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的规定办理住宿登记。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受理外国人签证证件申请时可以要求申请人提供在中国境内的住宿登记证明。

二十、缴费

外国人申请签证证件，应当按照规定缴纳费用。

[18] 外国人申请口岸签证须知

(2019. 5. 14.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게재 내용)

一、申请口岸签证对象

出于人道原因需要紧急入境，应邀入境从事紧急商务、工程抢修或者具有其他紧急入境需要并持有有关主管部门同意在口岸申办签证的证明材料的外国人，旅行社按照国家规定组织入境旅游的，可以向公安部委托的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口岸签证。

二、申请口岸签证途径

- (一) 个人申请口岸签证，由本人抵达口岸时向口岸签证机关提出申请。旅游团申请口岸签证，由组织邀请的旅行社向口岸签证机关提出申请。
- (二) 邀请单位（个人）可以在外国人抵达口岸前代外国人向本地口岸签证机关提出申请；代外国人向非本地口岸签证机关提出申请，可以通过本地地市级以上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代为转交。

三、申请口岸签证所需证明材料

外国人申请口岸签证，应当接受口岸签证机关询问。口岸签证机关需要向邀请单位（个人）核实有关情况的，相关单位（个人）应当予以配合。

申请口岸签证应当提交有效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填写外国人口岸签证申请表，提交符合规定要求的本人照片，有关主管部门或者邀请单位（个人）出具的与紧急入境事由相关的邀请函件、证明材料或者旅行社邀请函件。

邀请单位（个人）代外国人提出的口岸签证申请，应当提交申请人护照或者其他国际旅行证件复印件以及与处理紧急事务事由相关的邀请函件、证明材料。

- (一) 申请C字签证，应当提交县级以上人民政府主管部门或者民航、铁路、公路、港口等运输公司出具的说明紧急入境事由的邀请函件。

- (二) 申请F字签证, 应当提交主管部门出具的同意在口岸申办签证的证明函件。
- (三) 申请团体L字签证, 旅游团人数应当为二人(含二人)以上, 提交经批准具有相应资质旅行社出具的邀请函件、人员名单以及旅行接待计划。
- (四) 申请M字签证, 应当提交被授权单位或者已向口岸签证机关备案的邀请单位出具的说明紧急入境事由的邀请函件; 对其他邀请单位, 应当提交入境从事相关活动的行程接待计划、说明紧急入境事由的邀请函件以及注册登记证明。
- (五) 申请Q2字签证, 应当提交中国公民或者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出具的说明家庭成员关系和紧急入境事由的邀请函件以及邀请人的身份证明。
- (六) 申请R字签证, 应当按照规定提交有关人才主管部门出具的证明材料和邀请单位出具的说明紧急入境事由的邀请函件。
- (七) 申请S2字签证, 探亲人员应当提交在华居留的外国人出具的说明家庭成员关系和紧急入境事由的邀请函件以及邀请人的护照和居留证件; 入境从事其他私人事务, 应当提交入境处理紧急私人事务或者出于人道原因的相关证明材料。

家庭成员包括配偶、父母、配偶的父母、子女、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子女的配偶。

中国内地居民身份证证明指居民户口簿或者居民身份证; 华侨身份证明指中国护照和国外定居证明; 港澳居民身份证证明指港澳居民来往内地通行证; 台湾居民身份证证明指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 外国人身份证明指外国人永久居留证。华侨和港澳台居民还应当提交实际居住地6个月以上居住证明。

四、其他注意事项

- (一) 口岸签证机关收到邀请单位(个人)的代申请, 经审核符合规定要求的, 邀请单位(个人)将获得口岸签证机关出具的外国人口岸签证受理单, 申请人抵达口岸后凭外国人口岸签证受理单向口岸签证机关申请办理签证。

- (二) 口岸签证机关经审查认为符合规定条件的,对个人签发一次入境有效期不超过5天、停留期限不超过30天的相应种类签证;对外国旅游团签发一次入境有效期不超过15天、停留期限不超过30天的团体旅游签证;对外国人具有出境入境管理法第二十一条规定情形的,不予签发签证。
- (三) 持有口岸签证的外国人,个人应当从口岸签证签发机关所在的口岸入境,旅游团可以从所有对外开放口岸入境。特殊情况下,外国人应当按照口岸签证机关的要求,在限定停留区域停留,在限定口岸出境。
- (四) 深圳、珠海、厦门口岸签证机关可以签发停留期限3天或者5天的特区旅游签证。持有特区旅游签证的外国人入境后停留区域不得超过入境口岸所在城市行政区域。
- (五) 外国人申请口岸签证,应当按照国家规定的收费标准向口岸签证机关缴纳签证费。

- **발간총괄** 강상욱(주중한국대사관 정무공사)
- **발간책임** 유창호(주중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 **집 필** 윤경원(주중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법무협력관, 부장검사)
공존행(주중한국대사관 비자담당 1등서기관 겸 영사)
허성오(주중한국대사관 비자담당 2등서기관 겸 영사)
김상희(주중한국대사관 비자담당 2등서기관 겸 영사)
조성희(주중한국대사관 3등서기관 겸 부영사)
- **발간위원** 정희남(주중한국대사관 선임연구원)
황혜영(주중한국대사관 행정직원)
정원경(주중한국대사관 행정직원)
- **감수위원**

-
- **발행일** 2022년 1월
 - **발행처** 주중한국대사관 [비매품]
 - **발간등록번호**

-
- **제 작/편 집** 북경부경한광고유한공사
 - **디자인/인쇄** 북경부경한광고유한공사

-
- 본 책자는 주중한국대사관에서 발행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본 책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